

2009년도 일본사학회 국제학술대회

일본의 한국지배와 이토 히로부미

일시 : 2009년 11월 28일 (토) 9:30~18:00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수련교수회관 101호

주최 : 일본사학회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목차>

개회사: 일본사학회 회장
축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제1부

사회 : 최종길(친일규명위)

제1발표 : 伊藤博文と二人の君主 - 坂本一登(國學院大學)
토론 : 최석완(대진대)

제2발표 : 메이지정부의 대외침략정책과 이토 히로부미
- 방광석(성균관대)
토론 : 한성민(동국대)

제2부

사회 : 김봉식(친일규명위)

제3발표 : 「明治四〇年（一九〇七年）体制と韓国統治 -韓国統監のヤヌスの顔-」
토론 : 박삼헌(건국대)

제4발표 : 청일전쟁기 이토내각의 대조선 군사·외교에 대하여
- 서민교(친일규명위)
토론: 심기재 (단국대)

제3부

사회 : 임성모(연세대)

제5발표 : 伊藤博文の韓国統治と朝鮮社会
- 小川原宏幸(千葉大学)
토론 : 이성환(계명대)

제6발표 : 이토 히로부미와 주한일본군 헌병대
- 이승희(중앙대)
토론 : 류미나(국민대)

제4부

사회 : 함동주(이화여대)

종합토론

만찬

개 회 사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국의 일본사학회가 개최하는 ‘일본의 한국지배와 이토 히로부미’ 국제학술회의에 자리해 주신 국내외 귀빈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표를 위해 일본에서 오신 사카모토 가즈토, 다키이 가즈히로, 오가와라 히로유키 선생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 개최를 지원해 주신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100년이 됩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안중근 의거를 기념하는 각종 모임이나 관련 학술대회가 많이 열렸지만,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는 아직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본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0년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사를 연구하는 우리 학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상을 진단하는 것이 역사연구자로서 책무이자 또한 학계에 대한 작은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문명을 적극 수용하여 서양제국주의 국가와 대등한 근대국가를 건설한 최대의 공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등 일본정부를 대표해 한국침략을 진두지휘한 ‘침략의 원흉’이란 이미지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엇갈리는 평가는 정치가로서 이토 히로부미의 한 측면만을 부각시킨 결과이지만, 한편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리 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왜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한일 양국 사이에 역사인식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한국지배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지배에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는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것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이번 학술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학계나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토 히로

부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이토 히로부미 연구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의 연구성과를 소개할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 측 연구자들의 비평과 열띤 토론이 기대됩니다. 한국 측 발표자들도 모두 이 주제에 정통한 일본근대사 전공자들로써 참신하고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지한 학술교류를 통해 상호간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학회 임원 여러분과 더불어 의미 있고 성공적인 학술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8일

일본사학회 회장 남 기 학

축 사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한일 양국의 저명한 학자들 앞에서 개최에 즈음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은 한·중·일 등 동북아의 역사 관련 현안 및 영토 문제 등에 대한 연구와 분석, 학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바른 역사를 정립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근래 역사 및 영토, 영해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일간 역사 갈등은 그 뿌리가 깊고,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한일 양국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발전시킴으로써 동북아평화공동체의 건설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수탈의 역사가 남긴 상흔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역사기술을 둘러싸고 상호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소통과 인식의 지평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앞둔 시점에서 저희 재단은 역사정립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관련 주제에 관한 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지원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본사연구를 주도하는 일본사학회가 “일본의 한국지배와 이토 히로부미”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한국지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정치사상과 한국지배 정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일본의 한국침략이 어떠한 배경과 논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 실상에 한걸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본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 의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사의 무대 위에서 조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바라봄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풍부한 역사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 한일 양국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단계의 연구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한일양국 연구자 사이의 진지한 학술 교류와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성대한 학술회의를 준비하신 일본사학회 남기학 회장님 및 학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일본 학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귀중한 계기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축사를 갈음하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伊藤博文と二人の君主 — 伊藤博文の統監政治

坂本一登

ロベスピエールを称える人も、憎む人も後生だからお願いだ。ロベスピエールとは何者であったのか、それだけを言ってくれたまえ。

— マルク・ブロック『歴史のための弁明』より

はじめに

統監期の伊藤博文の研究は、日韓両国とも、基本的には、日本の韓国侵略という大きな枠組みの中で分析され、記述されてきた。問題の核心は、日本の韓国侵略という大きな物語と伊藤の統監政治とをいかに整合的に理解するかであり、とりわけ伊藤が日韓併合を決意した時期について多大な関心が注がれてきた。それ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苦しんだ多くの人々、日本の植民地支配の不当さに声すら上げられなかった多くの人々の無念を念頭におけば、理解可能であり、また必然でもあったろう。しかしその一方で、歴史理解という視点からは、その代償が全くなかったとは言い難いように思われる。しばしば分析は予め用意された日本の韓国侵略という物語に沿うように伊藤の統監政治の侵略性や偽善性の告発に力が注がれ、そこに図式化や単純化の傾向が全くなかったとは言い難いように思われる。こうした文脈のなかでは、統監期特有の政治的複雑さや伊藤の政治指導の紆余曲折についてあまり関心が高まらなかったとしても、無理のないことであつたらう。しかしながら、統監期の政治的複雑さや伊藤の政治指導については、なお内在的理解が求められている数多くの問題が残さ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そしてまた、これらの検討を通じてはじめて、韓国独立の維持と近代化を唱えていた伊藤が、なぜ韓国併合に同意したのか、伊藤の曲折を内側から理解する道も開かれていくように思われるのである。

本稿は、こうした関心から、統監期の韓国政治を伊藤の政治指導を中心に考察する。もともと、統監期の政治に関心を持ち始めたのがごく最近だという事情および韓国語が読解できないという報告者の能力不足の故に、考察の対象および方法は、極めて限定的なものにならざるをえない。すなわち、本稿は、伊藤が精力的に指導していた、韓国施政改善協議会の議事録を主たる材料として、伊藤が統監として韓国の「施政改善」に対してどのように取り組み、どのように格闘していったのか、またその際一体伊藤は何を問題と考え、何に苦しんだのか、そしてその伊藤の政治指導と韓国併合とはどのように関係するのか、

これらの問題を、伊藤に即して、伊藤の内側から、考察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伊藤の政治指導を分析するにあつて、本稿は、統監期の内政の統治主体があくまで皇帝を中心とする韓国政府にあったことを重視する。確かに議事録を読んでいると、伊藤は施政改善協議会の議論をリードし、あたかも韓国政府の実質的な首相のように見えることがある。しかし、施政改善協議会の場で伊藤がいかにも熱弁を振るおうと、大臣の任免権や政策の最終的な裁可権をもつのは皇帝であり、伊藤が出席しない韓国政府の閣議も施政改善協議会とは別に存在していた。ある政策を採用するか否か、あるいは決定した政策を具体的にどのように実施していくかは皇帝を含めた韓国政府の手中にあり、伊藤の政治指導は間接的なものに留まらざるを得なかった。言い換えれば、統監期の伊藤は、韓国の政治を自由に操作出来たわけではなく、伊藤の統監としての政治指導が成功するかどうかは、ひとえに伊藤に対して積極的に協力する、統治能力ある韓国政府が存続するか否かにかかっていたのである。

ところで伊藤は、施政改善協議会において、施政改善すなわち近代化のための改革は実行されてこそ初めて意味があると繰り返し述べていた。反日主義が蔓延する韓国で、日本の保護国化を正当化する唯一の途は、改革を着実に実行し、現実とその成果を目に見える形で韓国民に示し理解してもらふほかないと伊藤は考えていた。また他方で、それは強硬に即時併合を唱える日本の一部の世論に対抗するためにも必要だった。しかし、前述したように、伊藤の打ち出した政策が、韓国政府に媒介されて初めて実施される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皇帝高宗を中心とする宮中が伊藤に対してどのように対応し、韓国政府が政策をどのように実行していくかは、決定的に重要だった。だからこそ、伊藤は、常に韓国の政治システムの改革に強い関心を持ちづけ、近代化を実行できる政治システムの構築に意欲的に取り組んでいったのである。そして、この韓国政府の統治能力についての伊藤の判断が、併合問題にも、密接に関連していたと考える。

本稿は、こうした仮説に基づいて考察を進めていくが、前述したように、極めて限定的な考察であることを再度お断りしておきたい。

1.

1906年3月2日、伊藤は統監として京城に赴任した。3月11日皇帝高宗に正式謁見し、伊藤の統監としての仕事が本格的に始まった。

ところで、そもそも伊藤はなぜ統監として韓国に赴く決心をしたのだろうか。伊藤はすでに66歳、当時としては老境に数えられる年齢であった。憲法制定など立憲政治の導入に積極的な役割を果たし、元老筆頭として明治天皇の信任も厚かった伊藤は、すでに位人臣を極めた観があった。韓国統治の困難さを考えれば、そうした伊藤に、あえて統監に就任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理由はなかったようにさえ見える。

しかし前年秋、伊藤の決意は既に固まっていた。周知の緊迫した交渉の末、韓国の外交

権を日本が掌握する第二次日韓協約が締結された。調印後、暇乞いに訪れた伊藤に対して、高宗は「今や我国は維新を図るべき時機に遭遇せり、名実相伴う所の施政改善を励行せざるべからず」と語り、伊藤に改革を指導してくれるよう鄭重に依頼した。これに対して、伊藤も「今日に及んでは博文には貴我朝廷の区別なし我朝廷に尽くす所を以て亦等しく貴朝廷に尽くさんとするものなり」と応え、近い将来天皇の許可を得て韓国に帰ってくることを約束したのである。

経験豊かな伊藤が、老かいな高宗の言葉を額面通りに受け取ったとは考えがたい。しかしそれでも韓国皇帝からの直々の依頼に、伊藤は日本と韓国との関係を改善し、漸く韓国を近代化する好機が訪れたと感じたのかもしれない。そして日本の近代化を推進してきた伊藤の政治的経験と自負が、韓国の近代化という難問に取り組む意欲をかき立てたのかもしれない。あるいは、日本の安全保障のために韓国を犠牲にすることへの密かな罪の意識がなくては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ともあれ、言うことは、日本の政界で次第に活躍の場を失いつつあった伊藤が、天皇に対する最後の奉公として、政治家としての経験知と必ずしも長くはない余命の少なくない部分を、韓国の施政改善のために捧げる決意をしていたことである。

さてそれでは、伊藤はどのように韓国の施政改善を行おうとしたのだろうか。伊藤は、3月11日の高宗との謁見の際に、6項目の改善策を上奏した。その中には、韓国の富強化や教育の拡充および治安の強化とともに、「立法及行政百般の改良を実施するに其事項の軽重緩急を料り博文案を具して提出」という項目があった。「博文案を具して提出」という文言がこの項目だけにわざわざ加えられているように、政治システムの改革こそ、伊藤が最も重視し、最も積極的に関与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った。伊藤は、3月21日の第2回施政改善協議会においても、政治システムの改革の必要性を次のように訴えている。すなわち、王室と政府の区別を立てること、各部大臣と地方官との権限上の関係を明らかにすること、司法と行政を分離すること、中央財政と地方財政を区別すること、地方官の職務権限を明らかにすること、そしてこれらの改革の準備として、まず実情把握のための調査を各大臣に依頼したのだった。

政治システムの改革を中心とする伊藤の政治指導を、本稿では、以下の4つの時期にわけて考察していきたい。

第一期 1906年3月から11月まで

第二期 1907年3月から8月まで

第三期 1907年10月から1908年8月まで

第四期 1908年11月から1909年7月まで

第一期は、伊藤の統監赴任から短期間の帰国を挟んで11月新予算を策定して日本に帰国するまでである。第二期は、伊藤の帰任からハーグ密使事件をへて高宗の退位と第三次日韓協約の締結まで、第三期は日本が内政を掌握した新体制の下、李完用内閣が一進会与提携しつつ施政改善を試みた時期、第4期は反日主義が広まる中で李完用内閣と一進会の対

立が深まり伊藤が統監を辞任するまでである。

まず第一期の考察から始めたい。

1906年3月13日、第1回目の施政改善に関する協議会が統監邸で開かれた。その席上、伊藤は、日本から1000万の資金を借入れ、それを原資に農事改良、道路修築、水道灌漑の整備、教育の拡充および警察力の増強など、施政改善の諸政策を行う計画を提案した。しかし伊藤が最も懸念したのは、個々の計画の成否よりも、施政改善すなわち韓国の近代化に対する決意の鞏固さだった。既に朴斎純参政を始めとする閣僚たちは、第二次日韓協約に調印したことで、五賊と指弾され、韓国社会から強く批判されていた。こうした状況の中で、大臣たちの積極的な協力を得ることができるのかどうか、伊藤は不安を抱えていたのである。伊藤が改まった態度で「諸君は果たして施政を改善する決心固きや」と決意を確認すると、果たして大臣たちも「閣員は一致して勉励致す決心なり」と協力を誓った。こうして伊藤は、ひとまず大臣たちの決意に安堵したのだった。

もっとも、伊藤は、大臣たちの決意に全幅の信頼が措けたわけではない。4月下旬、日露戦争凱旋大観兵式出席のため伊藤の一時帰国が決まると、様々な流言が飛び交い、閣内にも動揺が走った。そのため伊藤は大臣たちに対して「帰朝に関し自分の最も恐るる所は政府の動揺なり、縦令人心は多少動揺するとも政府は決して動揺せざる様切望せざるを得ず」と混乱の沈静に努めざるを得なかった。

こうした内閣の不安定さの背景には、社会からの非難とともに、皇帝高宗を中心とする宮中の存在があった。大臣たちは、常に任命権を握る高宗の顔色を窺い、高宗の行為に非がある場合でさえ進んで諫言しようとはしなかった。「自分着任以来私かに各大臣の行動を観察するに常に君主の意を迎ふることのみ汲々たるものの如し」「苟も輔弼の大任を帯へる以上自分の良心に顧み国家の為また君主の為利益ありと信ずれば、縦ひ君主の意思に反しても之を諫奏実行するの決心なかるべからず」。日本において宮中改革を自ら断行し、内閣制度を確立させた経験をもつ伊藤にとって、韓国の大臣たちのあまりにも臆病な姿勢は、補弼の責任を果たしているとは思えなかった。実際、高宗が内閣に無断で特許を濫発したことで、外国との間に深刻なトラブルがいくつも発生していた。「諸君が常に論ずる所を聞くに如何なる悪事も如何なる弊害も陛下の為さざる事とし最早如何とも致し方なきものと考えいるものの如し、韓国は古より左様なる国柄なりしや」。この問いに対する参政朴斎純の「是無上の君権のしからしむ所にして如何ともするに由なきなり」という答えを聞くや、伊藤は、内閣を皇帝から自立させないかぎり、到底改革は望めないことを観念した。そして伊藤は、高宗との正面からの対決を予測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である。

伊藤と高宗との関係は、当初から緊張を孕んだものであった。最初の内謁見となった3月25日の会談では、高宗は、日本からの借款とそれの用途について説明する伊藤に対して、表面上感謝を表明しつつ、婉曲に日本は韓国の独立を無視し併呑するのが本意ではないかと疑った。伊藤はこれを否定し、「博文老後の今日最早余命も永からざるに付き、茲に誠心

誠意を傾注して韓国興隆の任に當り務めて速に其の実効を挙げんことを期せんと欲す」と答えたが、以後、両者の関係は神経戦のような緊迫した様相を呈していった。

こうした伊藤が、一步踏み出し宮中改革に着手するのは、7月のことであった。7月2日の内謁見で、伊藤は、依然として巫女を始めとする雑多な人々が頻繁に宮中に入入りし、昨年11月に約束された肅清がいつこうに進展しないばかりか、むしろ宮中が政治的陰謀の温床になっていることを詰問したのである。実際、儒生金升が官憲に捉えられたのを始めとして、宮中が様々なルートを通じて反政府派や義兵勢力と連絡をと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高宗は関与を否定したが、伊藤は宮中を肅清する同意を強引に取り付け、同時に政治への干渉をやめ内閣大臣に政治を委任するよう強く戒めたのである。「陛下事大小となく政治に干渉するは宜しからず、亦如何なる聡明なる君主といえども些末の事にまで立ち入って之を主宰し得べきに非ず、宜しく政府当局者に一任して責成せしめ給うにしかず、況や小策を弄し密計陰謀を事とせらるるが如きは決て賢明なる君主の行為にあるまじき事なり」。

しかし、皇帝権力が伊藤に掣肘されることを苦々しく思っていた高宗が、こうした伊藤の諫言を甘んじて受け入れたわけではない。高宗の伊藤に対する陰に陽にする抵抗は、これ以後も続けられた。しかし統監として韓国政治に関われば関わるほど、伊藤は、強大な皇帝権力の濫用こそが韓国政治の最大の問題であると認識す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外国人に対する不用意な借金、鉾山利権や荒蕪地開墾権に対する勅許の濫発、恣意的な恩赦、宮中独自の財源の拡大や課税など、内閣の輔弼を全く通さない、こうした皇帝の公私混交の不法な行為が政治的公正さや財政的規律を損ない、韓国の行財政を苦しめていた。伊藤は、皇帝権力を政府の下に統御しない限り、韓国政治は基礎を確立できず、政治的近代化も不可能だと痛感した。しかし韓国の政治家からは、諦観の言葉しか出てこなかった。それゆえ、伊藤は、ことある度に高宗への諫言を一人続けていくのである。

例えば、10月11日の内謁見の際、高宗から伊藤との関係が昨今親密を欠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風刺されると、伊藤は、「本官は終始同一なり、もしこれありとせば、陛下の思し召し如何によるの外なし」と突っぱね、「貴国人も日本人も又外国人も皆陛下は雜輩を近け且之と親しみ大小国政は専ら此輩の間に操縦せられ、正当責任者の如きは徒其虚位を擁するに過ぎずとの觀念を抱かざるものなし。抑も貴国の君臣間の常弊はお互いに相欺くを以て事とするにあり、君は臣を欺き臣も亦君を欺き上下交々相欺くを以て能事とす、如此状態に於て忠良なる輔弼の臣出つべきにあらず、隨て国家の隆運を期せんことは不可能に属す」と、強く反省を促したのである。

こうした伊藤の度重なる諫言や、再度高宗の陰謀が発覚したこともあって、高宗も次第に国政の主導権を内閣へ委任していくようになる。そしてこうした内閣の主導権のもとで、1907年度の予算案が11月に策定された。伊藤は、これを喜んで「最近議政府において決定したる予算をみるに整理と進歩の跡、歴然たり。是らは諸君の功績に外ならず」と祝福した。朴齋純参政も「顧みれば昨年大使として御渡韓の当時より既に一箇年を経過せり、

殊に統監として指導開発の任に膺られたる以来、人心も大に穩なるを得たり」「従来陛下は大臣等に充分なる職務権限を与えられざりしも最早今日は之を与えられたれば、各大臣等も権限の不足を以て治績の挙がらざる口実となすことを得ず」と応じていた。国政の主導権が次第に内閣に移り、内閣制度の確立へ向けて大きく踏み出したのが、初年度の政治改革の最大の成果だった。おそらく、この頃が伊藤の期待が最もふくらんだ時期ではなかったろうか。伊藤の不在がもたらす韓国政界への波紋に一抹の不安をかかえながらも、11月21日伊藤は一定の達成感をともに帰国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った。

2.

日本滞在中の2月7日、伊藤は東洋協会大会で「対韓政策について」と題した演説を行った。統監1年の経験を振り返りつつ、次のように改革の困難さについて理解を求めたのである。「施政改善に関して日韓協約は甚だ薄弱なり、即ちこの協約は助言をなすに過ぎず、この助言なるものは韓国の施政改善に対しては予の最も至難とする所なり、助言を受くるものは主にして助言を与ふるものは客なり」。すなわち公式には外交権しかもたない統監は、まず韓国政府の大臣達を「充分得心せしめて然る後実行せしめ」ることが不可欠だった。しかしそれは、ともすれば「施政改善の緩慢に失するは免れざる所なり」という事態になりがちで、伊藤は間接指導のもどかしさも感じていたのである。

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伊藤はすぐさま直接指導の必要を訴えたわけではない。むしろ、併合については明確に否定した。「何人も自国の併呑を望むものなかるべし、予は充分この点に注意し努めて韓人の誤解を解き日本は韓国を扶植し開発して日韓共に其福利に依らんとするものなり」。すなわちこの時点の伊藤は、隔靴搔痒の感を抱きながらも、統監による間接指導と、韓国政府を通じた改革の推進に希望を繋いでいたのである。

ところが、1907年3月、伊藤が帰任すると、韓国の政情は一変していた。伊藤の不在中に反政府運動・反日運動が昂揚し、批判の標的とされた大臣達は一様に不安な面持ちで浮き足立っていた。在野では、自強会、教育会、青年会、西友会などの諸団体がいたるところで政府を攻撃し、それと軌を一にして言論界では大韓毎日申報を初めとする有力な韓国語諸新聞が政府批判を強めていた。その勢いは、従来親日路線を標榜していた一進会すらも、退勢挽回のため、一転して政府攻撃に投合するほどのものであった。閣僚が襲撃される事件が相継いで起こり、内閣更迭の風評も種々渦巻き、昨年暮れ一致団結と施政改善を誓った朴齋純政権には不協和音がきしみ始めていた。

予測以上の事態の展開に衝撃を受けた伊藤は、すぐさま高宗にかけあつて内閣更迭の風評を沈静化させ、他方では大臣たちの不安をなだめ、激励し、施政改善への意欲をもう一度喚起することに努めねばならなかった。

だが内閣の動揺は、そう簡単には収まらなかった。4月5日に開かれた第13回施政改善協議会は、冒頭から高揚する反政府運動への対応策が話題となった。大臣たちは一様に、

大韓毎日申報など反政府系の新聞に対する検閲の強化や刑法の厳罰化および警察による取調の強化などを強硬に求めた。しかし伊藤は、いずれの国の経験をも、言論を弾圧すれば陰謀や秘密結社が激増するだけであり、拷問の復活や刑の厳罰化も結果は却ってよくないことが多いと再考を求め、代わりに、政府方針をより十全に理解してもらうための地方協議会の新設と、誤った反政府記事を反駁する政府系新聞の発行を提案したのである。なおも不安げな大臣たちに対しては、こうした穏当な措置でも効果がなく、反政府運動＝反日運動が一層拡大すれば、その時はしかるべき策をとることも考慮していると付け加えた。そしてその上で、内閣の奮起をこう促したのである。「兎も角も排日的の熱度昂れば之に従って現政府の大臣諸君に好意を抱かざるに至るは当然なり」しかし「此難局を乗り抜かんと思せば政府の決心強固なるを要す」「参政大臣以下各大臣各々安んじて其の職に留まり共同一致国家の為に努力せられたり、然らば自分も諸君と共に安危存亡を共にすべし」。伊藤は、このまま政府が崩壊すれば、次は、誰も望まない、日本軍による武力占領か併合しかない、このように警告を強く発して大臣達の覚悟を促したのである。

しかし大臣たちの覚悟は、長くは続かなかった。伊藤の前では覚悟を口にしても、大臣たちは、反政府運動が高まると消沈し、職を抛って批判をかわすことしか思いつけなかった。そして5月初旬、韓国政府の首班大臣である参政の朴齋純が、反政府運動に耐えかねて辞意を表明したのである。5月16日、内謁見の席で、伊藤は高宗に次のように落胆と憂慮を伝えている。「昨年赴任以来、既に1年を経過す、貴国の施政改善に熱心努めたりと雖も、如何せん、貴國中一人の能く本官と其の感を同ふし、其の熱誠を共にするものなきは慨嘆に堪えず、加之、此回本官帰任以来、一般の状況を観察するに甚歎すべきものあり、其は排日の熱度頓に加わりたる一事是なり、是れ洵韓国の為に、憂慮すべき現象にして如此して底止する所なくんば、日本は終に韓国保護の任を放擲して更に一步を進めたる措置に出でざるべからずやも知るべからず」。そして伊藤の怒りの矛先は、高宗に向かった。「人心の趨向如此靡然として排日主義に傾きつつあるに付いては、何ものか其の動機となりたる原因なくんばならず」「聞くが如くんば、陛下は常に臣僚を操縦して排日主義を民間に鼓吹せしめられつつありと云う。是れ甚だしき失態にして、畢竟国家を危殆に瀕せしむる拙速 毫も韓国の為にも帝室の為にも何等利する所なかるべし、今日以後断じて此等の小策を斥けられたし、是れ本官が絶えて陛下に苦諫せんとする所なり」。

しかし結局、伊藤は、朴齋純の辞意を撤回させ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慰留に手を尽くしたものの、朴齋純は決心を翻すことなく、のみならず他の閣僚も相継いで辞意を固め、政権は崩壊の危機を迎える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それは伊藤の計画を大きく狂わせるものであった。伊藤は、統監就任当初から、高宗にも一定の信頼があり温厚でもある朴齋純を中心とした現政権の存続を願い、この内閣を通して施政改善を着実に進め、改革の成果が顕れるはずの二三年後をまって、韓国民の統監政治への支持と理解を求める方針であった。しかし今や、その方針は、朴内閣の崩壊によって、風前の灯火となっていた。

もつとも、伊藤に失意に沈んでいる暇はなかった。高宗の意思に従順な後継内閣が誕生

すれば、統監政治そのものが崩壊するしかなかったからである。伊藤は漸く気を取り直して、後継内閣の選定に取りかかった。とはいえ、反日主義が渦巻く情勢の中で、後継者を朴政権の閣僚以外から選ぶのは、「至難にして絶望というも敢えて不可なし」というのが現実であった。そうした極めて限られた選択肢の中で、伊藤が白羽の矢を立てたのが、李完用であった。

李完用は、第二次日韓協約締結の際、他の大臣に先駆けて明白に支持を表明しただけでなく、高宗に迎合しがちな韓国の政治家たちの中で、例外的に臆することなく断固たる態度がとれる人物であった。しかも、他の閣僚が反政府運動の高揚を前に傍観するしかなかったのに対して、李完用は、ひとり一進会と提携して、政府の退勢を挽回する積極策を提唱し、施政改善についても強い決意を披瀝していたのである。

もっとも、伊藤の好むところは、高宗の忌むところである。果たして、5月22日伊藤が、李完用の参政登用について承諾を求めると、高宗は強い難色を示した。年齢、経歴、興望、いずれの点をとっても、李完用は首相にはふさわしくないと拒否したのである。そこで伊藤は一計を案じる。不意に、米国人ハーバードに巨額の運動資金を与えてハーグ万国平和会議へ密使を送る工作が進行中であると告げ、高宗にその関係を問いただしたのである。驚愕した高宗が、豹変して李完用登用に賛成したのは、その直後のことであった。

こうして5月22日、李完用内閣は成立した。この内閣は、内閣組織の方式において、韓国政治史上、画期的な新例を開くものであった。首相の李完用は、組閣するにあたって、まず内閣の基本方針、すなわち日韓提携の現実化、施政改善の実行、いかなる困難に遭遇するも挫けない強固な意思という三条件を事前に提示し、その三条件の了解を個々に確認した上で、閣僚の人選を行ったのである。それは従来の、高宗が自らの意思に基づいて自由に内閣諸大臣を任命していった方式とは全く異なり、韓国内閣が、初めて君主の意思から自立して、組織されたことを意味していた。実際、李完用は、従来の内閣がいずれも君主に「阿諛迎合し」、その怒りに触れることを恐れて失敗に終わったことに鑑み、「今回の内閣組織に方り冒頭より事の善悪に拘わらず陛下の意思に盲従する如きは断然之を止め、縦令陛下の意に逆らうとも国家に可なるものは断じて之を行はんとの底意」から組閣したと述べている。そして李完用は早速、宮中の陰謀の禁止を奏上している。

李完用内閣のもうひとつ特色は、一進会との提携にあった。激しい反政府運動・反日運動によって政府が四面楚歌にも似たの状況に置かれていることを考えれば、伊藤は一進会との提携自体に異論はなかった。しかし内閣と一進会の露骨な提携は、他の政治団体の激昂をまねくことを恐れ、一進会との提携は当面間接的なものに留め、宋秉畯の入閣は暫く見合わせることを助言していた。だが、李完用は、一進会の強力な援助がなければ内閣はたちまち行き詰まってしまうと伊藤の助言を押し切り、当初から一進会の宋秉畯を入閣させたのだった。

李完用内閣の成立によって、伊藤はかろうじて朴斎純内閣崩壊以後の政治危機を乗り切った。李完用政権は、朴斎純政権と比較すれば、親日の点でも、施政改善の意欲の点でも、

高宗との関係においても、伊藤にとって、より好ましい内閣であった。内閣の生みの親たる伊藤と内閣との関係はより親密さを増し、それを象徴するように、これまで不定期に開かれていた施政改善協議会は、6月以降は毎週1回火曜日に定例化されることになった。そこでの議論も時には哄笑が起きるなどうち解けたものとなり、そうした雰囲気の中で伊藤は時には内密の話、例えば高宗の伊藤への信頼が表面上のものにすぎないことを話して大臣らを驚かすこともあった。こうして伊藤と内閣との一体感は、確実に高まっていったのである。

しかしこれらは、改革を推進する万全の体制が整った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高宗は、李完用内閣の成立こそ容認したものの、権力を制度化したり放棄したりする意思は全くなく、宮中は依然としてやっかいな問題でありつづけた。また内閣側の事情も樂觀を許すような情勢にはほど遠かった。李完用首相が、一進会の宋秉畷を入閣させる際に述べたように、李内閣は、高宗の意に添わないのは勿論、朴齋純内閣の旧閣僚たちからさえも積極的な支持を期待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ましてや、朝野の野心家や政治諸団体が強硬に反対するのは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であり、首相李完用は、そうであるがゆえに、むしろ進んで一進会との提携強化を選択したのだった。それはとりもなおさず、李完用政権が、朴齋純政権よりも、宮中、政界、在野社会のいずれのレベルにおいても、一段と孤立した内閣であったことを意味していた。そうでなくとも四面楚歌に近い状態だった政府は、一層政治社会からの支持基盤をやせ細らせ、国民からの支持調達もよりむずかしくなった。しかも政府を構成する大臣たちは、意欲はあっても、政治的経験に乏しく、改革を果たして実現できるかどうかは、未知数であった。すなわち李完用内閣の実情は、伊藤自身が、「甚だ無礼なる申分なれども、自分は公平に判断して考慮するに、諸君に一任して置けば、到底韓国政治の改善は其の成功は覚束なし」と、不安を口にしなければならぬほど危ういものだ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た中、時限爆弾のようにしかけられたハーグ密使事件が6月下旬に発覚した。7月上旬、陰謀の動かぬ証拠を突きつけられた韓国宮廷は「煩悶極まりなき状態」となり、日本側の強硬な意向を察知した内閣は、事ここに至っては「皇帝身上の事に至りては顧みるに遑なし」と高宗の譲位にむけて動き出した。高宗は激怒し、頑強に抵抗した。だが大臣達もひるまず執拗に譲位を迫り、やがて日本側の動きを懸念した韓国元老等の忠告もあり、高宗は7月18日漸く譲位を受け入れるのである。この間、伊藤は、日本側が譲位の責任を負わされないように慎重に対応しながら、内閣側とあうんの呼吸で協調し、皇帝を政治から切り離し、内閣が名実ともに政治の中心となるよう指導していった。もともと、憤懣やるかたない高宗は、一旦譲位したものの、配下の軍隊を使って閣僚襲撃を謀るなど、一筋縄ではいかず、事態が漸く沈静化するのには、首都京城を騒然とさせた軍隊解散に伴う争乱と銃撃戦をへた、8月上旬のことであった。こうして高宗の退位と純宗新帝の即位によって、従来政治的陰謀の温床だった宮中は、漸く非政治化へと踏み出していくことになるのである。

ハーグ密使事件のもうひとつの政治的帰結は、周知のように、この事件をきっかけに日本が韓国内政への関与を一段と深めていくことである。7月24日、李完用内閣との間に第三次日韓協約が調印され、外交権のみならず内政権も日本が掌握することとなった。この第三次日韓協約については、ハーグ密使事件を奇貨として日本が韓国併合に向けてまた一步韓国の主権を篡奪したと理解されることが多い。確かに結果として、そうなった側面があったことは否定しがたい。ただ、本稿で述べてきた伊藤と改革との関係から見れば、それだけに留まらない面もあったように思われる。

伊藤は、統監に就任した当初から、韓国の改革を堅実に実行し、その成果を挙げることで韓国の自立化をはかり、その自立した韓国と日本が提携することを、韓国を併合するよりも、はるかに望ましい選択肢だと考慮していた。そうした構想が維持できるか否か、あるいは現実的なものとなるかどうかは、ひとえに韓国の改革が成功するか否かにかかっており、改革の成功は、伊藤と心をひとつにして改革に取り組む統治能力ある韓国政府が成立するか否かにかかっていた。

しかし現実はその生やさしくはなかった。実際には改革が一定の進捗をみせた昨年でさえ、伊藤は間接指導のもどかしさを感じざるをえなかった。ところが今年になると、それどころか反政府運動・反日運動が激化し、伊藤が存続を望んだ朴齋純政権は崩壊し、伊藤は韓国側の協力者すら失いかけるのである。伊藤は急遽、親日的な李完用内閣を成立させ、最悪の事態は回避するが、韓国社会から孤立した李完用政権は、改革の実現可能性という面ではなほ心許なかった。こうした状況のなかで、当初の予定どおり、あくまで改革を実現しようとするれば、従来とは異なった梃子入れが必要なことは明白だった。だが韓国社会から一進会以外に協力が得られない現状を鑑みれば、選択肢は極めて限れたものにならざるを得ない。結局伊藤は、より多くの日本人を活用して改革を推進することを思い描くようになるのである。

伊藤は、こうした考えを、ハーグ密使事件が発覚した直後の7月9日、第21回施政改善協議会において、次のように洩らしている。「自分も韓国の政治を改良し韓国民の今日の悲境を救出せんと欲する故に種々考慮を運らしたるも、到底韓国人のみにては成就するの見込なきこと数多あり、然らば如何にせば可ならんか、日本人をして之を援助せしむるの外なし」。第三次日韓協約は、伊藤のこうした発想の影響もあったのはなからうか。しかしそれは、韓国の独立を維持するために改革を真剣に実現しようとするほど、日本の勢力により多く依存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いう逆説を孕んでいたのである。

3.

1907年9月中旬、伊藤は、韓国へ帰任する準備を進めていた。統監伊藤をめぐる政治環境は、大きく変化していた。ハーグ密使事件を契機として、これまで伊藤を悩ませていた宮中の非政治化が達成され、もはや皇帝による陰謀を懸念する必要はなくなった。また第

三次日韓協約によって、従来隔靴搔痒の感があった施政改善に対する政治指導もより直接的に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伊藤の心境が晴れやかだったわけではない。伊藤が改革に対する熱意や誠意をことある度に強調しても、思うようには韓国側に伝わらず、韓国社会は一向に落ち着く気配を見せなかったからである。9月14日東京市統監歓迎会に招かれた伊藤は、その不安を次のように正直に告白している。「必ずしも韓国民を頑愚なりと云うにはあらず、必ずしも我日本の彼に対する施政の至情を知らざるに非ざるも、彼等は自ら進んで国政の改良を行う能わず、而かも他人の指導に従うことを甘んぜざる有様なれば、将来尚我に抵抗すること無きを保すべからず」人心の不安定さと将来の見通しがたさが、伊藤の胸中に深くわだかまっていたのである。

だが、伊藤は、不安を振り払うかのように、大胆な策を用意していた。2日後の9月16日、伊藤は参内して、日本の皇太子の今秋の韓国訪問を奏請したのである。すでに、伊藤は、8月上旬、今回の帰国に際して、日本留学のために韓国皇太子を伴っていた。日韓親善のために、今度は日本の皇太子が渡韓する番であった。しかし韓国の不穏な政情を前に、明治天皇はためらわ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だが、伊藤はそれを押し切り、身命を賭して護衛することを誓って漸く裁可を得たのである。伊藤は、今度は同伴することになった有栖川宮威仁親王夫妻に面会し、「韓国の現状にては、何時爆弾の飛び来るやも測り難し、その際は博文まず殿下に先立ちて斃るべく、殿下もその御覚悟ありたし」と決意を促し、妃殿下には、「もし宮殿下に万一の事ありとて、これ天命と思し召されたし」と覚悟を求めて同意を得たのであった。この時期に皇族、それも皇太子の韓国訪問など、天皇の信頼が厚い伊藤でなければ、決して実現することはなかったであろう。そしてそれは、韓国改革に賭ける伊藤の悲壮な決意をも物語るものであった。

伊藤が帰任に際して用意したもうひとつの策は、財源に関するものである。一般に、改革に必要なものは、人と金である。人は、日本人を活用するとすれば、雇用のためには財源が不可欠である。しかし近代化途上の韓国政府に、その余裕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そこで伊藤は、日本政府と交渉し、毎年300万円の5年間、合計1800万円の資金を引き出して、司法改革や韓国で雇用する日本人官吏の俸給に充てることにしたのである。

こうして伊藤は、10月3日韓国に帰任した。10月16日京城で皇太子を出迎えた後、10月下旬から来年度の予算編成と平行して、施政改善を再開した。新たに副総監として曾根祐準も赴任し、伊藤が一時的に韓国を離れても、継続して施政改善協議会が開催できる体制が整えられた。

ところで、新体制における最初の問題は、日本人官吏をどのように韓国政府に組み込んでいくかにあった。ともすれば、日本人官吏の登用は、併合への第一歩と受け取られかねず、また日本人と韓国人とは言葉が通じないため思わぬ誤解が生じる危険が常にあった。それゆえ伊藤は、細心の注意を払って、日本人官吏と韓国人官吏との調和を図ろうとした。

伊藤は、まず各部で採用する日本人官吏の数を、統監が一方的に決定し配分するのではなく、韓国人の各大臣の裁量に委ねた。つぎに日本人官吏採用の際には「已むを得ざる地

位は致方なきも韓人にて済む場所はなるべく韓人を採用する方針」を薦め、呉々も日本人主導にならないように注意を促した。さらに、新たに次官として赴任した日本人官吏に対しては、韓国における任務は、韓国国権の下で大臣を補佐することであり、韓国と日本の人情・風俗・習慣・政治の異なるところをよく吟味し、「韓人に対して一層親密にし互いに懇切を旨とし韓人の尊敬を失はざる様注意せられんことを望む」と訓辞した。そしてその上で、伊藤は新体制の「根本主義」を、統監府で作成した官制草案について説明しながら、次のように述べたのである。「お互いが尽瘁しつつある政治は韓国の政治なり、決して日本の政治にあらず、此の官制案は統監府に於て起草したるものなれども諸君において不平不満足ありては不可なり、自分は飽く迄諸君の発言を尊重す、決して圧政的に諸君をして此の草案通り実施せしめんとするの意志なし、故に諸君は内閣に於て充分之を討議せられ御意見のある所は腹藏なく開陳せられたり」。

因みに、この時採用された日本人官吏は、次官や書記官など高級官吏が中心で、度支部すなわち大蔵省を除き、総数は183人、内訳は、内部54人、法部32人、学部25人、農商工部72人だったという。こうして、日本人官吏を任用して、改革を実行していくための体制が、中央政府においては着実に整備されていったのである。

しかし、これと対照的に、地方の暴動は鎮静の兆しを全くみせなかった。伊藤も事態の深刻さを理解し、地方の治安悪化に頭を悩ませていた。「地方暴動の尚沈静せざるは自分に於ても痛嘆に堪えず、乍併、目下の処、別に之が鎮撫に関する名案もなし、併しながら何れの日にか暴動も鎮静に帰せん」。こうした情勢では、地方制度改革は先送りせざるを得ず、国税も予算に計上された税額が円滑に徴税できるかどうか疑問だった。中央政府の改革が一段落した今、伊藤は今度は地方政治と治安問題に対して目をむ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伊藤が、地方政治に本格的に取り組むのは、一旦帰国して再度帰任した1908年の春からである。地方政治の実績が上がらない理由の一端は、地方政治に人を得ないことと、地方政治のための予算が極端に少ないことに起因していた。伊藤は、内部大臣に地方官の任命の際には、単に縁故ある人物のみを採用せず、断然門戸を開いて有為なる青年を抜擢してはどうかと打診した。しかし社会から孤立する李政権に進んで協力する人材は当初から限られていたし、また改革によって旧来の特権を剥奪したため、郡守など下級地方官の俸給は実際生活が困難なほど低下していた。そのため、士気が上がらないばかりか、採用したい人物には拒絶され、希望者は不適任者という悪循環に陥っていたのである。思わず、「果たして然らば韓国を改良するの途は尽きるにあらずや人間社会の事、凡て人にある」と伊藤が慨嘆せ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所以である。

しかし伊藤は手をこまぬいている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地方政治の実態を知るために、韓国政治史上初めて地方長官たる観察使を召集し、地方官会議を開催することにしたのである。6月1日、京城に13人の観察使が集まった。伊藤が各地方の現状および将来の施政改良について忌憚のない意見を求めると、漢城府尹の発言を口火に次々と不満と批判が表明された。とりわけ、日本人官吏の傲慢さ、日本人官吏との意思の難しさや連携の不

具合、および日本主導の性急な改革についての人民の無理解と誤解を訴えるものが多く、観察使たちは一様に、徴税、警察、教育の諸事務を、観察使が主導権を揮える旧制度へ戻すように求めたのである。また治安の悪化に対処する警察力の拡充を要請する声も多かった。

伊藤は、観察使たちの評論家のような態度が甚だあきたらなかった。観察使は、地方においては中央政府の代表として、もし中央政府の真意について人民に誤解があれば真っ先にその誤解を解き、改革の意義について無理解があれば先頭にたって説得し実行に努めるべきなのに、あたかも人ごとのように、中央政府への不満と旧制度への復帰を訴える観察使たちに、そうした使命感を窺うことができなかつたからである。6月17日伊藤は観察使に対して、改めて観察使の任務の重要性と日本人官吏との調和を次のように訴えた。「韓人中往々日本人が韓国の国政を左右するが如き感を抱き韓国の施政改善を対岸の火災視するものあり、斯くの如きは観察使の職務を全ふする所以にあらず」「一国の政治に二はなし、此の国土及び人民は韓国のものなれば、之を支配する政治は即ち韓国の政治なり、此の韓国の政治を改良せんが為に日本人も来て援助を与ふるなり」「若し此の計画にして失敗に帰せんか、如何なる結果を生ずべきや、韓国は終に救済すべからざるに至り、諸君の希望せざる状態に陥らざるを得ず、諸君、若し斯かる事態を避けんと欲せば、日韓人相共に調和して根本的に施政の改善を図るの外他に取るべき途なし」。

もっとも、伊藤は観察使の傍観者的な態度を責めただけではない。観察使の批判中、妥当と判断したものについては、対応策を講じていった。地方行政費の予算を増額して地方官吏の待遇改善を試み、要望が強かった観察使の指揮下に警察を入れるために地方制度の改革も行った。就中、切実に要求された治安維持のための警察力増強については、4000人の韓国人を募集し、憲兵補助員として日本の憲兵隊に所属させ、「暴徒鎮圧」専門の任務にあたらせる構想を提案した。警察官ではなく憲兵として増員しようとしたのは、警察官よりも憲兵の方が育成や維持に費用が少なくて済み、その分多数の人員を採用できることを考慮した結果であった。また韓国人から4000人を募集するのは、治安悪化の一因が、政治的な理由によるものばかりでなく、去年の軍隊解散の結果生じた旧軍人たちの失業問題があることを鑑み、彼等を再雇用する意図があったからである。こうした措置をとった上で、7月12日伊藤は帰国の途についた。

4.

1908年晩秋、伊藤は京城に帰任した。統監となって6回目の渡韓であった。回を重ね、いつしか慣れ親しんだ旅程も、今回はいつもとは異なる緊張感に包まれていた。というのも、伊藤は日本滞在中に人を介して李完用総理大臣から辞職の意向を伝えられていたからである。

首相の李完用が、辞意の理由を説明するために、統監邸を訪れたのは、11月29日のこ

とであった。李完用は、政府の趣旨を誤解して今なお囂々と政府攻撃する国民を、民間に下って論破したいとその理由を切り出した。しかしより深刻な原因は、提携していた一進会との間に亀裂が深まったことにあった。政府と一進会との関係は、宋秉畷入閣から昨年夏の第三次日韓協約成立の頃までは良好で提携の効果もあった。だがその後一進会の態度は豹変し、むしろ政府攻撃の側にまわり、政府と一進会とは対立するに至っ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一般人心は今なお現政府を一進会の政府とみなし、一進会の悪名は政府批判に直結して、政府は困難な立場に追い込まれている。さらに閣内においても、一進会の宋秉畷は、しばしば同僚と衝突し、内閣破綻の原因ともなりかねない状況にある。李完用はこのように、内情を打ち明けたのである。

伊藤は、恐れていたことが起こりつつあると感じていた。改革といい、韓国の自立化といい、伊藤が目標とする諸政策は、すべて伊藤と協調する安定した韓国政府があって始めて可能なことであった。そうであればこそ、伊藤は、伊藤を信頼する李完用内閣の存続を願ってきたのである。伊藤が李完用内閣の非力さと孤立を知らなかったわけではない。また、日本の後援を恃んだ一進会の非行が韓国民の感情を傷つけ眉をひそませていることも熟知していた。しかし李完用内閣にどれだけ欠陥があろうと、伊藤は李完用に代わる人物を見つ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また一進会にどれほど批判があろうと、韓国社会との関係は一進会を通してしか持てなかった。それゆえ伊藤は、一進会と提携する李完用内閣を、その様々な欠点を補正しながら、これまで必死に支えてきたのである。その内閣が、首相李完用と一進会との確執から、いま崩壊の危機に立っていた。

伊藤は懸命に説得を試みた。韓国における政権交代がいかに大きな政治的意味を持っているか、伊藤がいかに李完用内閣の存続を重視しているか、伊藤はこれらを強調して李完用の自重を促したのである。さらに伊藤は、この時はじめて、李完用政権が崩壊すれば、現実的な選択肢として韓国併合を考えることを告白した。すわなち伊藤は、今回東京を出発する際二三の閣僚にもし李完用内閣が不幸にして崩壊すれば、その際は日本の対韓政策を見直すかもしれないと告げてきたと語ったのである。そして、だからこそ伊藤は李完用の辞職に断じて同意できないと述べたのだった。

2日後の12月1日、首相李完用は、伊藤を再訪し、辞意を撤回した。一進会との関係に変化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そうではなく、李完用は、改めて伊藤が統監であるかぎり、総理の地位に留まる決意をしたのである。伊藤と李完用は、すでに相互に深く依存し、相互に深く結びついていた。

辞意撤回に安堵した伊藤は、来年度の予算を仕上げると、1909年1月早々韓国皇帝の地方巡幸に随行した。皇帝純宗に、地方の実情を視察させることで韓国皇帝としての自覚を高め、同時に反日的な人心の一新を図ろうとしたのである。既に昨年夏頃から、韓国帝室と伊藤との関係は良好となっていた。あれほど伊藤を悩ませた高宗も、譲位後は、日本に留学した皇太子の成長を日々楽しみとする好々爺になっていた。即位後の純宗も、高宗とは異なり、政治に介入しようとはせず、閣僚が「総理大臣が奏請すれば如何なる事にも

直ちに御裁可せられざることなし」と恐縮する「立憲君主」となっていた。そして北部巡幸中の1月25日、伊藤が桂首相宛てに「皇帝は気力一倍顔色帯紅、従前とは頗殊其趣、眞実日本に信頼するの気色龍顔に現れ申候」と書き送ったように、親密さは一層増していた。伊藤が時に絶望しながら、しかし気力を振り絞って韓国の改革に尽力していった背景には、明治天皇の信任とともに、こうした韓国帝室の伊藤に寄せる信頼があったことは疑いない。その意味で、伊藤は韓国でも宮中政治家であった。そして伊藤は、明治初期の天皇巡幸に範をとった、また統監政治の総仕上げでもあるかのような地方巡幸を終えて、2月10日帰国の途についた。

5.

1909年春、伊藤はいつものようには韓国に戻らなかった。5月24日統監辞任を奏上し、6月14日辞意が認められて、伊藤は枢密院議長に復帰した。これに先立つ4月初旬、桂首相と小村外相が韓国併合について打診すると、思いがけず伊藤はこれに異議を挟まなかった。既に伊藤は日韓併合やむなしと考えていた。では1908年暮れの段階では、まだ併合論者ではなかったのに、1909年4月になって伊藤は何故に韓国併合に同意したのだろうか。この間の事情については資料が乏しく、不明な点が多いが、ここでは次の二点を指摘しておきたい。

第一は、韓国政府に関するものである。伊藤の統監政治の要が、伊藤に協力する韓国政府の存在にあったことは、前述した。昨年秋、李完用首相が辞意を仄めかしたとき、伊藤が懸命に慰留に努めたのもそのためであった。結局、李完用は辞職を撤回するが、李完用の辞意の主要な原因である、一進会との関係は依然として緊張したままだった。かねてより一進会顧問の内田良平や盟友の杉山茂丸は、日韓併合の実現と一進会の勢力拡大を推進しようとしていた。しかし統監の伊藤は、一進会への援助と日韓併合に消極的で、これに業を煮やした内田らは、1908年1月頃から、宋秉畷を辞任させて内閣を揺さぶろうとしていた。そして5月下旬になると、内田らは、伊藤が統監においては目標は達成できないと見切りをつけ、伊藤を辞職に追い込む工作として宋秉畷の即時辞任を決行させようとしていた。しかし内閣倒壊を恐れる伊藤は、宋秉畷を内部大臣に転任させ、また一進会員の地方官吏への採用を容認するなどして、宋秉畷の辞任を思い留ませられた。しかし内田や杉山の執拗な工作は止まず、終に1909年2月23日辞任の承認を求めて日本まで追いかけてきた宋秉畷に対し、伊藤は許可を与えざるを得なくなるのである。こうして、内閣と一進会との提携は破棄され、李完用政権は韓国社会との最後の絆も失った。もはや李完用内閣を支えているのは日本だけであり、韓国社会になんら絆をもたない李完用政権を韓国政府とは呼びにくかった。事ここに至れば、併合との差異は紙一重であった。伊藤に協力する統治能力ある安定的な韓国政府、その存続可能性が無くなったとき、伊藤は、統監の椅子から降りることを決意したのではなかろうか。

もうひとつは、人心に関するものである。伊藤辞任の直接の原因が李完用内閣と一進会との確執あるいは併合をめぐる伊藤と内田らとの対立だったとしても、それとは別に、伊藤が統監時代ずっと悩まされ続け、伊藤の改革意欲を減退させ萎えさせていったものがあった。それは、改革をつづけても一向に人心が改善されない、すなわち改革に対する韓国世論の評価が一向に高まらないことであった。伊藤は、明治時代の日本の経験から、当初改革に対する批判や抵抗があったとしても、二三年を経過し実績が目に見えるようになれば、次第に韓国の人心も変化していくと期待していた。しかし、統監として最後の年末となった1908年12月末の時点においても、伊藤は次のように苦い思いを嘔みしめねばならなかった。「各道の情勢に耳を傾くるに政府が経費を投じて各種の施政を為せば為す程、人心は却て嫌悪するが如し。餓者に食を与えるに當り餓者自ら疑念を抱き、之を食ふの念なければ如何に食物を携えいくも彼には毒と思ひ、ただに恩沢を感じざるのみならず却って悪感を抱くなり、要するに韓国の改善は今日の人心一変せざれば充分に行われず、従って急進的の施設は宜しからず」。

伊藤は、こうした人心の背後に、思想界と言論界を支配する韓国特有の儒教があると考えた。そして、近代化や改革にうまく適合しない、その硬直性や空理空論ぶりを批判した。伊藤にとって、どうしても理解できなかつたものは、こうした儒教への韓国社会の執着だった。伊藤にとっても、儒学は無縁のものではない。伊藤はむしろ幼少の頃に漢学を学び堯舜の理想を叩きこまれて人格を形成した世代に属した。ただ、おそらくは、それゆえに伊藤は自分の儒学体験を無意識のうちに普遍化した。「自分の如きは幼少の頃より漢書を学び周の盛時を耳にしたるが、初めて洋行し其文物制度及び各般技術の発達顕著なるを見て、真の周道は西洋に於て行われつつあると見て国家なるものは斯くの如くならざるべからず」と思ったと語っている。ここでは儒学的教養そのものが、西洋を発見し、近代化を推進する原動力になっている。伊藤にとって近代化とは、帝国主義を生き抜く単なる方便ではなく、このように儒学的見地からも道徳的に肯定される、まさに文明化の過程そのものであった。しかしそうした儒学は、中国を中心とする儒教的華夷秩序の辺境に属し、儒教が正統的な体制教義に一度もなつたことのない日本特有の事情に由来するものであった。しかし儒教を体制化した韓国の儒教はそうではなかつた。韓国の儒生にとって、正統的な儒教を維持することは、韓国を韓国たらしめる道徳的で文明的な行為そのものであり、たとえ近代化に成功しなかつたとしても儒教の正統的な継承者たり続けることで韓国の誇りは保つことができた。それは成功するかどうかよくわからない近代化よりも遙かに高い価値をもつ行為であつたのである。伊藤にはその機微が最後までよくわからなかつたように見える。その儒教をめぐる彼我の差が、伊藤の退場を用意したもうひとつの背景であつたように思われるのである。

(日本語要約)

伊藤博文と二人の君主 — 伊藤博文の統監政治

坂本一登

統監期の伊藤博文の研究は、日韓両国とも、基本的には、日本の韓国侵略という大きな枠組みの中で分析され、記述されてきた。問題の核心は、日本の韓国侵略という大きな物語と伊藤の統監政治とをいかに整合的に理解するかであり、とりわけ伊藤が日韓併合を決意した時期について多大な関心が注がれてきた。それ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苦しんだ多くの人々、日本の植民地支配の不当さに声すら上げられなかった多くの人々の無念を念頭におけば、理解可能であり、また必然でもあったろう。しかしその一方で、歴史理解という視点からは、その代償が全くなかったとは言い難いように思われる。しばしば分析は予め用意された日本の韓国侵略という物語に沿うように伊藤の統監政治の侵略性や偽善性の告発に力が注がれ、そこに図式化や単純化の傾向が全くなかったとは言い難いように思われる。こうした文脈のなかでは、統監期特有の政治的複雑さや伊藤の政治指導の紆余曲折についてあまり関心が高まらなかったとしても、無理のないことであつたらう。しかしながら、統監期の政治的複雑さや伊藤の政治指導については、なお内在的理解が求められている数多くの問題が残さ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そしてまた、これらの検討を通じてはじめて、韓国独立の維持と近代化を唱えていた伊藤が、なぜ韓国併合に同意したのか、伊藤の曲折を内側から理解する道も開かれていくように思われるのである。

本稿は、こうした関心から、統監期の韓国政治を伊藤の政治指導を中心に考察する。伊藤は、かねてより改革を実施して韓国を近代化し、近代化した韓国と提携することを、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併合よりも望ましい選択肢であると考慮していた。そしてそれを具体的実現する手段が、韓国の「施政改善」であった。では伊藤は統監として、韓国の「施政改善」に対してどのように取り組み、どのように格闘していったのか、またその際一体伊藤は何を問題と考え、何に苦しんだのか、そしてその伊藤の政治指導と韓国併合とはどのように関係するのか、これらの問題を、伊藤に即して、伊藤の内側から、考察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本稿は、その具体的な政治指導を、伊藤が精力的に指導していた、韓国施政改善協議会の議事録を主たる材料として分析する。韓国施政協議会を分析の中心とするのは、報告者の能力や時間的制約の外に、この協議会が伊藤の韓国政府に対する政治指導の中核に位置し、また統監政治についての伊藤の肉声が極めて豊富だという点にある。実際、1つの政治的任務や役職について、伊藤の肉声がこれほどまでにまとまって残っている資料は、明治期日本の政治を含めても、他にない。また協議会での議論はすべて記録され、議事録として明治天皇と明治政府に送られた。それは、直接には明治天皇や明治政府に対する説明責任のためであるが、それに留まらず、自らが指導した統監政治に対する伊藤の「歴史へ

の弁明」でもあったように思えるからである。

さてその伊藤の政治指導を分析するにあって、本稿は、統監期の内政の統治主体があくまで皇帝を中心とする韓国政府にあったことを重視する。確かに議事録を読んでいると、伊藤は施政改善協議会の議論をリードし、あたかも韓国政府の実質的な首相のように見えることがある。しかし、施政改善協議会の場で伊藤がいかに熱弁を振るおうと、大臣の任免権や政策の最終的な裁可権をもつのは皇帝であり、伊藤が出席しない韓国政府の閣議も施政改善協議会とは別に存在していた。ある政策を採用するか否か、あるいは決定した政策を具体的にどのように実施していくかは皇帝を含めた韓国政府の手中にあり、伊藤の政治指導は間接的なものに留まらざるを得なかった。言い換えれば、統監期の伊藤は、韓国の政治を自由に操作出来たわけではなく、伊藤の統監としての政治指導が成功するかどうかは、ひとえに伊藤に対して積極的に協力する、統治能力ある韓国政府が存続するか否かにかかっていた。だからこそ、伊藤は、常に韓国の政府のあり方に強い関心を持ちづけ、改革＝近代化政策を実行できる政治システムの構築に取り組んでいったのである。政治システムの改革こそ、伊藤が最も重視し、最も積極的に関与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った。

本稿は、政治システムの改革を中心とする伊藤の政治指導を、4つの時期に分けて考察する。第1期は、伊藤の統監赴任から短期間の帰国を挟んで11月新予算を策定して日本に帰国するまでである。第2期は、伊藤の帰任からハーグ密使 をへて高宗の譲位と第三次日韓協約の締結まで、第3期は日本が内政を掌握した新体制の下、李完用内閣が一進会と提携しつつ施政改善を試みた時期、第4期は反日主義が広まる中で李完用内閣と一進会の対立が深まり伊藤が統監を辞任するまでである。

本稿は、以上の考察を通じて、伊藤がまず韓国政治の最大の問題は、強大な皇帝権力の濫用にあると認識し、高宗と対決して宮中改革に取り組み、宮中を非政治化して内閣を政治の中心としようとしたこと、しかし政府批判日本批判が昂揚し、その中で朴斎純政権が倒れると、韓国社会から一層孤立した李完用内閣を擁立せざるを得なくなること、そして、伊藤はその李政権の脆弱性を補完し、改革をより実効的に推進するために一層の日本人官吏を採用にふみきり、中央政府の強化を試み、さらに地方政治の改革に取り組んでいったこと。しかし日本の主導に対する反感や言語の不通もあり、伊藤が日韓官吏の調和に努めたにもかかわらず、改革は充分には進展しなかったこと、そして、最終的には、李完用内閣と一進会との対立によって、伊藤に対して協力的で、なおかつ安定的で統治能力のある韓国政府を存続させることが不可能となり、また日韓両国における儒教の相違を背景とした人心の離反もあり、伊藤が統監政治の継続を断念するに至ったことなどを議論する。

尚、表題の二人の君主とは、明治天皇と皇帝高宗のことであり、当初は、伊藤が行った日韓両国における宮中改革の異同とそれを通して両国の君主制の特質について考察する予定であったが、報告原稿を準備する中で、当面の関心に変化が生じ、少し内容がずれたことをお詫びしたい。また、今回の報告は、時間的にも、分析視角の点でも、資料の点でも、極めて限定的された仮説であることをお断りしておきたい。

(한글요약문)

이토 히로부미와 두 명의 군주 -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정치

사카모토 가즈토

통감기의 이토 히로부미에 관한 연구는, 일한 양국 모두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한국침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분석되고 기술되어 왔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한국침략이라는 큰 이야기와 이토의 통감정치를 얼마나 정합적으로 이해하는가에 있고, 특히 이토가 일한병합을 결의한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려 왔다.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부당함에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능하고, 또한 필연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역사이해라는 시점에서는, 그 댓가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종종 분석은 미리 준비된 일본의 한국침략이라는 이야기에 따르도록 이토의 통감정치의 침략성이나 위선성의 고발에 힘이 쏠리고, 거기에 도식화나 단순화의 경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통감기 특유의 정치적 복잡함이나 이토의 정치지도의 우여곡절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감기의 정치적 복잡성이나 이토의 정치적 지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재적 이해가 요구되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비로서, 한국독립의 유지와 근대화를 외치고 있던 이토가 왜 한국병합에 동의했는가, 이토의 곡절을 내측에서 이해하는 길도 열리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심에서, 통감기의 한국정치를 이토의 정치지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토는 일찍부터 개혁을 실시해서 한국을 근대화하고, 근대화한 한국과 제휴하는 것을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병합보다도 바람직한 선택지라고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한국의 「시정개선」이었다. 그러면 이토는 통감으로서, 한국의 「시정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씌름하고 어떻게 격투해 갔던 것일까, 또 그때 도대체 이토는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엇에 고심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토의 정치지도와 한국병합은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이토에 즉해서, 이토의 내측으로부터 고찰하려고 하는 것이다.

본고는 그 구체적인 정치지도를, 이토가 정력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던 한국시정개선헌의회의 의사록을 주된 재료로 해서 분석한다. 한국시정개선헌의회를 분석의 중심으로 하는 것은, 보고자의 능력이나 시간적 제약 외에, 이 협의회가 이토의 한국정부에 대한 정치지도의 중핵에 위치하고, 또 통감정치에 관한 이토의 욕성이 지극히 풍부하다고 하는 점에 있다. 실제로, 하나의 정치적 임무나 지위에 대해서 이토의 욕성이 이만큼 정리되어 남아있는 자료는, 메이지 시기 일본의 정치를 포함해서도 달리 없다. 또 협의회에서의 의론은 모두 기록되어, 의사록으로서 메이지 천황과 메이지 정부에 보내졌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메이지 천황이나 메이지 정부에 대한

설명책임을 위해서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가 지도한 통감정치에 대한 이토의 「역사에의 변명」이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토의 정치지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본고는, 통감기의 내정의 통치주체가 어디까지나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정부에 있었다는 것을 중시한다. 확실히 의사록을 읽고 있으면, 이토는 시정개선협회의 의론을 리드하고, 마치 한국정부의 실질적인 수상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러나 시정개선협회의 장에서 이토가 얼마나 열변을 펼치던, 대신의 임면권이나 정책의 최종적인 재가권을 가진 것은 황제이고, 이토가 출석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각의도 시정개선협회와는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정책을 채용할 것인가 아닌가, 혹은 결정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해 갈 것인가는 황제를 포함한 한국정부의 수중에 있고, 이토의 정치지도는 간접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다. 바꾸어 말하면, 통감기의 이토는 한국의 정치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토의 통감으로서의 정치지도가 성공하는가 어떤가는, 전적으로 이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통치능력 있는 한국정부가 존속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는 항상 한국 정부의 존재 형태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개혁=근대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의 구축에 몰두해 왔던 것이다. 정치시스템의 개혁이야말로 이토가 가장 중시한,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본고는 정치시스템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이토의 정치지도를 네 가지 시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제1기는 이토의 통감부임부터 단기간의 귀국을 사이에 두고 11월 신예산을 책정해서 일본에 귀국하기까지이다. 제2기는 이토의 귀임부터 헤이그 밀사사건을 거쳐서 고종의 양위와 제3차 일한협약 체결까지, 제3기는 일본이 내정을 장악한 신체제 아래, 이완용 내각이 일진회와 제휴하면서 시정개선을 시도한 시기, 제4기는 반일주의가 퍼지는 가운데 이완용 내각과 일진회의 대립이 깊어지고 이토가 통감을 사임하기까지이다.

본고는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이토가 우선 한국정치의 최대 과제는 강대한 황제 권력의 남용에 있다고 인식하고, 고종과 대결해서 궁중개혁에 매달려, 궁중을 비정치화해서 내각을 정치의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정부비판 일본비판이 고양되고, 그 가운데 박제순 정권이 무너지자, 한국사회로부터 한층 고립된 이완용 내각을 옹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그리고 이토는 그 이완용 정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개혁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층 일본인관리를 채용하는 데 나서고, 중앙정부의 강화를 시도하며, 또한 지방정치의 개혁에 몰두해 왔던 것. 그러나 일본 주도에 대한 반감이나 언어의 불통도 있어, 이토가 일본인과 한국인 관리의 조화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충분히는 진전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완용 내각과 일진회의 대립으로 말리암아, 이토에 대하여 협력적이고 게다가 안정적이고 통치능력이 있는 한국정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또 일한 양국에 있어서 유교의 차이를 배경으로 한 인심의 이반도 있어, 이토가 통감정치의 존속을 단념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등을 의론한다.

또한, 표제의 두 명의 군주란 메이지 천황과 고종 황제를 가리킨다. 당초는 이토가 행한 일한 양국에 있어서 궁중개혁의 이동(異同)과 그것을 통해서 양국의 군주제의 특질에 대해서 고찰할 예정이었지만, 보고 원고를 준비하는 가운데 당면 관심에 변화가 생겨 조금 내용이 빗나간 것을 사과하고 싶다. 이번 보고는 시간적으로도, 분석시각의 점에서도, 자료의 점에서도, 지극히 한정적으로 행해진 가설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 두고 싶다.

「伊藤博文と二人の君主 - 伊藤博文の統監政治」토론문

최석완(崔碩莞)

1.

본 논문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한 후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국에서 시도한 개혁 즉, '근대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의 구축' 노력이 어떠한 양상 속에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통시대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토의 통감 정치의 특색을 침략성이나 위선성에서 찾아 왔던 종래의 연구 경향에 대해, 이는 한국병합 혹은 한국침략이라는 결과 또는 선입견에 얽매인 조급한 결론이라고 비판하면서, 통감 정치의 성격과 전개 양상을 해당 시기의 정치 변화 속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즉 종래의 연구는 한국병합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연구가 도식화,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 결과 통감부 시기 특유의 정치적 복잡성이나 이토의 정치 지도의 우여곡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통감부 시기의 이토의 정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오해를 무릅쓰고 평가한다면, 본 논문은 침략정책사 또는 한일관계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순 정치사적 관점에서 통감부 시기의 정치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토의 목표는 정치 개혁을 실시하여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고 근대화된 한국과 제휴함으로써 일본의 안전보장에 유익한 한일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이토는 통감부 말기까지 한국병합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이토가 말하는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란 궁중의 비정치와와 내각의 정치 중심화를 통해, 이토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초 이토는 2, 3년 안에 정치 개혁이 달성되어 내각이 제 구실을 하게 되면 통감 정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의도를 저해하는 고종의 권력 남용과 박제순 내각의 붕괴, 뒤이어 등장한 이완용 내각과 일진회의 갈등 등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2.

본고에서는 이토의 구상 즉 근대적 정치 시스템을 갖춘 자립국 한국을 만들려는 이토의 노력이 좌절된 원인, 이토가 처음과 달리 한국병합 찬성으로 돌아선 원인을 주로 한국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면 궁중(고종)의 권력 남용과 고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제순 내각의 허약함,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이완용 내각의 한계와 일진회의 견제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헤이그밀사사건에 대한 해석에서도 잘 나타난다. 헤이그밀사사건을 이토의 정치 개혁을 오해한 고종의 권력 남용으로 해석함으로써, 이후의 한국 주권 찬탈에 이은 병합으로의 길을 재촉한 책임이 정치사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 부분 한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은 타당한 것인가?

오히려 근대적 정치 시스템 구축의 실패 원인은 이토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토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반일 세력을 제거했다. 따라서 고종은 한일협약에 찬성한 박제순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들도 내각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며, 이래서는 이토의 의도가 실현될 여지가 없었다. 박제순 내각 붕괴 후 이완용을 내각의 수반으로 세울 때, 이토는 명확하게 그 한계를 숙지하고 있었고, 이완용이 송병준과 제후 관계에 들어설 때 이를 말리지 못한 것도 이토였다. 송병준을 이용하여 이완용 내각을 흔드는 일본의 세력을 차단하지 못한 것도 이토의 정치적 한계를 의미한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극히 한정적인 한국의 정치 세력에 의존하면서 2, 3년 내에 통감 정치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며, 이에 대해 고종은 물론 한국민들까지 호의를 표명하게 될 것으로 내다본 이토의 통찰력에는 큰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는 아마도 메이지 유신 이래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기까지 한국의 정서가 일본에 대해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토의 이해가 매우 선부른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요컨대 이토의 개혁 정치가 성공할 수 없는 요인은 이토 스스로가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3.

이토의 통감 정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세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토가 말하는 근대적 정치 시스템을 갖춘 ‘자립한 한국’은 도대체 어떤 국가였는지, 또 그 국가가 맺게 될 일본과의 ‘제후’는 어떤 한계를 갖는 것이었는지, 나아가서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 한국을 어떻게 위치시키려 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검토가 선결된 후에 이토의 정치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4.

대체로 일본역사학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을 연구할 때, 해당 시기의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정책이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할 뿐, 그 정책이 등장한 시점까지의 한국지배정책의 도달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의 대상에서 사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토의 통감 정치는 한일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외교권 박탈이 완료된 단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토가 병합을 애써 회피하기 위해 이완용 내각의 존속을 꾀했다든가 또는 근대적 입헌정치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려고 노력했다든가, 이에 대한 고종의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든가, 한국민이 이해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일국사적 순 정치사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부정뿐, 관계사적 관점에서 내려질 수 있는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통감 정치는 이미 관계사이다. 또 이토의 의도대한관계없이 통감 정치는 고종이나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교권 박탈을 토대로 한 내정 간섭의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침략이라는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선입견의 배제라는 관점에서 통감 정치를 이해하는 작업이, 관계사의 관점과 대한 정책의 단계적 변화를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討論文 日本語要約)

論文：坂本一登：伊藤博文と二人の君主 - 伊藤博文の統監政治

討論：崔碩莞 (大真大学、日本学科)

一

本稿は、伊藤の韓国政治の改革、即ち「近代化政策を実行できる政治システムの構築」のための努力が、どのように展開されたかを検討したものである。従来の研究が、伊藤の統監政治の特徴を侵略性や偽善性に求めてきたのに対し、それは韓国併合あるいは韓国侵略という結果にとらわれた早急な結論であると批判しながら、統監政治の性格および展開の様相を、該時期の政治状況に即して検討することを主張した。即ち、従来の研究は、韓国併合という先入観にとらわれたため、研究が図式化や単純化する傾向が強かった。その結果、統監期特有の政治的複雑さや伊藤の政治指導の紆余曲折をろくに説明することができず、これは伊藤の政治に対するより正当な評価を妨げたという。本稿は、侵略政治史または日韓関係史の視点よりも純政治史的観点から統監期の政治を把握しようとする試みであると見られる。

伊藤の目標は、政治の改革を実現させて韓国の近代化を成し遂げ、また近代化した韓国と提携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安全保障に有益な日韓関係を設定しようとするのであった。伊藤は統監府時代の末期まで韓国併合を考慮しなかった。伊藤のいう政治システムの改革とは、宮中の非政治化および内閣の政治中心化を通じ、伊藤自身の構想する改革政策が円滑に実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った。最初、伊藤は二、三年の内に政治改革が達成されれば、統監政治に対する韓国の理解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予想した。しかし、そのような予想は、高宗の権力濫用や朴齋純内閣の崩壊、後継李完用内閣と一進会との確執などのため挫折された。

二

本稿では、伊藤の構想、即ち近代的政治システムを備えた自立した韓国をつくろうとする伊藤の努力が挫折した原因や、伊藤が最初とは違って韓国併合の賛成へまわった原因などを、主に韓国側に求める。例えば、高宗の権力濫用、朴齋純内閣の脆弱さ、そして政治的基盤のよわい李完用内閣の限界や一進会の牽制などを、その原因として指摘する。このような態度は、ハーグ密使事件に対する解釈にもよく現れている。ハーグ密使事件を伊藤の政治改革を誤解した高宗の権力濫用として理解しているが、これは以後の韓国主権の篡奪やそれにつづく韓国併合への道を促した責任が韓国にもあるという意味であろう。しかし、そのような解釈は妥当であろうか。

むしろ近代的政治システムの構築に失敗した責任は、伊藤自身にあったのではない。伊藤は、第二次日韓協約を強制する過程で、韓国政府内の反日勢力を除去した。したがって高宗は、協約に賛成した朴齋純（内閣）に信頼をよせなかったのであり、国民もその内閣を支持しなかったのである。伊藤の意図が実現される余地は最初から

ほとんどなかっ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朴齋純内閣の崩壊後、李完用を後継内閣の首班に立てる際、伊藤はその内閣の限界を明確にわかっており、また李完用が宋秉峻との提携を主張した時もそれを阻止できなかった。さらに宋秉峻を利用して李完用内閣を揺さぶる日本の勢力をも遮断できなかった。それらは結局伊藤の政治的限界を意味するものであろう。以上のことを考え合わせれば、ごく限られた韓国の政治勢力に頼りながらも二、三年の内に統監政治が本軌道に乗ることを確信したり、それに対し、高宗はもちろん、国民も好意を現すことになるだろうと予測した伊藤の洞察力には、大きな欠陥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またこれは、明治初から第二次日韓協約が締結されるまでの間、日本に対する韓国の態度がどのような様相を現していたかに対する伊藤の理解が、極めて甘い水準の低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の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だろうか。要するに、伊藤の改革政治が成功できなかった要因は、伊藤自らが構築しつつあったといえるだろう。

三

伊藤の改革政治に対するよりの確な評価のためには、つぎのような問題が先決される必要がある。第一、伊藤のいう近代的政治システムを備えた「自立した韓国」は、いったいどのような国家であったのか。第二、またその韓国と日本との「提携」というのは、どのような限界を持つものであったのか。第三、ひいては東アジアの国際関係のなかで、自立した韓国をどのように位置づけようとしたのか。以上のことを詳細に検討してから、伊藤の政治改革の持つ意味を考えるべきであろう。

四

大雑把に言えば、日本の歴史学界では、韓国に対する政策を研究するとき、該当期の政策の性格を分析し、またその政策が将来に及ぼす影響に対して考慮するだけで、その政策が出現した時点までの韓国支配政策の到達段階に対しては、それを考慮の対象から捨象させる傾向があると判断される。例えば、伊藤の統監政治は、日韓関係に大きな衝撃をあたえた外交権の剥奪（第二次日韓協約）が完了した段階で開始され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伊藤が、併合を避けるため李内閣の存続を図ったとか、近代的立憲政治のシステムを韓国に導入させようと努力したとか、あるいはこれに対する高宗の態度が否定的であったとか、韓国の国民が伊藤の改革を理解できなかったなどのような評価は、一国史的もしくは純政治史的観点から見れば可能であっても、関係史的観点からすれば、十分なことではないと思われる。統監政治はすでに関係史の領域にあるということにも十分な注意を注ぐ必要がある。また、伊藤の意図がどのようなことであれ、統監政治は高宗や韓国政府の立場からみれば、外交権の剥奪を土台にした内政干渉の領域に入っているとの点も決して軽視しては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要するに、韓国侵略という物語に沿わない、先入観の排除という観点から統監政治を理解する作業が、関係史の観点や韓国に対する政策の段階的变化を考慮の対象から除いたまま、なされてはならないと思われる。

메이지정부의 대외침략정책과 伊藤博文 -통감부 시기를 중심으로-

방광석

머리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고종을 강제적으로 퇴위시키는 등 일본정부를 대표해 대외침략을 진두지휘한 ‘침략의 원흉’, 또는 제국주의자, 침략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일반화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근대국가 건설의 최대공로자로 평가받고 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근대화폐제도의 확립, 내각제와 화족제(華族制)의 창설, 헌법제정, 청일전쟁 등을 주도하면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 대등한 근대국가의 건설을 추진해나간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평가는 일면 타당하다.

일본의 한국지배과정에 관해서도 이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토가 적극적이든 점진적이든 최초부터 한국병합을 전제로 ‘보호통치’를 실시했다고 보고 ‘시종병합론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¹⁾ 일본에서는 한국지배 또는 한국병합과 관련해 ‘문치파(文治派)’와 ‘무단파(武斷派)’의 대립을 강조하는 견해가 전기물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 이토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 ‘문치파’는 병합에 소극적이었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가쓰라 타로(桂太郎),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등 ‘무단파’는 병합에 적극적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후자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대한정책을 둘러싸고 ‘문치파’와 ‘무단파’의 기본적인 차이는 없으며, 차이가 있다면 침략방법론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강하다.²⁾

위와 같은 이토에 대한 한·일간 상반된 이미지와 상이한 평가는 이토의 발언과 행동의 일부분만을 강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토의 정치자세와 사상의 전체상을 염두에 두고 그의 대한정책의 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대한정책 추이를 따라가며 구체적인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이토와 다른 정부 수뇌 사이의 의견대립과 협조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韓明根, 「統監府시기 日帝의 侵略論」 『國史館論叢』 90, 2001; 박수연, 「統監 伊藤博文의 對韓政策과 이에 대한 愛國啓蒙派의 인식」 『韓國民族運動史研究』 20, 1998; 姜昌錫, 『조선통감부연구Ⅱ』 국학자료원, 2004 등.

2) 山辺健太郎, 『日韓併合小史』 岩波書店, 1966; 姜東鎭,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9; 森山茂德,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87.

1. 한국의 보호국화와 伊藤博文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정부는 즉각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2월 23일)를 체결하고 일본군의 주둔권과 한국에서의 자유행동을 한국정부에게 인정받았다. 또 5월 30일에는 ‘대한시설강령’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한일의정서의 내용을 대폭 확장하는 정책을 취했다. 즉, 군대의 주둔, 외교권의 장악, 재정의 감독, 교통기관과 통신기관의 장악 등 다양한 특권을 획득하고 한국의 보호국화를 실현하려고 했다.³⁾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해 재정, 외교고문의 용빙과 외교교섭을 할 때 한국정부가 사전에 일본정부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듬해인 1905년에는 ‘보호권 확립’(4월 8일)을 각의에서 결정하였고 ‘보호권확립실행’(1905년 10월)을 각의 결정하는 한편⁴⁾, 점차적으로 한국의 보호국화에 대한 열강의 승인을 얻었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일본정부는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을 체결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청일전쟁 시기 일본정부가 한 때 기도했다가 좌절된 한국보호국화가 이 때 실현된 것이다.⁵⁾

이토는 이러한 일본의 한국침략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러일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904년 3월 7일 이토는 한국황실 ‘위문’ 특파대사에 임명되었다.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후 한국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국황제를 압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는 1898년 청국여행에서 귀국할 때 한국에 들린 이후 고종과 두 번째 대면이었다. 이토 일행은 1904년 3월 13일 일본을 출발, 한국에 도착해 18일 고종을 알현하고 국서를 봉정했다. 한일의정서의 체결을 주저하거나 그 조인에 반대하는 고종 황제와 반일관료에 압박을 가해 의정서를 앞으로의 한일‘보호’관계의 기축으로 인정시키는 것이 이토에게 부여된 과제였다.⁶⁾ 5월 30일에는 원로회의에서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이 결정되었다. 이들 결정에는 물론 이토도 원로 자격으로 참여했다.

1905년 9월에 조인된 러일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일본이 한국을 피보호국으로 삼기 위해서는 합의에 기초한 보호조약이 필요했다. 고무라 슈타로(小村寿太郎) 외무대신은 이 조약교섭을 맡을 책임자로 이토를 생각하고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주한공사와 함께 이토 자택을 방문해 특파대사가 돼 줄 것을 요청했다. 이토는 고무라와 하야시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한국 파견을 쾌히 승낙했다.⁷⁾

3) 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原書房, 1965, 224~228쪽.

4) 위의 책, 233~234쪽.

5) 청일전쟁 시기 한국보호국화 시도에 관해서는 高橋秀直, 『日清戰爭への道』(東京創元社, 1995)第Ⅱ編 第三章 및 森山の 앞의 책 第一部 第一章을 참조.

6) 春畝公追頌會 編, 『伊藤博文傳』下卷, 統正社, 1940, 639~642쪽.

이후 을사조약의 교섭과정을 살펴보면 널리 알려진 대로 한국주둔 일본군의 무력시위 속에서 이토가 황제와 각료를 한 사람씩 다그치면서 협박해 조약을 체결시켰다. 이토는 서울에 도착한 뒤 곧바로 고종을 알현해 ‘보호조약’의 체결을 요구했다. 고종은 여러 이유를 붙여 이를 거부하려 했으나 이토의 강경한 자세에 점차 의지가 약해졌다. 이토는 외교권만 위탁하면 내정은 완전히 자치할 수 있다고 호언하면서 결정이 늦어지면 점점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해 결국 조약안을 정부에서 먼저 논의한 뒤 재가를 요청하도록 하겠다는 고종의 척어를 얻어냈다. 11월 16일 이토는 정부 대신들을 소집해 협박하여 마침내 18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한국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 사이에서 협약이 조인되었다.⁸⁾ 이 협약의 체결 뒤 일본은 이 사실을 서둘러 외국에 통보하고 대한제국에 주재하고 있던 서양 각국의 외교사절은 12월 초순까지 거의 한국을 떠났다.

이토가 귀국한 뒤 일본정부는 서둘러 통감부를 설치했다. 내외적으로 일본의 한국보호를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에서는 통감부를 문치조직으로 삼으려는 의견과 무관(武官)조직으로 삼으려는 의견이 대립하여 논의했으나, 통감에 임명된 이토가 강력하게 주장한 점도 작용해 통감부를 외무성에서 분리하여 천황 직속으로 삼자는데 합의하여 문관인 통감이 한국주둔군에 대한 명령권을 갖게 되었다.

12월 20일 「統監府 및 理事庁官制」가 공포되었다. 1906년 1월 31일 일본공사관 및 영사관이 폐지되고 2월 1일부터 통감부와 이사청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통감업무가 개시된 후 통감이 곧바로 부임하지 않아 하세가와 한국주둔군 사령관이 임시로 직무를 대리했다.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보호국화에 공을 세운 뒤 일단 귀국했던 이토는 1905년 12월 21일 통감에 임명되어 1906년 3월 2일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한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2월 5일 입헌정우회의 통감부임 송별회에서 이토는 ‘보호통치’에 임하는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일본 쪽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괴로운 경험을 맛보게 되었다고 해도 한편 한국 쪽에서 보면 큰 압박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에 필시 기꺼이 받아들이지(悅服)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을 상실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라도 마찬가지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 그들을 유혹하는 자 있으면 그들은 즉각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므로 일본은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다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일본의 보호는 그 독

7) 위의 책, 680쪽.

8)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683~704쪽; 「伊藤特派大使內謁見始末」 및 「談話筆記」(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第六卷 上, 巖南堂書店, 1964, 19~34쪽)에 실려 있다.

립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시키고, 일본은 일본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결코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는 진심을 갖고 이에 임함과 동시에 한국민의 처지를 슬퍼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 재정을 막론하고 실로 동정을 표하려 한다.⁹⁾

한국에서 보면 보호국화는 독립을 잃는 것이지만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보호가 한국의 독립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민을 ‘열복(悅服)’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당시 많은 한국민은 이토의 말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한국민의 생각을 대변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보호조약’의 체결과 이토의 통감취임에 대해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즉, 1906년 2월 6일자 논설을 통해 한국에서 통감의 위치와 권한이 한일간 조약에 기초해 있지 않다는 것을 논박하고 통감 자체를 부정했다. 통감의 권한과 책임은 국제정치의 관례에 따라 열강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빠져 있으며 근본적으로 한일 사이의 자유의지에 의한 조약에 근거해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의 권한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한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감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의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에서의 통감의 권한은 한국민과 한국의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행사된다는 점과 통감은 국정의 조언자가 아니라 지배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¹⁰⁾ 나아가 이토는 대한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을 무력으로 ‘합병’, ‘흡수’하는데 있다고 보았다.¹¹⁾

서울에 도착한 이토 통감은 먼저 한국의 ‘시정개선’을 위한 급무로서 차관문제, 보통교육의 보급, 지방경찰력의 확장을 들고 여러 대신과 협의하여 구체적 안을 마련한 뒤 황제의 재가를 받아 실행하겠다고 통고했다. 이토가 통감으로서 최초로 황제를 알현할 때부터 본연의 업무인 외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시정개선’만을 강조한 것은 내정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통감부의 산하기구를 보면 내정장악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다. 최초의 총무부, 농상공부, 경무부의 3부 체제로부터 1907년 3월 외무부가 신설되고, 법제심사회가 설치되었다. 기존의 고문관, 참여관, 보좌관, 고문경찰 등은 모두 통감의 지휘통솔을 받게 되었다.

한편 한국정부에게 통감부의 의사를 직접 전하기 위해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

9) 博文館編輯局 編, 『伊藤公演說全集』 博文館, 1910, 192~193쪽.

10) 『大韓每日申報』 1906년 8월 19일자 論說.

11)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9일자 論說

의회'를 이용했다. 이 협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토가 부임한 직후인 3월 13일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통감이 직접 한국정부의 각 대신을 통감관사로 소집해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고 그 집행을 강제하는 자리로 사용되었다.¹²⁾ 한국정부로부터는 참정대신 이하 모든 대신이 참석하였고 통감부로부터는 통감 이하 총무장관, 비서관, 서기관 등이 배석했다.

이 '시정개선협의회'의 의장은 언제나 통감 또는 부통감이었고 회의의 내용도 협의가 아니라 항상 통감 측이 강요하는 것을 한국의 대신들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행해졌다.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경제적 지배권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토는 한국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것들을 개혁할 수 없는 한국인을 '무능력자', '야만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부터 한국을 구해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침략을 정당화한 다음 각 '시정개선'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헌병경찰제도, 재정제도, 화폐금융제도, 토지제도, 교육제도 등의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것들은 개혁의 근대적인 면을 내세워 반발을 억제하면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원활하게 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¹⁴⁾

2. 한국지배정책의 전환과 정미조약

이토는 한국의 보호 및 병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토는 통감 취임 이래 한국의 보호와 '부액(扶掖)'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한국민에 대해 자주 '한국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다', '병합할 필요는 없다'고 명언했는데 그것은 일본에 의한 '보호통치'의 정당성을 한국민에게 '열복(悅服)'시키기 위해 강조한 것이며 장래의 '병합'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토가 원로(元老)로서 대부분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관여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정부의 한국지배방침에는 이토

12) 施政改善協議會는 1909년 12월 28일까지 총 97회 개최되었는데 이토가 참석한 것은 1909년 5월 15일의 제77회 협의회까지이다. 이 협의회는 기록은 앞의 『日韓外交資料集成』第六卷 上, 中, 下에 「大臣會議筆記」로 실려 있다.

13) 山辺健太郎, 앞의 책, 136쪽. '施政改善協議會'에서 한국 대신들에게 강요한 구체적 정책은 사전에 참여관 회의 등에서 결정되어 있었다(小川原宏幸, 「伊藤博文の韓國併合構想と第三次日韓協約体制の形成」 『青丘學術論集』 25輯, 2005년 3월, 85쪽).

14) 류재곤은 1906년 3월 13일부터 1909년 5월 15일까지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의 회의록인 「大臣會議筆記」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이토의 한국침략정책을 규명하고 했다. 이토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었다고 전제된 다음 '시정개선' 정책을 검토해 총독부통치의 원형은 이토에 의해 정형화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柳在坤, 「伊藤博文의 대한정책(1906~1909)」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사연구』 현음사, 1996).

의 의향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토는 한국이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다른 정부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병합의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단, 그것은 1904년 5월의 「대한시설강령」에 “점차 해당국에 있어서 우리의 발판을 확립하고 ……착착 그 경영을 실행하려는 것이 현재의 급무라고 믿는다” 라고 써 있듯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실시된 이토의 ‘시정개선’ 정책은 한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위로부터는 외국의 관여를 기대하는 고종의 행동, 아래로부터는 직접 반일무장투쟁을 실행하는 의병운동과 일본으로부터의 기업자본대여에 대한 국채보상운동의 활발한 전개가 그것이다. 이에 의해 ‘보호통치’에 대한 국내외로부터의 압박과 비난이 고조되자 이토의 태도도 서서히 변화해간다.

이토가 한국병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1907년 러일협약 교섭 때 당시의 외상 하야시 다다스(林董)에게 병합의 가능성을 표명한 것이다. 이토는 4월 13일 “모토노(本野) 공사의 품의와 같이 공문을 교환해 ‘장래의 발전’이라는 말은 ‘어택세이션(annexation)’까지도 포함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득책이다”, “한국의 형세가 지금처럼 추이한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어택세이션’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다”, “한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급무”¹⁵⁾라고 하는 등 즉시병합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주장을 전개했다.¹⁶⁾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택세이션’이라는 단어는 외교적 필요에서 꼬집어낸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 이토가 ‘한국문제’의 최종적 해결수단으로서 ‘어택세이션’, 즉 ‘병합’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이토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이보다 앞선 3월 원로회의에서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더 한층의 발전을 러시아에 승인시킨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대(對)러시아 협약안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1907년에 들어 이토는 지금까지의 ‘보호통치’의 형태에 변화를 주려고 했다. 5월 22일 박제순내각을 경질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해온 이완용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했다. 6월 14일에는 새로운 내각관제를 공포해 국정의 책임을 내각에 지우고 황제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다. 5월 16일의 알현에서는 배일사상이 고조되는 배후에는 궁중의 의사가 있다고 고종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그치지 않는다면 일본은 마침내 한국보호의 책임을 던져버리고 더욱 한 걸음 나아가는 조치에 나설 지도 모른다”¹⁷⁾고 말해 병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듯 이토는 반일저

15) 外務省編, 『日本外交文書』第40卷 第1冊, 日本國際連合協會, 1960, 124쪽.

16) 이에 대해 모리야마는 “러시아에 대한 강경과와 관용과, 그리고 병합에 대한 시기상조파[小村]와 즉시단행파[伊藤]라는 이중의 대립이 존재했다”고 파악한다 (森山茂德, 『日韓併合』吉川弘文館, 2002년, 134쪽).

17) 1907년 5월 16일 「內謁見始末」 『日韓外交資料集成』第六卷上, 472쪽.

항운동을 억눌러 ‘보호통치’를 ‘한 걸음 진전시키는’ 정책을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일본정부가 대한정책을 급속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때마침 발생한 헤이그 밀사사건이었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는데 고종은 이 회의에 전 평리원(平理院) 검사 이준(李儁) 등 세 명의 밀사를 파견해 일본의 한국보호국화의 부당성을 호소하려 했다. 그들은 한국에는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했지만 각국 대표에게 탄원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국제협회의 회의에서 연설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호소하려 했지만 결국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토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7월 7일 이토는 이러한 행위는 일본에 대해 공공연히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宣戰)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각총리대신을 통해 황제에게 알렸다.¹⁸⁾ 이토는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킴과 아울러 일거에 한국의 내정권을 장악하려고 기도했다. 일본정부에서는 이토의 요청을 받아 1907년 7월 10일 원로·내각회의에서 대한처리방침을 결정했다. 그 내용은 이번에 조선의 내정 전반을 장악할 것, 그 실행은 이토에게 일임한다는 것이었다.¹⁹⁾ 특히 정부의 방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야시 다다스 외상을 한국에 파견했다.²⁰⁾ 이토의 생각도 정부의 방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토는 고종을 퇴위시킴과 아울러 통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정미조약(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했다.

7월 24일 체결된 정미조약은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에는 통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 실제로 한국 내정의 전권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이 조약에 의해 국가의 정치의사결정은 통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한국 황제의 지위는 단순한 재가기관으로 전락했다. 8월에는 군대해산도 행해져 한국은 ‘실질적’으로 병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때 일본은 병합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한국 국내세력의 격렬한 저항운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러시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 등 국제정세도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원로를 비롯해 일본정부 내의 다수 의견도 즉시병합에는 소극적이었다.²¹⁾

18) 伊藤統監이 林外相에게 보낸 電文, 『日本外交文書』 第40卷 第1冊, 454쪽.

19) 7월 12일자 外相→統監電文, 「韓帝の密使派遣に關連し廟議決定の對韓處理方針通報の件」 『日本外交文書』 第40卷 第1冊, 455쪽.

20) 原奎一郎 編, 『原敬日記』 第二卷, 福村出版, 1981, 참조.

21) 7월 10일의 원로·내각회의에서도 즉시병합설을 취한 사람은 없었다. 회의에 제출된 「處理要綱案」의 제1안은 “한국 황제로 하여금 대권에 속하는 내치정무의 실행을 통감에게 위임하게 할 것”, 제2안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내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두 통감의 동의

이토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하게 병합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정미조약에 의해 한국 지배상 ‘더 한층의 발전’을 거두는 것이 가능했다. 고종을 퇴위시켰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의 형태를 남겨 외국으로부터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의 독점적인 보호통치가 가능한 ‘실질적 병합’을 달성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토는 이러한 ‘1907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려고 했다. 그것은 한국보호라는 명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토는 정미조약의 체결 이후 1909년 통감을 사임할 때까지 사법제도의 정비, 은행 설치, 교육진흥, 식산흥업 등 이른바 ‘자치육성정책’²²⁾을 전개했다. 일본정부도 이토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승인하고 지지했다.²³⁾

그렇다면 ‘실질적 병합’인 정미조약 이후 이토는 한국통치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1907년 7월 31일 이토는 서울의 일본인클럽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합병할 필요가 없다. 합병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 한국은 자치해야 한다. 일본의 지도 감독이 없다면 건전한 자치는 할 수 없다”고 말해, 합병을 부정하고 일본의 지도 감독에 의한 ‘자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보다 앞서 7월 29일 신문기자단에게 행한 강연에서 향후 정책을 설명하면서 독일연방 안의 뷔르템부르크와 바이에른을 한국에 비유하며 ‘연방’제 구상을 언급했다.²⁴⁾ 이에 따르면 이토의 한국지배구상은

를 얻어 이를 시행하고 또 시정 개선에 대해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게 할 것”, 제3안은 “군부대신, 탁지대신은 일본인을 임명할 것”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韓皇으로 하여금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할 것”, “국왕 및 정부는 통감의 부서 없이 정무를 실행할 수 없다(통감은 부왕 혹은 섭정의 권한을 갖는다)”는 등의 「第二要綱案」이 추가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때 각 조항에 대한 찬반 상황을 보면, ‘한황이 일본황제에게 양위’에 대해서는 야마가타와 데라우치는 ‘지금은 반대’라고 했고 다수의 의견은 ‘부(否)’였다 (『日本外交文書』 第40卷 第1冊, 455~456쪽).

22) ‘자치육성정책’에 대해 모리야마는 “이토의 보호정책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통제정책과 함께 추진했다. …… 그러나 자치육성정책의 수행주체는 대부분 일본인이어서 일본인에게 유리했던 반면, 조선 국민의 민족주의를 다시 고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국내의 비난공격과 간도문제와 관련해 열강이 간섭할 우려가 있어, 결국 이토에게 남겨진 대한정책은 병합 밖에 없었다고 한다(森山茂徳, 『近代日韓關係史研究』, 215~217쪽).

23) 『原敬日記』(8월 30일)에 따르면 “伊藤, 山縣, 松方, 井上 등 원로 및 가쓰라와 각료들이 출석한 가운데 각료회의가 열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국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조선의 재정을 독립시켜 일본의 재정에서 보조하는 건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토의 제안대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24) 『伊藤博文傳』 下, 763~770쪽.

‘자치육성’을 통해 재정독립을 이룬 뒤 ‘연방’제의 형태로 한국을 통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군대의 해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행해진 정치적 발언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현될 가능성은 낮았다.

한편 이토의 한국지배구상으로서는 최근 간행된 『스에마쓰 자작가 소장문서(末松子爵家所藏文書)』(ゆまに書房, 2003年)에 스에마쓰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토의 한국통치에 관한 메모가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관도로부터 각기 10명의 의원을 선출해 중의원을 조직한다.
2. 한국의 문무 양반 가운데 50명의 원로를 호선(互選)해 상원을 조직한다.
3. 한국정부의 대신은 한인으로 조직하고 책임내각을 만든다.
4. 정부는 부왕(副王)의 배하(配下)에 속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왕이란 한국의 ‘국왕’을 보좌하는 통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토가 ‘자치식민지’와 유사한 통치형태를 취하는 합병을 구상했다고 유추하는 견해와 이토가 구상한 합병 뒤의 한국은 ‘식민지자치국’이라고 추측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²⁵⁾ 그런데 위의 사료는 집필시기도 불명확하고 타이프 글자로 기록된 메모의 사본이어서 이토의 구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토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토의 병합구상은 1910년에 실현된 직접식민지와는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토는 선임 원로의 입장에서 항상 다른 정부 수뇌와 의견을 조정, 타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갔기 때문이다. 1907년 말 가쓰라 타로가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会社)의 설립을 추진하자 이토는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했다. 『하라 다카시(原敬) 일기』에 따르면 “가쓰라가 계획한 동양척식회사에 관한 법안은 이토 공(公)의 이론(異論)도 있어서 한 때 좌절될 뻔 했는데 이토 공의 의견에 가쓰라 등이 동의해 수정했기 때문에 어제 의회에 제출되었다”²⁶⁾고 한다. 이것은

25) 小川原宏幸는 이토가 “예를 들면 1910년에 성립된 남아프리카연방과 같은 통치형태를 구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병합과 같은 직접통치에 의한 식민지통치형태와는 다른 자치식민지와 비슷한 것을 구상했다고 한다. 즉 이토의 합병구상은 복합국가, 또는 자치식민지의 형태로 한국을 일본에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그것을 전제로 한국의 식민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小川原宏幸, 앞의 논문, 91~94쪽). 海野福壽는 “설령 조선국왕이나 내각이 존재한다고 해도 주권적인 통치조직이 아니라 천황과 일본정부라는 최고·상급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하급행정조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합병 뒤의 한국은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다. 식민지자치국이다”라고 지적했다(海野福壽, 『伊藤博文と韓國併合』 青木書店, 2004, 173~176쪽).

동양척식회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이토의 소위 ‘자치육성정책’에 대한 이토와 가쓰라의 생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토는 1908년 9월 24일 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들에게 “한국보호의 취지는 확실히 정해져 있어 누가 통감이 되더라도 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총리대신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동양 전체의 형세와 세계 각국의 관계를 따져 보고 정한 일이기 때문에 변동될 리가 없다”²⁷⁾고 연설했다.

이토는 동양척식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 가쓰라, 고무라, 테라우치 등은 한국병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육성정책’을 추진하는 이토와 알력을 일으키고 있었다.²⁸⁾ 그러나 양자의 대립은 대한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립은 아니었다. 병합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전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필시 이토를 포함한 원로·각료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가쓰라는 동양척식회사의 운영에 관해 이토와의 대립을 회피하고 의견차를 조정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²⁹⁾

3. 한국병합 방침의 결정과 이토

그렇다면 이토가 한국병합의 방침을 결정한 것은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는 1909년 4월 10일 당시의 가쓰라 수상과 고무라 외상이 도쿄의 레이난자카(靈南坂)에 있는 관저로 이토를 방문해 한국병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이었던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鐵吉)에 따르면 “가쓰라, 고무라 양 대신이 이토 공과 회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며 마음속으로 이토 공으로부터 이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은 의외로 동의를 뜻할 명언하여 양 대신은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고 이토 공의 집을 나섰다”고 한다.³⁰⁾

26) 『原敬日記』 12월 16일.

27) 「東洋拓殖會社設立委員に對する伊藤統監演說筆記」,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문서.

28) 小林道彦에 따르면 이토와 가쓰라는 대한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다고 한다. “가쓰라와 이토는 대한정책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격렬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이토가 한국에 중앙은행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통화발행권을 부여하려 한데 반해, 가쓰라는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동양척식회사에 금융업무도 부여해 일본인 농민의 토지취득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었다. 즉 이토의 ‘자치육성책’과 가쓰라의 병합노선의 충돌이었던 것이다”(小林道彦, 『桂太郎』 ミネルヴァ書房, 2006, 223~225쪽).

29) 1908년 5월 26일, 6월 30일, 9월 26일자 伊藤에게 보낸 桂 書簡, 『伊藤博文關係文書』 三, 塙書房, 1975, 375~376쪽.

30) 小松綠에게 보낸 倉知鐵吉의 覺書, 『伊藤博文傳』 下, 1013쪽.

이것은 지금까지 급진적 병합에는 반대한 이토가 스스로의 방침을 바꾸어 1909년 4월 시점에 즉시병합론에 동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토로서는 명목적일 지라도 독립의 형식을 취하면서 사법제도의 정비, 은행설치, 교육진흥 등 ‘자치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편이 일본의 한국지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 ‘보호통치’가 한국민을 ‘열복(悅服)’시키지 못하고 의병운동 등 한국민으로부터 격렬한 저항과 국내의 반대에 직면하여 그 방침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감 취임 이래의 이토의 ‘보호통치’ 노선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미 ‘보호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토는 ‘병합’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실행할 ‘적당한 시기’가 언제 도래하느냐였다. 정미조약이 체결된 1907년 7월 경 이토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공은 어떠한 점으로부터도 합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합병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도 없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갑자기 합병해버리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한다, 행정사법기관의 설비와 교육 방면뿐만 아니라 급격한 변동에 대한 방위비용 등이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합-인용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설이었다. 당시 공의 대체적인 의견은 점진주의 -유명한 말려죽이기 방침[生殺し主義]이었던 것이다.³¹⁾

이토는 병합에 드는 일본의 부담을 들어 즉시병합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의병운동이 본격화하는 1907년 후반부터는 ‘보호통치’의 한계를 느끼고 점차 병합론으로 기울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민중이나 관리 혹은 신문기자에 대한 연설 등 다양한 자리에서 ‘병합은 하지 않는다’, ‘한국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온 이토로서는 자신의 입으로 ‘병합’을 언급할 수는 없었다. 이토는 1909년 4월 도요협회(東洋協會)가 주최한 한국인일본관광단 환영회 석상에서 연설을 통해 “지금은 일한 양국이 상호 이해를 같이하여 함께 동일 목적으로 나아가고, 더욱 나아가 일가(一家)를 이루려고 할 때이다.…… 바라건대 한인도 일본의 정세를 시찰해 양국 공통이해의 이치를 터득함으로써 일가처럼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데 노력하자”³²⁾며 즉시병합론의 수용을 내비쳤다.

이토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한일가설(日韓一家說)’을 주장한 적은 없었다. 한국민의 ‘열복’을 전제로 한 점진주의의 포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쓰라 수상은 이토의 동의를 확인하면서 병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토 통감을 빨리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09년 4월 17일 추밀

31) 「故伊藤公の合併論と余の合併論」 『朝鮮』 27, 1910년 5월, 466쪽.

32) 外務省 編, 『小村外交史』 原書房, 1966 ; 『伊藤博文傳』 下卷, 838~840쪽.

원의장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보낸 서한에는 가쓰라의 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일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한 이상 예(例)의 진퇴문제는 필연적으로 절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른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도리어 유력자가 필요 없고, 그들 한국 황제 및 정부 인물이 잘못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정책상 무엇 보다 묘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연코 그 뜻을 받아들여 소네(曾禰) 씨를 후임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생각합니다. [중략] 진퇴문제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나중의 문제는 일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³³⁾

1909년 6월 14일 이토는 통감직을 사임하고 추밀원 의장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3년 만에 결친 ‘보호통치’가 한국 국민을 승복시키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한국민의 저항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도 비판이 일어 더 이상 ‘한국독립’의 언설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토는 ‘보호통치’의 의욕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병합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생각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후임 통감에는 부통감이었던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취임했다.

그 직후인 7월 6일 「한국병합에 관한 건」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할 것”, “한국을 병합해 이를 제국 판도의 일부로 삼는 것은 반도에 우리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³⁴⁾ 라는 등의 내용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병합방침은 당연히 이토의 검토를 거친 것이며 이 방침이 확정되자 가쓰라 타로는 야마가타에게 만족의 뜻을 표명했다.³⁵⁾

이토는 통감 사임 후에도 원로로서 한국지배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사법권위탁문제에 관여하고,³⁶⁾ 7월 12일 사법·감옥사무의 위탁에 관한 각서의 조인에 노력했다. 가쓰라는 이것을 ‘대한국 정략의 진전’이라고 환영했다.³⁷⁾

33) 『山縣有朋關係文書』 1 (尙友俱樂部同編纂委員會 編, 山川出版社, 2005), 355쪽.

34) 또한 “제국 내외의 형세에 비추어 적당한 시기에 과단하게 병합을 실행하여 반도를 명실 공히 우리의 통치 아래에 두고 또 한국과 여러 외국과의 조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제국백년의 장계(長計)이다”라고 되어 있다(『日本外交年表並外交文書』上, 315쪽).

35) 1909년 7월 13일자 山縣에게 보낸 桂 書簡, 『山縣有朋關係文書』 1.

36) “사법권위탁에 관해 여행 중 숙고한 결과를 별지에 기초해 보내드리니 숙고하신 뒤 경성에 도착한 뒤 정부 논의의 결과를 훈시해주시기 바랍니다”(1909년 7월 3일자 桂·小村에게 보낸 伊藤 書簡, 「桂太郎關係文書」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37) “지난번 말씀드린 한국의 사법권 위탁 및 군부 해산 등의 건 오늘 새벽 소네 통감으로부터 전보가 와서 두 건 모두 협약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번 장래의 방침을 확정된 이래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한정책의 노선을 바꾼 이토는 통감 사임 후에도 원로로서 대한정책에 계속 관여해나갔던 것이다.

맺음말

이상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이토는 메이지정부의 한국지배방침의 결정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반영시켜나갔다. 통감 취임 후 일본 정부의 한국지배방침이 결정되자 그것을 바탕으로 ‘보호통치’를 실시했으나 ‘시정개선’ 정책이 국내외로부터 반대를 받아 좌절되자 대한정책을 전환해 내정권까지 장악하는 ‘실질적 병합’에 착수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원로로서 항상 다른 정부 수뇌와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 나아가 이토는 한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보호통치’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즉시병합론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토는 메이지 초기부터 시대상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각 정치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다. 자신의 견해를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상황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어지면 노선을 수정하곤 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정치가의 성향은 한국지배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관철되었던 것이다.

이토는 한국의 식민지배를 전면에서 지휘하기 위해 통감이 되어 한국으로 건너왔다. 따라서 ‘보호통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한국병합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초에는 한국의 내부상황이나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보호통치’가 한국지배에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식민지배의 기반이 정비되고 동시에 서양 열강의 승인을 얻는 등 ‘적당한 시기’에 도달하면 병합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다만, 대한강경론을 주장하는 다른 정치세력과 달리 이토는 한국병합에 관해 점진론을 취하고 정책 전환에 있어서 신중했다고 할 수 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두 건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의 천년대계를 위해 매우 경하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착착 진행된다면 도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1909년 7월 13일자 山縣에게 보낸 桂書簡, 『山縣有朋關係文書』 1, 357쪽).

<요약문>

메이지정부의 대외침략정책과 伊藤博文 -통감부 시기를 중심으로-

방광석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한국에서는 일본정부를 대표해 대외침략을 진두지휘한 ‘침략의 원흉’, 일본에서는 ‘근대국가 건설의 최대공로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메이지유신 이래 이토의 발언과 행동의 일부분만이 부각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토의 대외정책, 나아가 한국지배정책을 파악할 때 그의 정치자세와 사상의 전체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토는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했으나 한국침략정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러일전쟁 시기부터이다. 1904년 3월 7일 한국황실 ‘위문’ 특파대사로 파견되어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5월 30일 일본정부가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을 결정할 때에는 원로(元老)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한 뒤 12월 21일 스스로 통감이 되어 한국통치에 직접 나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6년 3월 한국에 부임한 이토 통감은 본연의 업무인 외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시정개선’만을 강조하며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시정개선협회’를 활용했다. 이토는 한국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것들을 개혁할 수 없는 한국인을 ‘무능력자’, ‘야만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부터 한국을 구해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침략을 정당화한 다음, 여러 ‘시정개선’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토는 한국이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다른 정부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병합의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분간 ‘보호국’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노선을 취했다. 한국지배에 관한 이토의 의향은 일본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토가 원로로서 대부분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관여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정부의 한국지배방침에 이토의 의향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실시된 ‘시정개선’ 정책에 대해 고종황제의 반발, 반일의병운동, 국제보상운동 등이 전개되고 ‘보호통치’에 대한 국내외로부터의 압박과 비난이 고조되자 이토의 태도도 서서히 변화해간다. 1907년 6월 헤이그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이토는 신속하게 움직여 고종을 퇴위시킴과 아울러 통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정미조약(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내정의 전권을 장악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때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지는 않았다. 병합을 위한 국내외 상황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토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하게 병합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정미조약에 의해 한국지배상 ‘더 한층의 발전’을 거두는 것이 가능했다. 이후 사법제도의 정비, 은행 설치, 교육진흥, 식산흥업 등 이른바 ‘자치육성정책’을 전개했다.

정미조약이 체결된 뒤인 1907년 7월 말 이토는 한국 통치에 관해 일본의 지도감독에 의한 ‘자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치육성’을 통해 한국의 재정독립을 이룬 뒤 ‘연방’제의 형태로 한국을 통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군대의 해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행해진 정치적 발언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현될 가능성은 낮았다. 또 최근 간행된 『스에마쓰 자작가 소장문서(末松子爵家所藏文書)』 ‘자치식민지’ 혹은 ‘식민지자치국’에 유사한 통치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사료는 형태상 이토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토가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곧바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토는 1907년 후반부터는 ‘보호통치’의 한계를 느끼고 점차 병합론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09년 4월 가쓰라 수상과 고무라 외상과의 ‘레이난자카(靈南坂) 회합’에서 즉시병합론에 동조했다. ‘보호통치’가 한국민을 ‘열복(悅服)’시키지 못하고 의병운동 등 한국민으로부터 격렬한 저항과 국내의 반대에 직면하여 그 방침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감 취임 이래의 이토의 ‘보호통치’ 노선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토의 의향이 반영되어 7월 6일 「한국병합에 관한 건」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토는 통감 사임 후 다시 한국으로 건너가 사법권 위탁문제에 관여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한정책의 노선을 바꾼 이토는 통감 사임 후에도 원로로서 한국침략정책의 수행에 계속 관여해나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토는 메이지정부의 한국지배방침의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반영시켜나갔다. 통감 취임 후 일본정부의 한국지배방침이 결정되자 그것을 바탕으로 ‘보호통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정개선’ 정책이 국내외로부터 반대를 받아 좌절되자 대한정책을 전환해 내정권까지 장악하는 ‘실질적 병합’에 착수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원로로서 항상 다른 정부 수뇌와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 나아가 이토는 한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보호통치’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즉시병합론에 동조하게 되었다. 현실주의적 정치가로서 이토의 성향은 한국지배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관철되었던 것이다.

(日本語要約)

明治政府の対外侵略政策と伊藤博文

—統監府時期を中心に—

方光錫

伊藤博文は、韓国では日本政府を代表し韓国侵略を先頭で導いた「侵略の元凶」として、日本では「近代国家建設の最大功労者」として対照的な評価を受けているが、これは明治維新以来の伊藤の発言と行動のなかで、一部分だけを浮き彫りにした結果でもある。したがって、伊藤の対外政策または韓国支配政策を見ると、彼の政治姿勢と思想の全体像を念頭に入れておく必要がある。

伊藤は、明治初期から日本の対外政策の決定過程に加わっていたが、韓国侵略政策に主導的に関与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日露戦争期からである。1904年3月7日、韓国皇室「慰問」の特派大使に任命され日韓議定書の締結するとともに、5月30日、日本政府が「対韓方針」および「対韓施設綱領」を決定するときは、元老として会議に参加した。そして、1905年11月17日、いわゆる「乙巳保護条約」を強要した後、12月21日、自ら統監になり直接韓国統治に当たったことは周知のことである。1906年3月韓国に赴任した伊藤は、本然の業務である外交については一切言及せず、「施政改善」だけを強調しながら内政に干渉し始めた。これのために、「韓国施政改善に関する協議会」を利用した。伊藤は、韓国は政治・経済・教育などあらゆる面で「悲惨な状態」に置いており、それらを改革できない韓国人は「無能力者」・「野蛮人」であるという観点を持っていた。そして、このような状態から韓国を救うためという名目で侵略を正当化した上で、各「施政改善」政策を推進していった。

他の政治指導者と同様に、伊藤も韓国が「永く其独立を支持する能はざる」と認識し、韓国併合の可能性も考えていた。しかしながら、当分は「保護国」体制を維持しながら実質的に日本の支配を強化する路線を取っていた。韓国支配についての伊藤の意向と日本政府の政策に大きな隔たりはなかった。伊藤は元老としてほとんどの対外政策の決定過程に加わってきたことから考えると、政府の韓国支配方針には伊藤の意向が大いに反映されていることは当然である。

このような立場から実施された「施政改善」政策に対して、高宗皇帝の反発、反日義兵闘争、国債補償運動などが展開され、「保護統治」に対する内外からの圧迫と非難が高ま

ると、伊藤の態度も徐々に変わって行く。1907年6月、「ハーグ密使事件」が起こると、伊藤は迅速に動き出して、この事件を口実に高宗を退位させるとともに、統監の権限を大幅に強化した第3次韓日協約(丁未条約)を締結した。韓国内政の全権を掌握する内容であったが、この時、韓国を併合するところまでは到らなかった。併合への内外の状況が成熟していなかったためである。伊藤からみれば、無理に併合を強行しなくても、この第3次韓日協約によって韓国支配のうえ「一層の発展」遂げることができた。以後、司法制度の整備、銀行設置、教育振興、殖産興業などのいわゆる「自治育成政策」を展開した。

第3次韓日協約締結後の1907年7月末、伊藤は韓国統治について、日本の指導監督による「自治」の必要性を唱えた。「自治育成」を通じる韓国の財政独立を遂げた後、「連邦」制の形で韓国を統治したいということであるが、これは韓国軍隊の解散を目前に置いた時点で行われた政治的な発言であり、当分実現される可能性は低かった。また、最近刊行された『末松子爵家所蔵文書』には、伊藤の韓国統治に関する覚書があるが、この史料は、執筆時期も不明確なタイプ字で書いている覚書の写本であり、本当に伊藤の構想か断定できない。もし、伊藤がこのような構想を持っていたとしても、現実的に即時実現される可能性は希薄であった。

伊藤は1907年後半から「保護統治」の限界を感じ、次第に併合論に傾いていったと見える。結局、1909年4月、桂首相・小村外相との「靈南坂会合」で即時併合論に同調した。「保護統治」が韓国民を「悦服」させておらず、義兵運動など韓国民から激しい抵抗や国内の反対に直面して、その方針を諦めるしかなかったことを示す。統監就任からの伊藤の「保護統治」の失敗とも言える。伊藤の意向が反映され、7月6日、「韓国併合に関する件」が内閣会議で決定された。統監辞任後、伊藤はまた韓国に渡って、司法権委託問題に積極的に関与した。自らの判断で対韓政策の路線を変えた伊藤は、統監辞任後も元老として対韓政策に関与しつづけていた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に、伊藤は、明治政府の韓国支配方針の決定過程に主導的に参加し、自らの意見を貫徹・反映させていた。統監就任後、日本政府の朝鮮支配方針が決定されると、それに基づいて「保護統治」を施したが、「施政改善」政策が内外から反対を受け挫折されると、対韓政策を転換して内政権も掌握する「実質的併合」に踏み切った。このような政策の変化は、元老として常に他の政府首脳との緊密な協調や調整を通じて行われた。あくまで日本政府の基本方針から逸することはなかった。さらに、伊藤は韓国民の激しい抵抗

に直面し、「保護統治」が行き詰まるや、即時併合論に同調するようになった。現実主義政治家として伊藤の性向は、韓国支配政策の決定過程にも貫徹されたのである。

“「메이지 정부의 대외침략정책과 伊藤博文-통감부 시기를 중심으로-」 토론문”

한 성 민

올해는 한국측에서 보면 하얼빈에서 安重根 의사의 의거가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일본측에서 보면 근대 日本을 건설한 元勳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 사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韓國併呑’ 100년입니다. 이러한 계기적 성격으로 인해 올해 한국에서는 안중근 의거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술대회는 대체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한 한국독립운동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안중근 의거의 직접적 대상이었던 이토와 그의 한국정책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토를 중심으로 당시 일본의 한국지배정책을 살펴보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권강탈 이전 일본의 한국정책에서 이토의 역할과 이 시기 한일관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토의 한국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토가 한국병합론자였는가, 아니면 한국병합에 소극적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쟁점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병합방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토를 확실한 병합론자로 파악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토가 병합에 적극적이었다는 주장과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병합’에 대한 이토의 입장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연구경향에 대해 방광석 선생님은 이토의 발언과 행동의 일부만을 강조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토의 대한정책에 대한 연구사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논문은 이토의 대한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이 처한 대외환경, 이토의 정치활동 및 사상의 전체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문제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당시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문서, 이토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회고록과 개인적으로 정책을 협의한 서간문, 신문·잡지 기사 등의 다양한 史料를 이용하여 이토의 한국정책의 실상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러일전쟁에서 한국병합까지 일본의 한국정책이 시계열을 축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대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받은 보호국화의 단계, 내정권을 박탈하면서 실질적 병합정책으로 전환하는 정미조약의 단계, 마지막으로 국권을 강탈하는 한국병합의 3 단계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이토의 실질적인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토는 일본의 한국지배를 확립함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그의 정책이 한국병합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고 파악합니다. 보호국화의 단계에서 이토의 한국정책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 확립이라는 대전제 외에 지배권 확립의 구체적인 상은 결정되지 않았고, 한국병합은 다양한 선택지 중의 하나였다고 파악합니다. 그 후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와 이토의 한국정책은 실질적인 병합정책으로 전환되는데, 이 시기까지도 한국이라는 명목상의 국가를 유지할 것인지, 직접 식민지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고 한국의 실질적인 국권을 차례로 빼앗는 가운데 이른바 ‘자치육성정책’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토의 ‘자치육성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한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일본에서도 이토의 한국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어나자, 이토는 노선을 바꾸어 직접적인 병합에 착수했다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병합의 방식도 『쓰에마츠 자작가 소장문서』의 메모내용-문서 작성자에 대한 단서를 달고 있으나-을 고려할 때, 직접 식민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토의 한국정책의 성격은 현실주의적 정치가로서 이토의 성향, 즉 국내외의 상황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어지면 노선을 수정했던 이토의 정치성향이 한국지배정책에서도 관철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방광석 선생님의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토의 한국정책이 당시 한일관계 및 대외관계와 이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었고 영향받았다는, 즉 이토의 한국정책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이후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논문의 연구성과를 풍부히 하는데 약간의 아쉬운 점과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일본의 불평등조약 개정교섭과 한국병합과의 관계

이 논문은 이토의 한국정책에서 한국병합은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당시 한일관계의 대응 속에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 근거로 이토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독립유지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파악했고, 한국문제는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감부 초기 한국의 보호와 ‘扶腋’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병합은 당시 일본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열강들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이토는 한국병합이라는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술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한국에 대한 ‘보호, 지도 및 감독’의 권리입니다. 선불리 한국병합을 표면화시킬 경우 3국간섭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근대 일본의 국가적 목표였던 불평등조약 개정교섭에서 한국문제를 열강들이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그 의도를 숨긴 것이 아닌가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토 사망 후 한국병합에 적극적이었

다고 평가되는 가쓰라(桂太郎)의 태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한국병합 결정의 이유

이토가 한국에 대한 ‘자치육성정책’에 자신감을 잃고 한국병합을 결정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일본의 보호통치를 한국인에게 설득하지 못한 점, 의병 등 통감통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직접적인 반발, 이토의 한국정책에 대한 일본의 반대여론 등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이 시기에 와서 갑자기 등장한 문제들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이토가 한국병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자치육성정책’이란 용어의 타당성

일반적으로 일본학계에서는 통감부기 이토의 한국정책을 ‘자치육성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토의 정책은 한국의 ‘자치육성’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외교권 박탈, 군대해산과 같이 한국의 ‘자치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제권리를 하나 하나 박탈하는 것이었고, 그 외 사법제도정비, 금융정책, 식산공업 등은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재편정책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자치육성정책’이라는 용어가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明治政府の對外侵略政策と伊藤博文」に対する討論文”

韓成敏(東国大學校 対外交流研究院 研究員)

今までの伊藤の韓国政策に関する研究は伊藤が韓国併合に積極的か、消極的かが争点であった。方光錫先生はこのような研究傾向が伊藤の発言と行動の一部分だけを強調したとその限界を指摘した。伊藤の韓国政策を客観的に評価する為にはあつとき日本の對外環境、伊藤の政治活動及び思想の全体像を念頭に置くべきであると問題提起した。

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発表は伊藤の韓国政策を分析した。伊藤は日本の韓国支配の確立のために積極的に活動したが、初めから韓国併合を狙ったのではなく多様な選擇事項の一つとして理解していた。しかし、韓国で「自治育成政策」の失敗、韓国人の反撥、伊藤の韓国政策に対する日本の反対世論の影響を受けて伊藤は併合に着手したと把握した。伊藤の韓国政策は日本国内外の状況に照らして現実性がなくなれば路線を修正した伊藤の現実主義的な政治性向が貫徹されたと分析された。発表は多様な側面を考慮して伊藤の韓国政策を立体的に照明した点から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う。ただ、何点か聞きたいことがあつて質問する。

1. 伊藤は韓国併合をはじめから心の中から決定したのに、3国干渉の経験、日本の不平等條約改正交渉への悪影響とか列強の韓国問題への介入などを憂慮して適當の時期まで表面化させない戦術的な態度をとつたのではないか。

2. 発表で伊藤が併合を決定するのに重要な考慮事項としてあげた韓国での「自治育成政策」の失敗、韓国人の反撥、伊藤の韓国政策に対する日本の反対世論などは、この時期に突然發生したものではなく、当時の韓国と日本の情勢を考えた場合、恒常的に存在している問題ではないか。

3. 一般的に日本の学界ではこの時期の伊藤の韓国政策を「自治育成政策」として表現している。しかし實際の内容は「韓国社会の植民地的な再編成」ではないか。「自治育成政策」という用語が適當かどうか。

明治四〇年（一九〇七年）体制と韓国統治 —韓国統監のヤヌスの顔—

瀧井一博

I 統監と総裁—伊藤博文の明治四〇年（一九〇七年）体制—

一九〇七年という年は、日韓関係史においてひとつの大きな転機であった。前年三月に初代韓国統監として着任し精力的に韓国の保護国化を推進していた伊藤博文だが、この年の七月に勃発したハグ密使事件をきっかけに、その対韓政策にも転換が生じる。皇帝高宗は退位を余儀なくされ、第三次日韓協約が締結される。これによって、法令制定や重要な行政処分の承認権、官吏の任免権など統監による幅広い内政の指導監督権限が認められた。翌月には韓国軍隊も解散され、日本は実質的に韓国を併合したとされる（森山茂徳）。

このように一九〇七年は、日本の韓国統治において大きな画期をなす年であり、統監であった伊藤博文にとって多事多端であった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ところで、この年、伊藤は単に韓国統監として韓国統治に専念していたのではなかった。同じ時に、彼は日本においても幾多の改革事業を指導する立場にあった。この時期彼は、韓国統治のみならず、日本の統治改革にも従事していたのである。後者の作業を推進するために彼が就いていたポスト、それは宮内省に設けられていた帝室制度調査局の総裁である。

かつて報告者は、ここ時期の伊藤の日本内政改革の試みを総称して、「明治四〇年（一九〇七年）体制」と命名した（拙稿「明治後期の国制改革」伊藤之雄・川田稔編『20世紀日本と東アジアの形成 1867～2006』（ミネルヴァ書房、二〇〇七年））。本報告では、伊藤が築き上げようとした明治四〇年（一九〇七年）体制の全容を紹介し、そのなかで韓国統治がいかに位置づけられるのかを論じたい。

II 二つの総裁—立憲政友会と帝室制度調査局—

(1) 立憲政友会

既述のように、伊藤が初代韓国統監に就任した時、彼は統監のみならず、帝室制度調査局という組織の総裁でもあった。通常、「総裁伊藤博文」と聞いた時、真っ先に思い浮かぶのは、立憲政友会総裁としての伊藤であろう。一九〇〇年九月、伊藤は自ら作った政党、立憲政友会の初代総裁の座に就いた。政友会は藩閥政府の中心にあった伊藤がそこを飛び出し、議会における最大の野党勢力だった自由党（当時憲政党と名乗っていた）と結託して創設したもので、日本における政権担当能力ある責任政党の誕生として、日本政治史上

特筆される。この政友会と皇室制度調査局の二つの総裁職は、彼のなかでひとつのものとして融合していた。この点を説き明かすために、まずは立憲政友会の創立に込められた伊藤の思想を瞥見しておこう。

政友会の結党に先立つ一八九九年、伊藤は日本各地を遊説し、自己の政治理念を直接国民に説いて回った。彼の行った演説は、次の三つの柱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る。①国民の政治参加の促進、②闘争原理の政党政治から妥協と調和を基調とする立憲政治への転換、③公正な政府の実現、以上三点である。

まず第一の国民の政治参加である。伊藤は、「国民其者が国家を担ふと云ふ観念が起らなければならぬ」（「伊藤の演説」『東京日日新聞』、1899年10月19日）ということをかかんに唱えていた。この点は、一八八九年の大日本帝国憲法（明治憲法）発布以来の彼の持論だった。国民の政治的権利を抑制し、強大な天皇大権を担保するために制定されたとされる明治憲法だが、当の起草者伊藤は、発布当初、これからの政治は「国ノ人民ノ文化ヲ進メ」ることを指針とし、それにしたがって、国民を中心とした政治に徐々に移行していくことを説いていた。開化した国民というものは、「支配ノ仕方が善ク無イト云フト、其ノ人民ハ是非善悪ノ見分ケヲ付ケルコトノ出来ル人民デ有ルカラ、黙ツテ居レト言ツテ一國ハ治マルモノデ無イ」と言う（『伊東巳代治関係文書』書類の部 104）。

この年来の思想を、伊藤はここに来て、国民に直接語り始めるのである。「文明の人民は独り民間の事に通ずるのみならず、政府の事も知らなければならぬ、政府の事を知つて政府が如何なる事に人民から税を取立てるか、其取立てた金をどうするかと云ふことも知らなければならぬ」（『伊藤侯演説集第二』、160-161）。伊藤はそのように唱え、国民の政治参加を促したのだった。

そのような国民の政治参加の受け皿となるべきが、政党だった。だが、それは既存の政党と同質なものであつてはならなかった。伊藤によれば、従来の政党は、国会の場を源平合戦の戦場のようにしてしまっている。「日本帝国の議會をして、矢来を結つた所の敵討場の如くされては堪らぬ」。そう伊藤は呼びかけている。彼によれば、「政党なるものはモ少し軽く見なければならぬ」ものだった（『伊藤侯演説集』78-79）。眼下の政党は権力闘争に明け暮れているとしか思えないが、そもそも憲法に基づいた立憲政治とは、国民の間の様々な利害を議会での熟議を経て妥協譲歩させ、国家秩序に調和をもたらすべきものなのである。政党はそのような立憲政治のための道具なのであつて、逆であつてはならなかった。

最後に公正な政府の実現ということである。上述のように闘争原理の政党政治を矯正して、妥協と調和の立憲政治を実現するには、何よりも政党の利害から自由な執政府を作る必要があつた。「民に臨み政を行ふに当つて、自分の政党に利益となる政治を行ふと云ふことになれば、反対に立つ所の者は始終不幸を蒙らなければならぬ」。それ故に、「如何なる党派が政権を把つても、政治となつた以上は眼中党派を措かず、公平に事を行ひ、民を見るに自党他党の區別をせず唯々民の事業、民の生活、国家の利害如何と云ふことを見るのみでなければならぬ」とされる（『伊藤侯演説集第二』129-130）。これはかつてならば、

政党を排斥した超然主義の主張となったであろう。しかし、この時伊藤は、政党が政権を取ることを前提とし、そのために政党はいかにあるべきかを論じている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に、伊藤にとって政友会とは、単に政権を担える巨大政党を創設したというにとどまらず、既存の政党のあり方を立憲政治の理念に沿うように抜本的に変革しようという試みだったのである。変革の対象は、政党だけだったのではない。政友会と並行して、彼は政府の改革も成し遂げようとしていた。それが、もうひとつの総裁、帝室制度調査局総裁としての伊藤の姿である。

(2) 帝室制度調査局

政友会に先駆けて、彼はもうひとつ別の組織で総裁職に就いていた。それは、一八九九年八月に宮内省に設置された帝室制度調査局（以下、「調査局」）である。伊藤はここでも初代総裁に就任していた。

同局は皇室制度見直しのための調査・審議機関として設立されたものである。それは、伊藤の強い意向の産物だった。それは、自らが定礎した明治立憲体制を完成させるために必要なことだったのである。一八八四年、伊藤は明治憲法の制定に先駆けて、やはり宮中に制度取調局を設け、国制全般の調査活動に着手した。一八八九年二月に憲法は皇室典範およびその他の憲法附属法（衆議院議員選挙法、議院法、会計法、貴族院令）とあわせて発布されるが、ここで成立したのは国家の政務法にしか過ぎない。明治の国制には、これと並立して官務法の体系が観念されていた。そしてこちらについては、その大綱たる皇室典範は制定されたものの、「帝室事務を皇張するは漸次を期」すとの方針に則り（明治天皇紀 VI、185 頁）、当初から後日の課題とされていた。すなわち、憲法と皇室典範をそれぞれ頂く政務法と官務法の二元的国法秩序（典憲体制）として性格づけられる明治の国家体制は、未だトルソにとどまっていたのである。明治憲法の発布から十年、その積み残した課題と取り組み、皇室制度を確立して典憲体制を完成させるため、伊藤は再び宮中に調査局を設置したのだった。

調査局ができてすぐの一八九九年九月十一日、伊藤はスタッフを集めて、一場の演説を行った。そのなかで伊藤は、今日の皇室は法的には政府と判然として分離しているが、「実際に於ては此の区別は猶ほ未だ明晰でない憾がある」（伊藤伝下、420-421）として、皇室および皇族の法的な地位を確定することを掲げている。そして、天皇より下命された十二カ条の調査事項を披露した。それらと重複した内容の意見書を彼は前年に天皇に捧呈しており、調査局が伊藤の意向を受けて設けられたことはここからもうかがえる。

そのように政友会と並行して構想された帝室制度調査局だったが、成立の翌年九月の政友会の創設に伴い、伊藤は総裁の職を辞することになる。政党の党首の座にある者が、宮中で職に就くことは憚られたのである。これにより、調査局の活動は中断を余儀なくされる。それが再開されるのは、一九〇三年七月、伊藤が政友会総裁を辞してからである。こ

の時、伊藤は調査局総裁に復任し、副総裁には伊東巳代治が就いた。以後、日露戦争を挟みながら、同局は着実に皇室制度の調査と立案を行い、その成果は一九〇七年を機に順次公とされる。この年の二月、法令の公布形式について定めていたそれまでの公文式が廃止されて新たに公式令が制定され、これに伴い皇室典範が増補のうえ公布されたほか、皇室事務を定めるものとして皇室令という法令形式が確立した。

調査局は皇室典範増補が公布された二月十一日をもって廃止されるが、以後、皇室会議令（一九〇七年）、登極令、摂政令、立儲令、皇族身位令、皇族親族令、皇族財産令（以上、一九〇九年）、皇室会計令（一九一二年）などの皇室の基本立法が皇室令として陸続と制定・公布される。言うならばこの一九〇七年という年、「帝国憲法を最高法規とする「政務法」の系統と、皇室典範を最高法規とする「宮務法」の系統という、二元的な憲法秩序が出現した」（大石眞『日本憲法史〔第2版〕』（有斐閣、二〇〇五年）、291頁）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に、一九〇七年という年は、明治の国制秩序の全容が確立したという意味で、日本法制史上重要な画期をなす。近年の日本では、橋本龍太郎総理大臣時代以来の一連の行政改革を通じて、憲法の改正がなされたわけではないが、憲法秩序の重大な構造転換がなされたとして、「憲法改革」の呼称が提起されている（大石眞『憲法秩序への展望』（有斐閣、二〇〇八年））。そのひそみに倣えば、帝室制度調査局の活動を、明治における憲法改革と呼ぶことができよう。

実際、帝室制度調査局はその名称から想像されるどころとは異なり、単に皇室制度の手直しにのみ従事したわけでない。同局の作業はさらに、内閣制度の改革や国法秩序の体系的統一という明治立憲制そのものの補修に向けられていたのである。他方で、同局の活動は山県らの反発を招来し、軍部の独立という意図せざる結果をもたらす。以下、同局の活動の全体像を紹介し、伊藤が遂行しようとした憲法改革の実態を明らかにしたい。

Ⅲ 一九〇七年の憲法改革

（1）天皇の国制化

一九〇三年七月十六日に政友会総裁を辞任した伊藤は、その二日後、帝室制度調査局総裁に復任した。既述のように、これに伴って調査局はその活動を復活させる。翌月十七日、新たに同局副総裁に任じられた伊東巳代治は、「調査着手ノ方針」と題する文書を伊藤に送付した（巳代治伝・下、10頁以下）。その内容は多岐に渡るが、つまるところ「皇室ノ事ヲ以テ天皇ノ私事ナリトシ、皇室典範ハ皇室自ラ其ノ家法ヲ条定スルモノナリト断定シタルノ説ハ、我日本帝国ノ歴史ト相容レ」ず、「故ニ皇室ハ国家ノ要素タルヘキ固有ノ関係ヲ明徴ニシ、以テ不易ノ規準タルヘキコトヲ確定スルコト」との文言に要約される。これまでの宮中府中の別を見直し、皇室を国家の機関として位置づけ直しこと、そして皇室典範を「帝国憲法ト共ニ、国家ノ根本法トシテ対等ノ効力ヲ有スルモノト」して典憲体制の

完成を期することが謳われてい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に、帝室制度調査局は明治憲法制定期の宮中府中の別を見直し、皇室を国家の重要な機関として位置づけ直すことを掲げて再スタートを切った。ここには創設時の指針との齟齬が認められる。前述のように、伊藤博文は調査局総裁就任に際して、今日の皇室は法的には政府と判然として分離しているが、「実際に於ては此の区別は猶ほ未だ明晰でない憾がある」（伊藤伝・下、420-421）と演説していた。このように、調査局を発足させた際に伊藤が意図していたことは、憲法制定を頂点とする明治中期の一連の国制改革の基本理念であった宮中府中の別をさらに推し進め、完成させることにあったのである（明治中期における伊藤による宮中の制度化について、坂本一登『伊藤博文と明治国家形成』（吉川弘文館、一九九一年））。一九〇三年八月に調査局の活動再開を受けて作成された前述の「調査着手ノ方針」で提言されているのは、これとは正反対といってよい内容である。伊藤総裁の当初の指示は、そして憲法制定時の国制の原則は、これによって百八十度転換されてしまったのであろうか。

まず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国家と皇室を分離するという従来の国制原理を改め、国家のなかに皇室を位置づけ直すことを企図した調査局だが、そのことによって天皇の政治的役割が強調され、主権者としての親政が意図されてい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むしろ全く逆であった。そこで志向されていたのは、天皇主権の確立というよりも、皇位や皇室のより一層の制度化であり、国家機関化であったと目される。換言すれば、天皇への国民の滅私ではなく、天皇の国家への奉公こそが眼目だったのである。

この点を明示するのが、帝室制度調査局御用掛として、同局による制度の立案作業に多大な貢献をした有賀の残した史料である。有賀は、調査局副総裁伊東巳代治の強い推挙によって御用掛に抜擢された人物である。彼は、調査局がその役割を終えて廃止された後の一九〇八年二月から翌年七月にかけて、清国からやってきた憲法調査団に対して立憲制度について講義を行っている。この講義を有賀が行うに当たっては、伊藤の斡旋があった（伊東巳代治「清国憲法と我国」『国民新聞』、一九一〇年十月五日号、3頁）。この時、有賀は言わば伊藤の名代として、帝室制度調査局による憲法改革の成果を中国の調査団に講義したのである。その記録は今日、「憲政講義」の名で『伊東巳代治関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憲政史料室所蔵）のなかに残されている。このなかで、国家と天皇の関係はいかに記されているのであろうか。

有賀は立憲政体の樹立に伴い、国家と皇室を区別する必要性が生じたとして、そのことを会社組織の発展に比定している。ある個人によって会社が起業された時、それは創業者の一身に属するものであり、経営もその人が直接行う。この点で彼はあたかも二つの家を主宰しているかの如くである。つまり、自分の家族と会社である。この両者に彼はともに長として君臨し、直接に統治を行う。

しかし、事業が発展していくと、会社の経営は次第に彼の専権から離れていく。「主人ハ本宅ノ家事ノミ直接ニ処理スルモ、商業ハ此ノ会社組織ニ依リ間接ニ経営スルニ至リタル

カ如シ」。すなわち、家長として家を直接に差配するのとは異なり、会社のほうは経営の大規模化に伴って組織が自律化し、社長としての統治は間接的になるという。確かに会社は自分のものであるが、その事務は自らが専決するのではなく、会社の定款に定めてある機関によって処理され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にして経営者の「本宅」と「会社」は分離する。それと同時に、経営者の人格も二面化する。家長としての側面と社長としての側面である。私人の面と公人の面と言い換えてもよい。そして、有賀によれば、立憲制度とは天皇についてこのような公私の別を明確化したものに他ならない。皇室の長としての天皇と国家の元首としての天皇は、区別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以上のことは、「皇室ハ国家ノ要素」と掲げる帝室制度調査局の指針と矛盾するのではないか。このような疑問に対しては、皇室を国家の支配主体として動員することではなく、国家が皇室を制度化すること、すなわち皇室の国制化こそ調査局の隠された意図だったと答えることが可能である。言うならば、帝室制度調査局の推進した一連の皇室改革によって、宮中府中の別の見直しがなされたとはいっても、そこでは皇室を国家の機関として呼び込むと同時に、その徹底した制度化が図られていたのである。つまり、実質的な力点は天皇大権の政治的突出の防止と皇室のさらなる制度化にあったといえる。それは、明治憲法制定当初からの伊藤博文の考えと何ら異なるものではなかった。

このようにして天皇の「統治権の総攬」者（大日本帝国憲法第四条）としての役割は形式化される。代わりに実質的な統治を担うのは誰か。先述の有賀の会社の比喩に倣えば、それは取締役会ということになる。国家経営で言うならば、それは内閣である。有賀によれば、立憲政治とは内閣による責任政治とされる。この責任の一事こそ、「国家ト皇室トヲ区別スルノ標準」（一九〇八年三月十五日）に他ならない。責任問題の生じる事柄については、皇室ではなく国家の事務として政府が行う、そのような間接統治によって皇位は責任問題から回避され安泰となる、と有賀は述べている。これに付け加えて、次のようにも説かれている。

一体立憲政体は都合の好い政体であります。君主か若し明君であれば其の結果が直ちに顕はれますし、又君主か幼冲であるとか、病身であるとか、又庸愚であるとかという時は、其の事か表面に顕はれないで済むことになって居ります。（一九〇八年十一月二九日）〔引用に際して、読み易さを考慮して一部表記を改めた。以下同。〕

以上説明してきたことから分かるように、皇室を国家の機関として位置づけると同時に、その政治的実権から遠ざけて抜本的に制度化することを調査局のブレインたる有賀も説いていた。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天皇及び皇室を統治者性を形式化し、もって政治的に無責任化することが期されたのである。代わって、政治上の責任主体として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もの、それは内閣である。次にその考察へ進んでいこう。

(2) 内閣と政党—調査局と政友会—

皇室制度調査局は皇室制度の整備を掲げて設立された。だが、その裏には、秘められたもうひとつの課題があった。それは、内閣による責任政治の確立である。

明治憲法が施行されて二十年近くが経っていたこの時、国制を取り巻く内外の状況は様変わりし、立憲体制は大きな曲がり角に来ていた。一方において確かに政党勢力が台頭し、議会政治はこの間着実に定着していった。だが他方で、日清日露の両戦役を通じての陸海軍の一層の強力化、台湾や朝鮮という海外の領域への新たな支配権の獲得によって、国家の統治権力の分散という問題も生じていた。この情勢を受けて、内閣のもとに統治権を集約し、国制の分化を防止すること。それこそが、調査局の真の任務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皇室制度の国制化はその一齣に他ならない。そして、直接この目的のために策定されたのが、公式令とそれに伴う内閣官制の改正である。公式令とは国家の発するあらゆる公文の公布形式を定め、国法秩序の体系的統一をもたらした重要な憲法付属法である。これによって、皇室典範改正の際には公布がなされることが定められ（第四条）、皇室典範に基づく規則など皇室に関する規定を定めたものとしての皇室令が法令形式として認められた（第五条）。前述した政務法・宮務法の二元体制の確立である。また、第三条において帝国憲法改正の際の公布手続きが規定された。

だが、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公式令が一八八五年の内閣職権で規定されていた大宰相主義への回帰を企図したものだだったのである。内閣制度導入の際に制定された内閣職権では、「内閣総理大臣ハ各大臣ノ首班トシテ機務ヲ奏宣シ、旨ヲ承テ大政ノ方向ヲ指示シ行政各部ヲ統督ス」（第一条）と規定されたうえで、「凡ソ法律命令ニハ内閣総理大臣之ニ副署」すとされていた（第四条）。しかし、その後一八八九年に内閣職権は廃止され、新たに内閣官制の成立をみる。その第四条は次のように定めていた。

凡ソ法律及一般ノ行政ニ係ル勅令ハ内閣総理大臣及主任大臣之ニ副署スヘシ。勅令ノ各省専任ノ行政事務ニ属スル者ハ主任ノ各省大臣之ニ副署スヘシ。

つまり、法律および一般の行政にかかわる勅令には首相の副署が必要としたものの、「各省専任ノ行政事務ニ属スル」命令については各省大臣の副署のみで足りるとして、首相の関与は不要とされたのである。かくして総理大臣の地位と権限は大きく減殺されることになる。今やそれは他の国务大臣と肩を並べる同輩中の首席に過ぎなくなったのである。「明治憲法下における首相ほど哀れな存在はない」（五百）と言われる所以である。

このように弱体化された首相の権限を再び強化する狙いが、公式令にはあった。ここで重要なのは、第六条と第七条である。この両条によって、全ての法律命令に首相の副署が必要との規定が復活し、あわせて既存の内閣官制も改正された。前掲の第四条は削除され、

代わって内閣総理大臣による閣令制定権と警視總監・地方長官等に対する指揮監督権が明文化される。かくして制度上、従来の内閣官制のあり方にも重要な変更がもたらされ、内閣総理大臣に強力な国政の統制権限が改めて付与されることとなった。これこそ皇室制度調査局の真の狙いだったのである。

それはまた伊藤の宿願でもあった。調査局の設立当初の一八九九年、伊藤は次のように語っている。

目下に於て私が最も急務なりと感ずる所は、一は政府をして永く存立せしむることを希望し、一は政党の改良と云ふことの必要を感じて居ります。(伊藤侯演説集第二 100)

現下の最急務は、強固な政府の樹立と政党の改良だという。この時、この二つの急務を達成するために伊藤が作ったもの、それが皇室制度調査局であり、立憲政友会だった。したがって、この二つの組織は彼のなかで連動していたのである。伊藤の政友会構想については前述の通りだが、いまここで再論すれば、伊藤は政友会を作ることによって、これまでの政争をなりわいとする壮士たちの集まりとしての政党を改良し、良質な政策通の政治家を育成して内閣や政府への人材の供給源を提供しようとした。今日風に言うならば、そこでの政党とはシンクタンクのようなものとして構想されていた。伊藤にとって政党とは、力を結集した闘争原理に立脚したものではなく、調和を志向する知識集団であるべきものだった。

このような政党観を抱く伊藤は、議会多数党が必然的に単独で内閣を構成するという政党内閣の論理は、これを拒絶している。それというのも、内閣というのは、政権闘争の勝者によって占奪される場ではなく、国家的見地で公平な施政が思案されるべき知恵の府だからである。

古人も言っているように、立法上の事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衆議を尽して遺算なきを期す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ぬが、行政の仕事に至っては、政府は衆論の府にあらざるが故に、所謂人の材能智識に俟たざることを得ぬのであって、成るべく単独な力に依って命令計画の下に事の行はるるようにするのが行政上の妙所である。(演説集第三 160)

衆論の府たる議会とは異なり、「材能智識」を集約して、命令一下迅速に行動を起こすことが、行政の妙所だとされている。その上に立って統括する内閣は国家の頭脳であり、したがって知恵の府に他ならない。

一九〇〇年前後に相次いで誕生した二つの総裁—皇室制度調査局と立憲政友会のそれ—は、このように二つの概念上峻別される国家作用—内閣を中心とする行政と議会を中心とする憲政—をともに改良して国制の完遂を図ろうとした伊藤博文のヤヌスの顔であった。

皇室制度調査局の改革は、途中中断をはさみながら、一九〇七年に成果を出す。通常、ここでは従来の憲法を頂く政務法の体系とならんで、皇室令という法令形式の成立に伴う官務法の体系が造出され、憲法と皇室典範の二元的国法秩序（典憲体制）が確立したと説かれる。だが、他方で、国家秩序の実態として伊藤総裁が構想していたのは、内閣による一元的な国家統治であった。そのために伊藤は、伊東巳代治や有賀を駆使して公式令の制定と内閣官制の改正を行ったのである。

だが、この構想はある特定の政治勢力からの反発を招くことになる。それは、軍部、特に陸軍である。次に、伊藤と陸軍の確執に議論を移したい。

（3）軍部統制の試み

公式令制定の裏には、内閣官制を改正し、大宰相主義を復活させるという底意があった。首相の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での内閣中心の責任政治の実現こそが、皇室制度調査局の憲法改革の真の課題であり、シークレット・ミッションだったのである。

公式令制定の際、調査局が念頭に置いていた対抗勢力があった。それは軍部である。全ての法律命令に首相の副署を課した公式令は、軍が掲げる統帥権に対する挑戦に他ならなかったのである。

そのことを如実に示しているのが、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伊東巳代治関係文書』に収録されている「軍令軍政ノ区別ヲ明カニスルコト」（一五六）という報告書である（以下、「区別」。なお、この史料は小林龍夫編『翠雨莊日記』（原書房、一九六六年）に翻刻）。皇室制度調査局の野紙に綴られたこの文書は、本来明治憲法第十一条の統帥大権に関わるものに限定されるはずの軍令事項が肥大化し、同第十二条の軍の編制や常備兵額を定める天皇の大権（編制大権）までがあたかも統帥権の一部となってしまうとして、軍令事項と通常の軍事行政に関わる軍政事項との区別の是正を求める内容である。執筆の具体的日付は書かれていないが、本文中の文言より一九〇一年二月頃にまとめら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分かる。つまり、皇室制度調査局設立当初におそらく伊藤の命を受けて、伊東巳代治により調査作成された文書といえる。調査局がその活動を開始した時から、皇室制度の整備とならんで、軍部の統制を重要な任務としてい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区別」の具体的内容をみてみよう。

なぜ軍令と軍政は区別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それは、軍令が帷幄上奏、すなわち軍当局による天皇への直接の上奏に起因するものであり、内閣を経由しないで発令され、また国民に対する公布も不要とされるからである。帷幄上奏の権利とは、狭義に解釈すれば、戦闘に際して参謀本部のような軍令機関（帷幄）が大元帥たる天皇に戦況や軍の指揮命令について直接報告し伺いを立てることを保障したものである。しかし、軍務への文官や議会の干渉を嫌忌する軍によって、この規定は平時における軍の編制や組織運営にまで拡大解釈されていく。その根拠となったのが、一八九〇年の内閣官制の第七条である。

内閣官制

第七条 事ノ軍機軍令ニ係リ奏上スルモノハ天皇ノ旨ニ依リ之ヲ内閣ニ下付セラルハ
ノ件ヲ除ク外陸軍大臣海軍大臣ヨリ内閣総理大臣ニ報告スヘシ

このように同条では、「軍機軍令」に関わる事項については、原則として内閣は通さず、事後的に軍部大臣より首相へ報告すればよ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た。問題は、何が「軍機軍令」に当たるかである。この点、「軍令軍政ノ区別」は次のように記している。

内閣官制第七条ノ規定ハ陸海軍当局者ニ於テ任意ニ之ヲ解釈スルコトヲ得ヘク、之レカ為陸海軍大臣ハ軍政事項中軍機軍令ニ属スルモノナリト認定シタルトキハ、其ノ実質ノ如何ニ拘ハラズ、自ラ内閣ニ対シテ独立ノ地位ヲ保チ、大政統一ノ任ニ当ル内閣総理大臣ヲシテ卻テ説ヲ陸海軍大臣ニ仰カサルヘカラサルノ事実ヲ現出セリ。

すなわち、何が「軍機軍令」であるかの解釈は、軍当局に委ねられており、このために本来軍政事項として通常の国家行政の範疇に属するものまでが、軍の恣意的意向によって帷幄上奏を通じて定められ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この結果、軍は内閣から独立し、首相による国家運営の統一に支障が生じているという。

こういった国制の状況を矯正するために、「区別」では、軍令と軍政の混合事務があることを認めながらも、純然たる軍令事務と純然たる軍政事務を峻別し、後者については帷幄上奏を認めずに内閣総理大臣より奏上することを要請している。また、あわせて、「内閣官制第七条ニハ軍令事項ノ外軍機事項ヲ認ムト雖モ、元来国务大臣ニ対シ軍政上秘密ニナササルヘカラサル事項アルヘキ道理ナシ。故ニ帷幄上奏ノ範囲ハ軍令事項ニ限り「軍機」ノ二字ハ之ヲ削除スルコトヲ要ス」として、内閣官制を改正して「軍機」を抹消することも提言されている。

以上のように、皇室制度調査局の活動には、軍事行政の内閣からの分立傾向をリセットするという目論見が初発からインプットされていた。公式令が成立した当初、陸軍はさしたる関心を示していない。だが、ほどなくして公式令の意図は露となり、激的な反応を呼ぶことになる。その経緯は以下の通りである。

一九〇七年三月、斎藤実海相は韓国の鎮海・永興両湾に防備隊を配備するための条例案を天皇に奏上した。斎藤は制定されたばかりの公式令の規定に従い、首相と海相の副署を付して勅令としてこれを公布しようとした。だが、旧来の手続きとの違いをいぶかしく思った天皇は、三月二三日、そのことを韓国にいる伊藤博文に電文で下問したほか、同月二六日には韓国に使いを派遣してその見解を質した（『明治天皇紀』第十一卷（吉川弘文館、一九七五年）、七九八頁）。

この時の伊藤の回答は以下の通りである。第一に、防備隊の設置などということは、国

家の行政事項であり、それは勅令をもって公布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なぜなら、同隊の設置条例は新たに制度を設ける官制であり、予算上の問題が生じるほか、その地域内の日韓両民には同隊の命令や禁令に服従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柄も多々生じ、ほとんど法律と同等の効力をもつものだからである。いわゆる帷幄上奏なるものは、「専ら軍事命令に属し、法律又は勅令の範囲内に於て予算の増減にも関係せず、国民の権利義務にも軽重を為さざる性質のものに限らざるべから」ず、と伊藤は断言している。

第二に、およそ勅令には内閣官制上、総理大臣の副署を要するとされている。防備隊設置もその例外ではなく、海軍大臣が所管大臣としてあわせて副署を行うのが、新制度の趣旨である。

第三に、確かにこれまでは主務大臣が単独で副署すれば足りていたケースもあったが、内閣官制が改正され、新たに公式令が制定された以上は、総理大臣の副署が不可欠なのは、「愈々明確」である。したがって、公式令に「依拠セスシテ、尚従前ノ慣行ヲ継続スルニ於テハ、公式令ハ徒法ニ帰スルコトト」なってしまう。「公式令ヲ無視シテ海軍大臣一名ノ副署ヲ以テ防備隊編制勅令ヲ御発布相成リ候事ハ乍恐其当ヲ得タルモノト申上難」い。以上のように伊藤は奉答した（『明治天皇紀』第十一卷（吉川弘文館、一九七五年）、七九八頁。『伊藤博文秘録』（原書房、一九八二年）、四四一―四四二頁）。

この韓国防備隊条例事件を機に、陸軍は公式令制定の真意を悟った。五月十三日、山県は寺内正毅陸相に対して、「如此変更ニ立到候へハ、統帥之系統を錯乱致し軍制之根底を破壊可致」（寺内文書 360-59）と書き送り、同令改正に動き出す。そして従来の帷幄上奏権を保障する法令形式として、「軍令」が立案される。この法令形式としての軍令は、八月に入って素案が固まったらしい。八月十日、山県は軍令制定の件につき、いまだ新聞報道に接しない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と寺内に書面で質している（寺内文書、360-61。この頃山県は東京を離れ、大磯に滞在していた）。山県は、従来の統帥権事項で発布延滞しているものが多々あると焦慮して督促の書簡を発したのだが、それから九日後の同月十九日、「軍令ニ関スル件」と題する軍令第一号の裁可を求める上奏が、陸軍海軍両大臣連署のうえ行われた。その理由書には、「此際統帥権事項ニ関スル命令ハ、特別ノ形式即チ軍令ヲ以テ公布シ、主任大臣ノミ之ニ副署スルコトト為シ、以テ行政事項ニ属スル命令ト判然之ヲ區別シ、統帥大権ノ発動ヲ明確ナラシメントス」と記されてある（「軍務局 軍令形式制定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所蔵『密大日記 明治四十年』、国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3022854500）。

九月二日、韓国統監として赴任先の韓国より一時帰国した伊藤と山県が、軍令の制定について会談した。「軍令其物之命脈ハ断絶致し不申やとの懸念」を胸に伊藤と対面した山県は、統帥事項と行政の区画を判然とさせるために法令としての軍令を認めさせた（同日付寺内宛山県書簡、寺内文書 360-62）。伊藤は山県に対して譲歩したのである。

かくして、九月十一日、軍令第一号たる「軍令ニ関スル件」が裁可成立した。これをもって、帷幄上奏して発令される統帥事項には軍令の名が与えられ、そのうち公布（公示）

される勅令は陸海軍大臣の副署のみで足りることとされた。以上の事態を指して、結果に「軍部がその法的地位を守り固めるかたちとなって決着した」（伊藤孝夫『大正デモクラシー期の法と社会』、二三〇頁）と評される。

このように、公式令制定以降、大山鳴動したものの結局は従前の軍の慣行が承認されたのみならず、そこに法的な裏付けがなされて、昭和期の統帥権肥大化の根柢が出来上がってしまったというのが、「軍令ニ関スル件」成立の通説である。そうすると、それに先立つ九月二日の山県との会談で伊藤は一方的に妥協を余儀なく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る。果たしてそうだったのだろうか。この時の両者の会見を具体的に物語る史料は見当たらないが、いくつかの周辺の史料をもとに、二人の合意の内容について推論してみたい。

まず取り上げたいのが、『原敬日記』のなかの記載である。「軍令ニ関スル件」が裁可された一九〇七年九月十一日のくだりである。

午前定例の閣議に出席せり、軍令の規定に関し首相より報告ありたり（此事は曾て議論ありし帷幄上奏に關したるものにて、山縣元帥より従来に比し途方もなき拡張の案を直接上奏せしに因り、尚ほ篤と伊藤、山縣にも協議上奏すべき旨御沙汰あり、西園寺より伊藤、山縣に協議せしに伊藤は憲法上許すべからざるものとの正論を唱へ、首相も之に同意して奉答せしものなるが、遂に答奏の通裁可ありて、従来よりも其権限を縮小したるものとなれり。（原敬日記Ⅱ、二五七）

当初山県より帷幄上奏の範囲を途方もなく拡張する案が上奏されたが、伊藤はそれを「憲法上許すべからざるもの」と正論を述べ、最終的には従来よりも帷幄上奏の権限を縮小したものが裁可されたという。原は軍令の成立に違和感を抱いていないのみならず、むしろこれまでの軍の権限に制約を加えたものと肯定的に評価しているのである。当時内閣のなかにあった者（原は当時内相）のなかには、軍行政の一定の立憲化に成功したとの見方もあったことが分かる。

この点を念頭に置いて、軍令の成立過程を再考してみたい。事の起こりは、一九〇七年三月末に韓国に海軍が防備隊を設置するための条例案が上奏されたことだった。この時、新たに制定された公式令に基づいて、所轄大臣たる海相のみならず首相の副署も必要との議論が生じる。公式令を前面に立てて首相副署のうえ当該条例の成立を目指す伊藤に対して、山県はそのようなことをすれば統帥の系統が乱れるとして猛反発した。

この山県を戴く陸軍当局の巻き返しとして、公式令適用の例外法たる軍令の案が取りまとめられ、八月十九日に天皇のもとへ上奏される。これを受けて天皇は、伊藤と山県に諮詢することを首相の西園寺公望に命じたほか、二二日に侍従長の徳大寺実則を寺内正毅陸相のもとへと遣わし、軍令案について下問した。天皇の疑念は、「従来帷幄上奏せるの類は悉く之れを軍令と為すべきか、將た分割区分して内閣に提出することあるべきか」（天皇紀Ⅺ、七八九）ということだった。これまでの帷幄上奏の範囲はそのまま維持されるのか、

それとも狭められるのかと質したのである。

この天皇からの下問に対して、翌二三日に寺内は参内して奉答した（天皇紀、同前）。だが、その内容は明らかでない。果たして陸軍は、従来の慣行をそのまま法定化することを求めたのだろうか。この点について当事者間での合意が図られたのが、九月二日の伊藤と山県の会談だったであろう。この時、両巨頭の間で何か取引はされなかったのだろうか。会談の様子を伝える寺内宛ての山県の書簡を見てみよう（読み易くなるように原文に手を加えてある）。

今朝春畝〔伊藤のこと〕来菴につき、韓国その他内外の事情示談した末、私より軍令の件につき話を切り出し、今日までの形行、そして軍令と行政の区域が頗る紛雑を極めており、区画が判然と相立つよう当局者より上奏に及んだことの概略を陳弁したところ、伊藤は「行政と軍令との区画が判然と相定まることができたら結構なことだが、副署についてはどうなるか」というので、私は「いずれにしても陸軍大臣奉命のうえ一般軍隊軍人は陸軍大臣より署名のうえ伝達しなくては機関の運用活動を失い、事実上機能し難くなる」と示談した。

右の文面から、次のことが指摘できる。まず第一に、軍令と行政の区別を確定することにおいて、伊藤山県両者の間に径庭はないこと。第二に、伊藤のこだわりは、副署の問題にあったこと、すなわちおよそ軍政事項には首相が副署すべきことに彼が固執していたこと。第三に、それを受けての山県の「孰れニしても」云々には、やや逃げ口上の響きがあることである。山県は総理の副署を迫る伊藤に対して、陸軍大臣の署名がないと軍隊の統率や士気に支障があるとして不服を申し立てているのだが、真正面から拒絶するには至っていない。

以上の山県が報じる情景からは、山県のほうが一方的に伊藤に譲歩を迫ったとの絵は描きにくい。副署の問題をはぐらかそうとしているように、山県も伊藤の追撃を受けて一定の妥協を余儀なく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との推測が可能である。先に言及した八月二二日の天皇の寺内への下問に即して言えば、山県は従来帷幄上奏してきたものを悉く軍令とすることは断念し、一定の事項は分割区分して内閣に提出することを認めたのではなかろうか。もちろん山県はその分割の程度は小さくしようとして、大幅な分割を求める伊藤に対して、「孰れニしても」云々と述べて煙に巻こうとした。だが少なくとも、伊藤からしてみれば、軍令の成立では妥協したものの、これまで慣行化していた帷幄上奏の権限を抑制し、軍行政に内閣が介入していく足がかりを築いたとの満足は得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実際に、軍令の成立後、それまで陸軍大臣の単独輔弼で決せられていた勅令のうち少なからぬものが、軍令ではなく公式令に基づく勅令で、すなわち総理大臣との連署で改正されている（陸軍給与令、憲兵令、陸軍服制、陸軍武官官等表、陸軍補充条例など）。

このように考えてみると、軍令の成立は、一九〇七年の憲法改革の挫折ならびに統帥権

拡大の法的根拠の確立というよりも、対抗勢力たる軍部による既得権益の死守の試みと捉えられるだろう。伊藤はこの時点では軍令を認めて妥協したが、憲法改革の成果を今後さらに拡充させていくことで帷幄上奏をより一層制約し、軍行政の立憲化を漸進的に推し進めていこうとしていたのだと考えられる。そして、そのための実践に伊藤はすでに着手していた。その実践の場が、韓国統治だった。伊藤が初代韓国統監として韓国の保護国化に自らあたったことのひとつの大きな要因は、まさに一九〇七年の憲法改革との連動において把握できるのである。

IV 韓国統監のヤヌスの顔

(1) 「文明」政治の伝道

伊藤が統監として韓国統治に血道をあげている時、彼は帝室制度調査局総裁として日本の憲法改革にも邁進していた。この頃、伊藤は統監と総裁という二つの顔をもっていたのである。しかし、その二つの顔を彼は仮面のように取り外して使い分けていたのだろうか。むしろ、この両者は、伊藤が抱懐している同じ一つの思想に淵源するものとはいえないのだろうか。そのような観点から伊藤の韓国統治の思想を考察したい。

伊藤は政党政治を改良し、立憲政治を実現するために政友会を作った。その根底には、立憲政治こそ文明の政治だという確信がある。彼において文明政治とは、国民を中心とする政治としても観念されていた。先に伊藤が、文明の人民とは納税者意識をもって国政を監視する存在だと述べていた言葉を引用したが、彼は次のようにも語っている。

封建時代の日本国民は政治に少しも与からず唯々支配されるのみであったから、其時に当っては政治が如何に行はるるかということを知ろうといっても、唯々己れの上に関して来ることの外は知れなかったのである。然るに今日は己れの上に関係のないことまでも知らなければならず、又知るだけの権利があるという人民になったのである。そういう人民になった以上は、即ち国家の事に与かる権利があるのであって、かくの如き仕掛方法の行はるるものを以て文明の政治といい、文明の人民といはるるのである。(伊藤侯演説集第二 159-160)

このように伊藤は、文明の人民を創出し、彼らによる文明の政治を布くことを理想としていた。そのような理想は、韓国での施政にも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点について、既に報告者は論文を發表している(拙稿「知の嚮導としての韓国統治」伊藤之雄・李盛煥『伊藤博文と韓国統治』(ミネルヴァ書房、2009年)、193-217頁)。そこでの議論の一部を再論しておこう。

統監として赴任当初から、伊藤は自らを文明の伝道師に擬していた。「自分の此の地に来

任せるは韓国を世界の文明国たらしめんと欲するが故なり」(韓国施政改善ニ関スル協議会(以下、施政改善協議会)、一九〇六年七月三日(第七回)、『集成』六(上)、二四七頁)、と。彼は日本で行ったのと全く同様に、韓国人民を文明の民へと導こうとしたのである。そのための方策として採られたのが、民本主義、法治主義、漸進主義であった。

第一の民本主義である。民を基調とする政治を伊藤は何度も表明している。統監として着任してまだ日数の経っていない一九〇六年三月二五日の高宗との内謁見において、「我が韓国をして如何せば国力発達し、国運の隆盛を求むべきか」と下問された伊藤は、「国民の富力に俟たざるべからず」と返答している(『集成』六(上)、一六三—一六四頁)。後に韓国の閣僚たちに対しても、「政府は人民を愛することを第一の目的として官吏を愛する工夫を止めざるべからず」(施政改善協議会、一九〇七年四月九日(第十四回)、『集成』六(上)、四五〇頁)として、国民本位の政治が説かれている。民度を高めて殖産興業を図るという文明化=近代化のプロジェクトを掲げる点において、日本での統治と韓国統治の間に相違はなかったといえよう。

このような撫民思想という点において、伊藤の統治哲学は儒教的王道思想の民本主義と軌を一にするものと指摘できる。もっとも、伊藤のそれは王道論ではなく、法治主義である。先述の高宗との会見のなかで、国民の経済力を高めるためにも、「まずもって身体財産の安固を保障せざるべからず」(『集成』六(上)、一六四頁)と述べられているほか、「彼の貧官汚吏の為常に生命財産の危険を免れずとせば、国民は一日も其の産業に安んじ其の富力の増殖に勉めざるは必然の勢なり」(同上)とも語られ、国家権力の恣意的濫用の制約が強調される。法に則った支配を実施することは、国民本位の政治を布き、国力を増強するための不可欠の前提な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な統治哲学の実践のために彼がとった方法が、漸進主義に他ならない。この点は、韓国の閣僚たちを集めて統監伊藤が在任中に開催していた非公式の閣議である「韓国施政改善に関する協議会」の第一回目会合において、明言されている。すなわち、その席上教育制度の改革を唱えた伊藤は、「初より大計画を立て損失を招くか如きは不可」として、「当初は小計画を立て漸次に之を発達せしむる」(施政改善協議会、一九〇六年三月十三日(第一回)、『集成』六(上)、一三八頁)ことを説いているのである。そもそも漸進主義とは政治家伊藤の骨身に染みついたポリシーであった。統治の大方針は信念として堅持するが、その実現にあたっては、慎重に時勢を見極めながら漸進的に事を進めるというのが、彼の政治スタイルであった。日本における立憲政治の導入も、その主義に則って推し進められていったのである。

韓国統治においても、この点に変わりはない。伊藤は韓国の既存の秩序や価値観を可能な限り尊重しつつ、漸進的に文明国への転換を成し遂げようとしていた。その観点から彼が特に力を入れたものとして、宮中改革が挙げられる。日本においても、彼は憲法制定期に宮中の非政治化を企て(坂本一登)、一九〇七年にはその国家機関化を推進していた。そうすることで伊藤は、西欧の君主制と同列の立憲君主として日本の天皇制を改革しよう

としたのである。韓国皇帝と皇室に対しても、伊藤は同様の姿勢で臨んだことが推察できる。率先して制度や生活様式の近代化を図り、国民の模範となることを期待したのである。そして近代化の効果が、そこを起点として社会の隅々へと漸進的に浸透していくことを目論んだものと考えられる。だが、この点、伊藤は韓国宮廷文化の重みを軽く見ていた。

一九〇六年七月、宮中改革のための取調委員会が設置され、宮中の人出入りを規制するための宮禁令が制定された。ここで伊藤は、儒林を宮中から遠ざけ、もって韓国統治の仕組みと為政者の意識を抜本的に変革せんことを意図していたのである。伊藤によれば、韓国のエリートが護持している儒教とは、国家を滅ぼす空論でしかない。韓国が世界の大勢に乗り遅れ、かくも貧弱な地位に陥ってしまったのは、ひとえに「斯かる古法を尊重せらるるが故」ではないかとして、その「廃棄」を促している。「眼を開きて文明の式に随ひ国利民福を興さんとする今日に於ては、斯かる有害無益の旧慣は速に之を廃棄する方、寧ろ韓国の為に忠なる所以にあらずや」と（施政改善協議会、一九〇六年七月三日（第七回）、『集成』六（上）、二四七頁）。

韓国側としてみれば、儒林のなかから人を選び、随時招いてその説を聞くことは君子の務めであり、「従来学者を原〔厚？〕遇するは我が国の風習」（閔泳綺度支部大臣）との言い分があった。すべての国家体制には、その統治を正当化し合理化するための知の体系や学識者層の存在が内包されており、その意味で知は国制のファクター（**knowledge as constitutional factor**）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拙著『ドイツ国家学と明治国制』（ミネルヴァ書房、一九九九年））。韓国において儒学とはまさしくそのようなものとして、従来の統治構造のなかに組み込まれていたのである。

しかし、そのように抗弁する高宗らの言葉に伊藤が耳を貸すことはなかった。「たとへ如何なる学者か深山幽谷の辺に棲息し居るにせよ、其の樹木と対座するも安ぞ世界の大勢を達観し国家を料理するの理あらんや」とか「山林に隠る儒林を遠く招き来て之と国政を議せんとならば、寧ろ孔夫子の白骨を求め来て之と対座国政を議せらるるの優れるに如かず」と極めて手厳しく応じている（内謁見始末、一九〇六年七月二七日、『集成』六（上）、三一三頁）。

伊藤は、私的には漢学的素養を愛する文人氣質の持ち主だった。しかし、彼にとって、公的な国家の統治機構が前近代的な儒学によって席卷されることは許し難いことだったのである。国家を構成するものは、西洋的な科学知であるべきだった。儒学の教えというのは、いわば中国古代の周代という一時期の政治社会を前提としたものに過ぎない。その言説を金科玉条視して現在を処断しようとすることは、時代錯誤の極みであり、儒林は「世の変遷に応するか如き活動的能力なきもの」（同上、三一四頁）とされる。

だが、現実の韓国宮廷は、儒林のみならず、「筮巫女の輩」までが出入りし、皇帝の近代的啓蒙を妨げていた。伊藤の目にそれは「伏魔殿」と映じた（『伊藤博文伝』下巻（統正社、一九四〇年）、七二六頁）。宮中を手始めとして、あらゆる公共的な空間から儒学のみならずすべての旧習を一掃し、それらに代えて西洋モデルの科学知を充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宮禁令は、伊藤の韓国統治の理念が凝縮されたものであり、韓国宮廷を脱伝統化させて日本が推進する新文明のシンボルとして国民教化に役立てようという戦略がそこには込めら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

(2) 憲法改革の延長

統監と総裁の表裏一体性を考慮した場合に問われるべきは、伊藤にとって韓国統治が日本の憲法改革の一環だったのではなかったかということである。具体的に言えば、前章で示唆したように、軍部を抑制する実践の場として、伊藤が韓国統治を位置づけていたことが考えられる。この点において象徴的なのは、公式令制定の真の狙いが判明し、軍令成立の機縁となったのが、韓国の鎮海・永興両湾における海軍防備隊の設置事件だったことである。伊藤は、公式令に基づいて軍事行政を内閣が一元的に管理するという体制を韓国において樹立し、一九〇七年体制が目指す政軍関係のあるべき姿をここで実践したかったのではないか。その意味で、韓国統治は日本の統治改革へ向けての先例を築くという一面があ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

以上の点を伊藤の韓国統監就任の経緯から説き起こしていこう。一九〇五年十一月、自ら渡韓し高宗をはじめ韓国政府首脳部に第二次日韓協約の調印を迫った伊藤は、それを達成し日本による韓国の保護国化を成し遂げるや、今度は桂首相より統監府及理事庁官制について意見を求められた（日韓外交資料集成 VI 上 52）。これを受けて伊藤は帰国後、同官制の起草を行う（1905年12月29日付林権助宛伊藤書簡、『統対支回顧録（下）』92）。日本による保護国政策の中央組織たる韓国統監府もまた、伊藤の構想と指導力の所産であった。

伊藤の手によって統監に授けられた権限のうち、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駐韓日本軍の指揮命令権である（「統監ハ韓国ノ安寧秩序ヲ保持スル為必要ト認ムルトキハ韓国守備軍ノ司令官ニ対シ兵力ノ使用ヲ命スルコトヲ得」（統監府及理事庁官制第四条）。これを見た時、山県は「統監ナルモノハ武官ヨリ御採用尤時機ニ適シタル事ニ候」（『寺内正毅関係文書』360-42）と述べ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文官伊藤は自ら初代統監に就任した。それは陸軍の大きな反発を招く行為だっ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伊藤の韓国統治には、その最初から軍との間の緊張関係がくすぶっていた。先述の防備隊条例事件は、それを背景に勃発したものに他ならない。これに限らず、この時期伊藤は軍の膨張を牽制する動きを重ねてとっている。そのための最前線が韓国統治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ほどである。この点における伊藤の一連の施策として、以下のようなものがある。

まず伊藤は、韓国における軍の行動を法治化しようとした。一九〇六年七月、韓国人閣僚との協議会において陸軍の土地収用に関して議論が生じている。その席上、伊藤は、従前の陸軍による軍用地収用のあり方を批判し、「賠償金ノ如キ郡守ト日本官憲ト立会ノ上直接ニ之ヲ所有主ニ交付スルコトニ致シタシ」と述べている。この発言は、鎮海湾附近の一定地域

の収用を求める海軍からの要望を受けてのものである。伊藤にとって、同湾の防備隊設置は、統監受任の素志を実現するための第一の山場だったのである。また、この翌月の八月には、それまで日本軍が治安維持のため出していた軍律が緩和されている。これにより、処罰規定項目が減らされたほか、死刑が廃止された（松田利彦『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47）。伊藤は、韓国統治の軍政色を一新し、民政化を促進しようとした。それは韓国民衆の懐柔策という側面以上に、法治主義に軍をも従わせてその自立化を抑止しようという本国の憲法改革と連動したものであった。

軍の司令権を握った後の伊藤は、その行動が暴発しないよう目を光らせていた。この点について言及しておきたいのは、統監府間島派出所の開設である（一九〇七年八月）。同所は、清国との国境地帯間島在住韓国人の保護のために設けられたものであるが、森山茂樹によれば、「伊藤の真の意図は、将来のロシアの行動に備えるために、間島に日本の拠点を築くことであった」（『近代日韓関係史研究』229）と説かれている。しかし、実際に伊藤が同所に発した指令を見ていけば、むしろ日本軍の過剰行動を防止するのが、彼の真意ではなかったかと思われる。

伊藤は、統監府派出所長の斎藤季治郎陸軍中将が間島の韓国人を韓国裁判権の管轄下に置くべしと進言してきたことに対して、「斯克セバ一面ニハ又間島ノ清国領ナルコトヲ暗ニ認メタル姿トナル」としたうえで、清韓国境問題が未解決な現状で「我ニ不利益ナル論拠ヲ彼ニ与フルコトハ之ヲ避ケザルヘカラス」としている。これに先駆けて伊藤は、斎藤所長に対して「間島問題ノ前途ニハ境界決定ノ大問題ヲ控ユルヲ以テ現在ニ於ケル貴官ノ行動ハ総テ此ノ大問題ノ解決ニ障害ヲ及ホサル様最モ慎重ナル注意ヲ要ス」と指示を与えていた。その慎重な注意とは、清国人をもって日本の行為を「占領侵略ヲ実行スルモノト誤認」せしめないことであって、そのためには「韓人ノ苦情ヲ聞キタル節ハ直ニ之ヲ清国官憲ニ移牒シテ同官憲ニ責任ヲ負ハシムヘシ」とされた。伊藤は、間島という一小区域の問題が、「延イテ満州全部ニ波及シ由々敷大事ニ至ル」ことを避けようとしていたのである。その意味で、間島派出所は、伊藤にとって、日本軍の膨張を抑えるための閘であった。

最後に、具体的な軍事行動に際しての伊藤の見解をみておこう。第三次協約が締結され、韓国軍が解散されて以降、反日義兵闘争は盛り上がりを見せた。伊藤もその掃討のために日本軍の増派を本国に要請している。だがその一方で、実際の軍隊の行動には自重を求めている。一九〇八年六月十二日、伊藤は陸軍将校を集めて演説を行った（『倉富勇三郎文書』30-1）。そこで彼は、「本官ハ統監トシテ日本国ヲ代表シテ此ニ蒞ミ陛下ニ直隸シテ韓国保護ノ任務ニ従事スルヲ以テ本官ノ所見ヲ諸君ニ吐露スルハ統監トシテ当然ノ任務ナリト信ス」として、統監の駐留軍に対する監督権者としての立場を掲げて、次のように訓戒している。条約上の明文なき限り、決して兵を率いて国境を越えてはならないこと。暴徒討伐に際して、良民に危害を加えないこと。暴徒のなかには、脅迫を受けてやむなくこれに加わっている者が多く、韓国人一般に公然たる抗日意識はないことを忘れるべきでないこと、である。

以上のように、伊藤は韓国において日本軍の行動を監視し続けていた。それは、日本にお

ける軍制改革と連動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V まとめ

韓国統監としての伊藤は、ヤヌスの相貌をもっていた。ひとつの顔は、「文明」の伝道師としてのそれである。国民を中心とする政治を布いて、文明国へと至るというのが、彼の政治信条だった。その点は、韓国での施政にも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彼は日本で行ったのと全く同様に、韓国人民を文明の民へと導こうとしたのである。そのための方策として採られたのが、民本主義、法治主義、漸進主義であった。

伊藤は韓国の既存の秩序や価値観を可能な限り尊重しつつ、漸進的に文明国への転換を成し遂げようとしたのだが、その観点から彼が特に力を入れた政策のひとつが、宮中改革だった。日本においても、彼は憲法制定期に宮中の非政治化を企て（坂本一登）、一九〇七年にはその国家機関化を推進していた。そうすることで伊藤は、西欧の君主制と同列の立憲君主として日本の天皇を改革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韓国皇帝と皇室に対しても、伊藤は同様の姿勢で臨み、率先して制度や生活様式の近代化を図り、国民の模範となることを期待したものと推察される。その改革の試みとして、一九〇六年七月、宮禁令が制定されるが、伊藤は韓国宮廷文化の重みを軽視していたため、この試みは奏功しなかった。

もうひとつの顔は、日本における憲法改革者としてのものである。上述のように、一九〇七年の憲法改革を実践する場が、韓国だったのではないか。鎮海・永興両湾における海軍防備隊設置問題を筆頭に、伊藤は韓国から日本の軍事行政改革を発信し続けたといえる。統監府官制によって文官でありながら軍の指揮命令権を委ねられた伊藤は、韓国駐留日本軍の行動や軍事行政を掌握し、一九〇七年体制が目指す政軍関係のあるべき姿を韓国において示し、日本へ向けての先例としたかったのであろう。

このように伊藤の韓国統治は、韓国のみならず日本をも睨んだ二つの顔があった。そして、その二つの顔は、一九〇七年体制というひとつの国制改革の思想に淵源しているのである。

(日本語要約)

明治四〇年（一九〇七年）体制と韓国統治 —韓国統監のヤヌスの顔—

瀧井一博

一九〇七年という年は、日韓関係史においてひとつの大きな転機であった。前年三月に初代韓国統監として着任して精力的に韓国の保護国化を推進していた伊藤博文だが、この年の七月に勃発したハグ密使事件をきっかけに、その対韓政策にも転換が生じる。皇帝高宗は退位を余儀なくされ、第三次日韓協約が締結される。これによって、法令制定や重要な行政処分の承認権、官吏の任免権など統監による幅広い内政の指導監督権限が認められた。翌月には韓国軍隊も解散され、日本は実質的に韓国を併合したとされる。

このように一九〇七年は、日本の韓国統治において大きな画期をなす年であり、統監であった伊藤博文にとって多事多端であった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ところで、この年、伊藤は単に韓国統監として韓国統治に専念していたのではなかった。同じ時に、彼は日本においても幾多の改革事業を指導する立場にあった。この時期彼は、韓国統治のみならず、日本の統治改革にも従事していたのである。後者の作業を推進するために彼が就いていたポスト、それは宮内省に設けられていた帝室制度調査局の総裁である。

帝室制度調査局の目指した改革は以下の三点にまとめられる。①天皇の国制化、②内閣による一元的責任政治の確立、③軍部の統制、である。帝室制度調査局は、その名称から想像されるところとは異なり、単に皇室制度の手直しにのみ従事したわけでない。同局の作業はさらに、内閣制度の改革や国法秩序の体系的統一という明治立憲制そのものの補修に向けられていたのである。特に同局は、内閣による大政の統一を掲げ、従来の軍部による帷幄上奏権の制約を試みて、公式令の制定と内閣官制の改正を行った。だが、その試みは山県有朋ら陸軍軍人の反発を招来し、軍令の成立という意図せざる結果をもたらす。

通説では、この時、軍部が成立したと説かれるが、それは妥当だろうか。本報告では、軍令の成立は、一九〇七年の憲法改革の挫折ならびに統帥権拡大の法的根拠の確立というよりも、対抗勢力たる軍部による既得権益の死守の試みと捉えられることを提示する。伊藤はこの時点では軍令を認めて妥協したが、憲法改革の成果を今後さらに拡充させていくことで帷幄上奏をより一層制約し、軍行政の立憲化を漸進的に推し進めていこうとしていたのだと考えられる。そして、そのための実践に伊藤はすでに着手していた。その実践の場が、韓国統治だった。伊藤が初代韓国統監として韓国の保護国化に自らあたったことのひとつの大きな要因は、まさに一九〇七年の憲法改革との連動において把握できる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な観点を踏まえて、伊藤の韓国統治の理念と戦略について再検討したい。韓国統監としての伊藤には、ヤヌスの顔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ひとつの顔は、「文明」の伝

道師というものである。国民を中心とする政治を布いて、文明政治を実現するというのが、彼の政治信条だった。その点は、韓国での施政にも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彼は日本でやったのと全く同様に、韓国人民を文明の民へと導こうとしたのである。そのための方策として採られたのが、民本主義、法治主義、漸進主義であった。

伊藤は韓国の既存の秩序や価値観を可能な限り尊重しつつ、漸進的に文明国への転換を成し遂げようとしたのだが、その観点から彼が特に力を入れたものとして、宮中改革が挙げられる。日本においても、彼は憲法制定期に宮中の非政治化を企て（坂本一登）、一九〇七年にはその国家機関化を推進していた。そうすることで伊藤は、西欧の君主制と同列の立憲君主として日本の天皇制を改革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韓国皇帝と皇室に対しても、伊藤は同様の姿勢で臨み、率先して制度や生活様式の近代化を図り、国民の模範となることを期待したものと推察される。その改革の試みとして、一九〇六年七月、宮禁令が制定されるが、伊藤は韓国宮廷文化の重みを軽視していたため、この試みは奏功しなかった。

もうひとつの顔は、日本における憲法改革者としてのそれである。上述のように、一九〇七年の憲法改革を実践する場が、韓国だったのではないか。その意味で、公式令制定の真の狙いが判明し、軍令成立の機縁となったのが、韓国の鎮海・永興両湾における海軍防備隊の設置事件だったことは象徴的である。統監府官制によって文官でありながら軍の指揮命令権を委ねられた伊藤は、韓国駐留日本軍の行動や軍事行政を掌握し、一九〇七年体制が目指す政軍関係のあるべき姿を韓国において示し、日本へ向けての先例としたかったのであろう。

このように伊藤の韓国統治は、韓国のみならず日本をも睨んだ二つの顔があった。だが、その二つの顔は、一九〇七年体制というひとつの国制改革の思想に淵源しているのである。

(한글요약문)

명치 40년 (1907년) 체제와 한국통치 —한국통감의 야누스의 얼굴—

瀧井一博

1907년이라는 해는 한일관계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기였다. 전년 3월에 초대 한국통감으로 착임해서 정력적으로 한국의 보호국화를 추진해 왔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였지만 이 해 7월에 발발한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한국정책에도 전환이 생겼다. 고종황제는 퇴위를 강요당했고, 제 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의해 법령제정, 중요한 행정처분의 승인권, 관리의 임명 등 통감에게 폭넓은 내정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부여되었다. 다음 달에는 한국군대도 해산되어 일본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병합되어진다.

이처럼 1907년은 일본의 한국통치에서 획기적인 해이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해 이토는 단순히 한국통감으로서 조선통치에 전념했던 것은 아니었다. 같은 해에 그는 일본에서도 많은 개혁사업을 지도하는 입장이었다. 이 시기 그는 한국통치 뿐 아니라 일본의 통치개혁에도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자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가 역임한 포스트, 그것은 궁내성에 마련되어 있던 제실제도조사국의 총재였다.

제실제도조사국이 지향했던 개혁은 이하 세 가지이다. ①천황의 국제화(國制化)、②내각에 의한 일원적인 책임정치의 확립, ③군부의 통제이다. 황실제도조사국은 그 명칭에서 상상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단순히 황실제도를 고치는 일에만 종사했던 것은 아니다. 황실제도조사국의 작업은 나아가 내각제도의 개혁과 국법질서의 체계적인 통일이라는 명치헌법제 그 자체를 보수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조사국은 내각에 의한 대정(大政)의 통일을 내걸고 종래의 군부에 의한 유악상주권(帷幄上奏權)의 제약을 시도하고 공식령의 제정과 내각관제를 개정했다. 그렇지만 그 시도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비롯한 육군군인의 반발을 초래해서 군령의 성립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통설은 이 때 군부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당한 주장일까? 본 보고에서는 군령의 성립은 1907년의 헌법개혁의 좌절 및 통수권 확대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라기보다도 대항세력인 군부에 의한 기득권의 사수되었다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토는 이 시점에서는 군령을 인정하고 타협하지만, 헌법개혁의 성과를 앞으로 더욱 확충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유악상주를 보다 한층 제약하고 군행정의 입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미 이토는 실천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 실천의 장이 바로 한국통치였다. 이토가 초대 한국통감으로서 한국의 보호국화를 담당했던 하나의 큰 요인은 실로 1907년의

헌법개혁과의 관련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토의 한국통치의 이념과 전략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싶다. 한국통감으로서의 이토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나의 얼굴은 「문명」의 전도사라는 얼굴이다.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펴서 문명정치를 실현한다는 것이 그의 정치신념이었다. 그 점은 한국에서의 시정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일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민을 문명의 민(文明的 民)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을 위한 방책으로서 채택한 것이 민본주의, 법치주의, 점진주의였다. 이토는 한국의 기존 질서나 가치관을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점진적으로 문명국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그 관점에서 그가 특히 힘을 쏟은 것은 궁중개혁이었다. 일본에서도 그는 헌법제정기에 궁중의 비정치화를 도모했고(坂本一登)、1907년에는 궁중의 국가기관화를 추진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토는 서구의 군주제와 동열의 입헌군주로서 일본의 천황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황제와 황실에 대해서도 이토는 같은 자세로 임했고, 술선해서 제도와 생활양식의 근대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을 기대했었다고 추측된다. 그 개혁의 시도로서 1906년 7월 궁금령(宮禁令)이 제정되었는데, 이토는 한국궁중문화의 중요성을 경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다.

또 하나의 얼굴은 일본에서 헌법개혁자로서의 얼굴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907년의 헌법개혁을 실천하는 장이 한국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공식령(公式令)제정의 본래 목적이 판명되고 군령성립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한국의 진해만, 영흥만에 해군방비대를 설치했던 사건이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통감부관제에 의해 문관이면서 군의 지휘명령권을 위임받은 이토는 한국주둔 일본군의 행동과 군사행정을 장악하고 1907년체제가 목표로 한 정군관계(政軍關係)의 이상적인 모습을 한국에서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선례를 삼고싶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토의 한국통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응시한 두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두개의 얼굴은 1907년 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국제개혁의 사상에 연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1. 이토의 정우회(政友會) 결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타키이 씨는 정우회 결성(1900년 9월)에 나선 이토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 “①국민의 정치참가 촉진, ②투쟁원리의 정당정치에서 타협과 조화를 기조로 하는 입헌정치로의 전환, ③공정한 정부의 실현”을 언급하면서, “이토에게 있어서 정우회는 단순히 정권을 담당하는 거대 정당을 창설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기존 정당의 방식을 입헌정치의 이념에 맞게 발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시도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 정우회 결성의 배경, 즉 1900년 전후의 시기=제2차 야마가타(山県) 내각시기에는 1900년 3월 10일 치안경찰법 제정과 함께, 같은 달 29일 중의원의원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이 지조(地租) 또는 국세(國稅) 15圓 이상에서 10圓이상으로 완화되고,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의 변화가 있다. 즉 유권자의 급격한 증가, 피선거권에 있어서 납세액 제한 폐지, 무기명비밀투표제 채용 등 국민의 참정권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적 변화를 배경으로 한 이토의 적극적인 정당결성 움직임을 단순히 “입헌정치의 이념”에 맞는 “국민의 정치참여의 촉진”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지?

참고로 “천황의 정부’를 강조하는 등 이른바 왕당(王黨)=군주당 내각론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닌 것”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도 있다.¹⁾ 이런 의미에서 타키이 씨가 말하는 ‘이토에 있어서의 정당’=“조화를 지향하는 지식집단”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2. 제실제도조사국(帝室制度調査局)에 의한 ‘황실의 국제화(國制化)’가 지니는 의미는?

타키이 씨는 이토가 제실제도조사국의 총재를 역임한 이유는 “천황주권의 확립이라기보다 황위와 황실의 보다 확실한 제도화이자 국가기관화”, “바꿔 말하면 천황에 대한 국민의 멸사(滅私)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천황의 봉공(奉公)에 주안점”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토의 입장은 “메이지헌법제정 당초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내각에 의한 책임정치의 확립”=“내각에 대한 일원적인 국가통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황실의 국제화’ 또는 ‘황실의 국가화’라는 타키이 씨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을 “메이지헌법제정 당초부터 이토

1) 『【普及版】日本歴史大系14 明治憲法体制の展開』上, 山川出版社, 1996年, p.269

히로부미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오히려 이것은 1898년 2월 이토가 메이지천황에게 제출한 ‘황실개혁 10개조’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서 문제의식이란, “청일전쟁 이후 의회세력의 힘이 증대된 것을 배경으로 의회제정법이 국가법 속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사태에 대응하고, 황실이 의회세력의 의사=의회제정법에 구속되기 이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非) 의회제정법 아래에 황실을 놓음으로써 이제까지의 황실의 초국가법적 존재와 법치국가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말한다.²⁾ 다시 말해서 황실전범 등의 국법화(國法化)는 이토가 ‘메이지헌법제정 당초부터 생각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국회=국민이 황실에 대해 간섭할 위험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타키이 씨가 말하는 것처럼 “천황에 대한 국민의 멸사(滅私)”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국가에 대한 천황의 봉공(奉公)”이 아니라 ‘천황에 대한 국민의 불간섭에 주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3. 타키이 씨는 이토에게 있어서 ‘한국통치’는 “군사행정을 내각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고, 1907년체제가 지향하는 정군(政軍)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여기(=한국-인용자)에서 실천하고 싶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문명의 전도사’라는 얼굴과 함께 이토의 ‘한국통감으로서의 야누스적 얼굴’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근거로서 들고 있는 통감부 간도파출소(1907년 8월)=‘일본군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문지방, 육군장교에 대한 연설(1908년 6월 12일)=일본군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등을 과연 “군부를 억제하는 실천”으로 볼 수 있는지?

⇒ 그것이 조선에 대해 ‘문명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려 했던 이토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문명’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토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 ‘법치주의’를 실현하려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 鈴木正幸 『国民国家と天皇制』、校倉書房、2000年、p.167

1. 伊藤の「政友會」結成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

瀧井氏は、政友會の結成(1900年9月)に乗り出した伊藤の思想的特徴に対して、「①国民の政治参加の促進、②鬭争原理の政党政治から妥協と調和を基調とする立憲政治への転換、③公正な政府の実現」を指摘し、「伊藤にとって政友會とは、単に政権を担える巨大政党を創設したというにとどまらず、既存の政党のあり方を立憲政治の理念に沿うように抜本的に変革しようという試みだったのである。」という評価をしている。

⇒ 政友會結成の背景、即ち1900年前後の時期＝第2次山県内閣時期には、1900年3月10日治安警察法の制定と共に、同月29日には衆議院議員選挙法が改正され、選挙権が地租または国税15円以上から10円以上に緩和されると共に、小選挙区制から大選挙区制に改めた。つまり有権者の急激な増加、被選挙権における納税額による制限廃止、無記名秘密投票制の採用等国民の参政権拡大が予定されていた時期とも言える。

こうした状況的な変化を背景とする伊藤の政党結成への動きを単に「立憲政治の理念に沿う」「国民の政治参加の促進」としてだけ把握できるだろうか？ 因みに、彼の政党論は“‘天皇の政府’を強調する等、いわゆる王黨=君主党内閣論以外の何物でもなくなっていた」という正反対の評価もある。³⁾ こうした意味で瀧井氏が論じている「伊藤にとっての政党」＝「調和を志向する知識集団」という意味を明確に提示する必要がある。

2. 帝室制度調査局による「皇室の国制化」が持っている意味は？

瀧井氏は、伊藤が帝室制度調査局の総裁を努めた理由は「天皇主権の確立というよりも、皇位や皇室のより一層の制度化であり、国家機関化であった」、「換言すれば、天皇への国民の滅私ではなく、天皇の国家への奉公こそが眼目だった」と評価している。そしてこうした伊藤の立場は「明治憲法制定当初からの伊藤博文の考えと何ら異なるものではなかった」としている。そしてこれを「内閣による一元的な国家統治」と評価している。

⇒ 以上のような伊藤の活動が「皇室の国制化」また「皇室の国家化」という瀧井氏の意見には同意する。しかしこれを「明治憲法制定当初からの伊藤博文の考えと何ら異なるものではなかった」と評価することに対しては異見がある。むしろこれは1898年2月に伊藤が明治天皇へ提出した「皇室改革10ヶ条」の問題意識の延長線で把握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ここで問題意識とは、“日清戦後における議会勢力の力の増大を背景として議会制定法が国家法の中で優位を占めてくる事態に対応して、

3) 『【普及版】日本歴史大系14 明治憲法体制の展開』上、山川出版社、1996年、p.269

皇室が議会勢力の意思＝議会制定法に拘束されるようになることを先手を打って阻止すべく、非議会制定法のもとに皇室を置くことによって、それまでの皇室の越国家法的存在と法治国家の矛盾を解消しておくことにねらい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⁴⁾ したがって皇室典範等の國法化は、伊藤が「明治憲法制定当初から考えたこと」というより、むしろ国会＝国民が皇室に対して干渉する危険性が予想される中で準備されたことであるから、瀧井氏の言うような「天皇への国民の滅私」ではないが、せめて「天皇の国家への奉公」ではなく「天皇に対する国民の不干渉こそが眼目」ではなかつただろうかと考える。

3. 瀧井氏は、伊藤における「韓国統治」は「軍事行政を内閣が一元的に管理するという体制を韓国に樹立し、1907年体制が目指す政軍関係のあるべき姿をここ(＝韓国一引用者)で実践したかった」と述べている。そしてこれを「文明の傳道師」という顔と共に、伊藤の「韓国統監としてのヤヌスの顔」として提示している。

しかしその根拠として取り上げている統監府間島派出所(1907年8月)＝日本軍の膨張を抑えるための闕、陸軍将校への演説(1908年6月12日)＝日本軍の行動を監視摺ること等を、果たして「軍部を抑制する実践」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それが朝鮮に対する「文明の傳道師」の役割を果たそうとする伊藤の立場を反映していたとしても、重要なのは、当時は勿論今までも「文明」という用語には帝国主義的侵略の論理が含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そしてその意図とは関係せずに伊藤が日本ではなく韓国に「法治主義」を実現させようと「試みた」ということそのものが「二〇世紀の怪物、帝国主義」を自ら実践することに他ならないからである。

4) 鈴木正幸『国民国家と天皇制』、校倉書房、2000年、p.167

청일전쟁기 伊藤내각의 對朝鮮 군사·외교에 대하여

서민교

1. 서론

근대 일본 군대의 창설에 큰 역할을 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1872년 “밖으로 대비하는 계획은 이미 서 있고 그 조치가 잘 이루어진다면 국내의 일은 걱정할 바 없다”면서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징병제의 창설을 주장하고 군비확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¹⁾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1873년부터 이전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농민까지 군대에 징병되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에 입각한 징병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점진적인 군비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메이지 초기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군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표1> 일본 육해군 병력 및 함정수(艦艇數)의 변천

年度	장병수			함정수	
	육군	해군	합계	척수	총톤수
1869				4	3,416
1871	14,841	1,798	16,639	14	12,351
1872	17,901	2,641	20,542	14	12,351
1885	54,124	11,399	65,523	25	28,243
1894	123,000	15,091	138,091	55	62,866
1895	130,000	16,596	146,596	69	77,536
1900	150,000*	31,114	181,111	112	212,933
1904	900,000	40,777	940,777	147	236,558
1905	990,000	44,959	1,034,959	171	341,643
1912	227,861	59,777	287,638	192	533,386

<1>장병수는 군인, 군속의 총계임.

<2>*은 추정수치.

<3>후생성 귀환(引揚)원호국 조사통계.

위의 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1870년대 이후 일본의 군대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청일, 러일 전쟁 시기에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메이지 정부는 1868년에서 1877년까지 10년간 평균 국가예산(일반회계)의 15.9%를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고 1883년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는 1894년까지는 평균 국가예산의 25%내외를 군사비로 지출하면서 군비

1)大山樺, 『山縣有朋意見書』 p.43-45쪽.

2) 内閣官房 『内閣制度七十年史』(内閣官房, 1955) p.565. 본고에서는 山田朗 『軍備擴張の近代史』(吉川弘文館, 1997), p.9에서 발췌 제인용.

증강에 힘을 쏟아 부었다.³⁾ 또 육군의 경우에는 건군 초기 연대(聯隊)를 중심으로 하던 기간 병제가 1888년 프랑스식에서 독일(=프로이센)식으로 바뀌면서 종래의 6개 진대가 폐지되고 기본 보병연대의 상급기관으로서 사단을 편성하여 근위사단과 제1사단에서 제6사단까지 7개 사단이 설치되었고, 사단은 하나의 전략단위로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7개 사단이 청일전쟁에 돌입할 당시의 육군 병력의 근간이었다.

본고에서는 청일전쟁기의 일본과 조선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당시 일본의 정치 지도자 이토 히로부미가 이끌고 있던 제2차 이토내각 당시의 일본의 대조선 외교와 군사라는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배경설명을 위해 제2차 이토내각기의 일본국내정치의 흐름에 대해 개관해 보겠다.

2. 제2차 伊藤博文내각(1892.8~1896.7:元勳내각)의 정치와 군사

1891년 7월 제1차 마쓰가타 내각의 총사직에서 제2차 이토내각의 성립까지는 1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난항을 겪게 되는데 이는 이토의 고도의 정치적 술수에 의한 것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민당이 지배하는 의회와의 대립관계도 힘든 정치 상황에서 정당의 존재 가치를 둘러싸고 야마가타 등 원로 간에 확립(確執)이 생기고 있는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자기와 대립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각 원로들을 형식적이라도 통합하여 공동책임제를 취할 구상을 시도하였다.⁴⁾ 이러한 정치적 시도가 성공하여 이른바 ‘원로(元勳)내각’이 성립되게 되었다.

제2차 이토내각의 각료 구성을 보면 대신 10명중에 이토, 야마가타, 구로다, 이노우에, 오오야마(大山巖) 등의 원로를 비롯하여 고토 쇼지로는 메이지유신의 공로자였고, 특히 야마가타, 구로다는 이미 수상을 역임한 거물들이었다. 또 고토는 1873년 정한논쟁에서 패해 정부를 떠난 이후 도사(土佐)민권파의 리더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민당의 대표적 정객이었다. 이토는 전임 수상들을 각료로 끌어들이고 반대파의 리더까지 내각에 들어오게 하여 정치 위기국면을 수습하겠다는 복안을, 적어도 각료 인선과정에서는 성공시켰고 일본 정국의 1인자로서 내외에 자기의 위신을 내세울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사가 외무대신으로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⁵⁾을 기용했다는 점이다. 실로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과정에서 일본정부 내에서 개진론으로 이끌고 갔던 실질적인 주체가 무츠 외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외 강경과 무츠의

3) 山田(1997), pp.9-10, 참조.

4) 小松緑 (1976) , pp.65-67 참조.

5)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1844-97)는 화카야마(和歌山)출신의 메이지 시대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서 근대 일본의 대외 강경외교를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메이지 신정부의 원로원 의관으로 근무 중 번벌정부 전복 음모에 가담하여 국사범으로 5년간 옥중 생활을 보낸 경력이 있을 정도로 강경한 측면도 있지만 노회한 외교술을 타고난 인물이기도 했다. 미국공사 시절에는 일본이 최초로 체결한 대등조약인 알렉시코 조약 체결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1890년대 한 조, 중, 일 동아시아 삼국 관계를 회고한 그의 저서 『蹇蹇錄』은 청일전쟁기의 동아시아삼국관계를 증언하는 일본 측의 주요 외교사 자료로서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외상 기용은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청국간의 풍운을 예고하는 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토 수상은 반정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던 민당과의 화해를 모색하였다. 이토가 담당해야 할 제4회 의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을 비롯한 민당계열이 167석이어서 총원 300석의 중의원의 과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토는 마츠가타내각 당시 적극적인 선거 간섭을 행했던 현지사(縣知事), 군장(郡長)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민당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였다.⁶⁾ 그리고 이러한 이토의 정당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정부와 투쟁만으로는 지주들의 농촌 부루조아지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유당의 지도자 호시 토오루(星亨)는 개인적으로는 무츠 외상과의 친분도 있었지만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당에게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른바 자유당 도사파(土佐派)와 무츠 외상의 인맥을 이용해 이토 내각은 중의원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였다.⁷⁾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1885~87년의 거문도 사건 이후 동아시아, 즉 조선을 둘러싼 국제환경에서 구미열강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국과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국방정책의 대강에 열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2차 이토 내각에서도 야마가타 내각 이래로의 급속한 군비증강 정책을 취할 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일본 해군의 함정 총톤수가 중국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토 정부로 하여금 해군군비 확장을 위한 거액의 군함제조비 예산을 제4회 회에 청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의원은 이미 제2, 제3회에서도 군함 건조비 예산을 부결한 바 있고 민당의 정책 슬로건인 ‘정비절감(政費節減)에 대한 정부 특히 이토 수상의 이해는 너무나 빈약하였다. 이러한 강경한 군비확장 예산 요구는 이토내각과 자유당의 호시(星)와의 관계도 악화시켰고, 중의원 예산위원장 코오노 히로나카(河野廣中)는 정부방침에 강경한 대응을 보이게 된다. 건함예산도 2척 이외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 정부의 전체 예산안 중 11%에 해당하는 900만 엔을 삭감하였다. 이토 수상은 “의회의 금년도(終局)도 도저히 종전과 다름이 없다”며 “중의원의 사정안은 단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분노하였다.⁸⁾

이토 내각의 일방적인 강경 주장에 대해 중의원은 오히려 해가 바뀌어 1903년 1월 23일,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징적 행위였지만, 내각탄핵상주안을 상정하였다. 이토 수상이 의회를 15일간 정회시켰지만, 2월 7일 속개된 중의원에서는 181대 103으로 내각탄핵상주안을 가결 시켜 버렸다. 이토 내각은 의회와의 극한 대립으로 의회를 해산하든가 내각이 총사직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초대 내각 수상 역임이후 근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수상이라는 권력을 이토는 내

6) 衆議院參議院編, 『議會制度七十年史 政黨會派論』(1961), p.272 참조.

7) 山本四郎, 『日本政黨史』上, (1979), p.94 이하 참조.

8) 春杓公追頌會, (1940), 中卷, p.874 이하 참조.

어놓고 싶지 않았다. 1881년 일본정치의 권력 핵심으로 등장한 이토 이토는 한 번도 권좌에서 물러난 적이 없었다. 초대 수상을 그만둘 때도 추밀원 의장으로 자리를 옮기든 등 항상 권좌를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 이때 이토가 택한 방법이 천황의 칙령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메이지천황은 이토의 종용에 따라 앞으로 6년간 천황의 내탕금에서 매년 30만원씩 낼 터이니 문무관은 각각 봉급의 10%를 6년간 헌납하여 건함건조비용으로 쓰고, 의회는 정부와 타협하여 천황을 잘 보필하라는 칙령을 내렸다.⁹⁾ 이토는 천황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고 하는 정치적 술수를 부린 것이었다.

천황의 칙령이 나온 이상 의회도 계속해서 이토 내각을 강경하게 공격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전체적으로 약 200만 엔의 예산 삭감으로 예산안은 가결되었고 현안 과제였던 건함예산도 통과되었다. 청일전쟁 발생 16개월 전의 일이었다. 이렇게 건조된 해군 함정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천황을 정쟁(政爭)에 이용한 행위는 헌법 운용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초법적인 존재여야 할 천황이 정쟁의 와중에 내각에게 이용당하게 됨으로써 천황의 위상을 격하시켰다는 분노가 야마가타를 비롯한 우익 강경파들이 이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제2차 이토 내각의 외무대신으로 취임하였던 무츠 무네미츠는 심복인 외무대신 비서관 다나카 다카요시(田中敬義)와 외무성 고문인 미국인 데니슨 등에게 불평등조약 전면 개정 초안을 마련하게 하고 1903년 7월부터 영국, 독일, 미국 등과 개별 교섭에 들어갔다. 현지 주재 일본 공사가 교섭의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현지에서는 이미 외무대신을 경험했던 아오키 슈조 독일주재 공사가 교섭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아오키 공사는 우선 영국과 교섭할 것을 주장하였고 동년 12월 런던에서 본격적인 조약개정 교섭에 들어갔다. 조약개정 교섭의 핵심은 먼저 치외법권(=영사재판권) 철폐에 역점이 두어졌는데 일본 정부방침은 일본 내지통상권(=이른바 내지잡거(内地雜居))을 허용하여 일본 전국을 개방하는 대가로 치외법권을 철폐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년 12월 8일에 소집된 제5의회에서 이토와 타협을 피하던 자유당의 호시 토오루 중의원 의장이 의원들의 탄핵을 받아 결국 12월 13일 의원제명처분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의회내 대외강경파(對外強硬派)(이하 대외경파로 약칭함) 세력과 이토 내각이 대립의 각을 세우게 되었다.¹⁰⁾ 더구나 대외경파 세력은 12월 8일 갑자기 조약개정교섭과 관련하여 현행 조약대로 일본 국내 외국인의 거주지를 개항장 내 거주지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외국인 단속을 실시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였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지잡거’에 근거한 조약개정교섭에 찬물을 뿌리는 행동이었다. 이토는 결국 대외경파의 온상인 대일본협

9) 春杓公追頌會,(1940) ,中卷, p.882 이하 참조.

10) 林茂、辻清明編集(1981), pp.212-13 참조.

회를 해산시키고 12월 30일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이토의 갑작스러운 의회 해산은 조약개정교섭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무츠 외상의 강경한 주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전혀 해산의 이유도 없는 갑작스러운 해산이었기에 파급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공식적인 이유 없는 중의원 해산에 대해 귀족원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반 이토 내각의 정치적 기류가 점차 강하게 형성되고 있었다.¹¹⁾

이듬해인 1904년 3월 총선거에서 이토 내각에 협조적인 자유당이 119석을 얻어 제1당의 위치를 차지했지만 입헌개진당, 입헌혁신당을 비롯한 대외경과 6개 파의 의석수가 130석에 이르러 정부와의 대립은 여전히 상존하게 되었다. 5월 15일 중의원이 개회되자마자 곧바로 내각탄핵상주안이 제출되었다. 그 이유로는 정부의 의회 부당해산, 대외 연약외교, 의회를 경시하는 것, 이토가 천황의 조칙을 이용한 것 등의 항목을 지적하고 있다. 이 탄핵 상주안은 불과 5표차이로 부결되었지만 다시 수정된 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되었다. 더구나 대외경과가 주동이 되어 제4의회에서 이토 정부가 약속했던 행정정리 약속의 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상주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탄핵상주안의 내용을 포함시켜 5월 31일 153표 대 139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상주되었다.¹²⁾

이토 수상은 다시 중의원을 해산시켰다. 이른바 이토내각은 의회와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으로 국내 정치에 있어서 위기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토 수상과 무츠 외상은 현안 최대의 과제로서 그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영국과의 불평등조약개정교섭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를 연속으로 해산시키더라도 조약 개정교섭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적 정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던 이토 내각이 국민의 여론을 대외관계로 돌릴 호재가 발생하였다. 1894년 6월 1일 조선정부는 동학농민봉기를 진압할 목적으로 청국에게 군대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는 즉시 각의를 열어 무츠 외상의 주장에 의해 조선에 혼성 1개 여단을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그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무츠 외상은 해군의 협조를 얻어 6월 5일 일시 귀국 중이었던 오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 조선주재공사에게 해군 육전대 400여명과 전함9척을 붙여서 조선으로 파견하였다.¹³⁾

6월 7일에는 천진조약의 행문지조(行文知照) 조항에 의해 일본주재 청국공사 왕

11) 齊藤熊藏, 『日本政黨發達史』(1917), p.289 이하 참조.

12) 林茂, 辻清明編集(1981), pp.215-216 참조.

13) 그리고 결국 청일전쟁 개전으로 끌고 간 주역은 가와카미 육군 참모차장과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외무대신이였다. 특히 개전 과정에서 청국군대가 조선에 파견되었으니 천진조약의 ‘행문지조’조항에서 명시했듯이 일본도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하는 무츠 외상의 주장을 이토가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이토는 청국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선뜻 파병안에 동의하지 않으려 하였고 결국은 청국 파견 군대와 숫자가 비슷한 2000여명으로 구성된 1개 여단만을 파견하는 데 겨우 동의하였다. 그러나 가와카미 참모차장이 파견한 1개 여단의 숫자는 혼성여단으로 구성된 7000여명이였다. 이토는 매우 노하였다. 그러나 이토에게 호출당한 가와카미 참모차장은 태연하게 맞받아쳤다. 일개 여단의 평시 편제는 2000여명이지만 전시편제는 7000여명이라고. 전게서 陸奥宗光,(1983), 제2장 ‘조선을 향한 일청양군대의 파견’ 및 제3장 ‘오오토리공사의 귀임’ 31-47쪽; 上垣外憲一, 『暗殺伊藤博文』(筑摩新書, 2000) 참조.

봉조(汪鳳藻)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무츠 외상은 청국 정부에 대해서

“첫째, 청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속방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우리(일본)정부는 일찍이 조선을 청국의 속방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또 이번 우리 정부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제물포조약 상의 권리에 의한 것이지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친진조약에 비추어 행문지조(行文知照)하는 것뿐이며, 우리정부가 행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는 것으로써 (일본)군대의 많고 적음과 진퇴동지(進退動止)에 관해서는 추호도 청국 정부의 견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는 논리를 펴고 있다.¹⁴⁾

이어서 이토 수상은 6월 14일, 15일의 연속 각의에서 이토 수상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로서 대조선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조선의 내란은 일청양국의 군대가 공동으로 이를 재빨리 진압할 것.

둘째, 내란이 평정된 후에는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기 위해 일청 양국에서 상설 위원 약간 명을 동국(=조선)에 파견할 것”

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이토가 어디까지나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청일간의 무력 분쟁 없이 조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무츠 외상이 문제 제기를 하였다.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이유였다. 이로써 무츠 외상의 의견에 의해 추가된 조항이

“셋째, 만약 청국이 우리 제안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나라(일본)는 독자적인 힘에 의해 (조선의) 내란 진압 및 내정개혁의 실행에 임할 것”

이라는 정책이 추가되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¹⁵⁾

당시 이토 수상은 일본 최대의 현안 과제인 영국과의 조약개정교섭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를 주도하는 무츠 외상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

14) 일본은 청국과 1884년 갑신정변 직후 조선에서 양국군대를 철수 시키고, 향후 청국이나 일본 양국 중에 조선에 자국의 병력을 파견할 경우에는 서로 “行文知照”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미 일본과 조선은 1882년 임오군란 선후 조치로 체결된 제물포조약에서 일본공사관과 거류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의 兵員’을 서울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친진조약 체결 당시 제물포조약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국제법적인 조약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병원’이란 엄밀한 의미에서는 ‘1개 대대’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일본은 무려 진시 편제 혼성1개여단 7000여명을 선발대로 파견하면서 제물포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니 청국은 간섭하지 말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원문은 陸奥宗光,(1983), pp.38-39쪽 참조.

15) 小松緑 (1976) , pp.98-99쪽 ; 林茂、辻清明編集(1981), pp.216-217쪽 참조.

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무츠는 외교면에서의 당면 목표를 서구열강과 대등한 ‘일등국가’일본을 상정하고 있었고 대외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무츠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조선에서의 내란을 진압한 후 조선 내정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점, 그리고 청국 정부에게 공동으로 내정개혁에 임할 것을 제안하겠지만, 청국이 거절하더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내정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결정은 결국 청국과의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최고 정책결정이었고 이로 인해 외무성과 군부 강경파의 정책 유도과정이 1894년 7월의 청일전쟁 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전쟁 개전에 미온적인 이토 수상이 아니라 무츠 외상과 가와가미 육군 참모차장이었던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조선으로의 군대 파견 이후 육일승천하는 일본 국내의 전쟁 열기를 제어할 수 없게 된 이토는 의회에서 탄핵당하는 등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국내 정치적 위기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전에 동의하였고 이로 인해 청일전쟁의 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 청일전쟁과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략과 정략

18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일본은 이전부터의 군비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에서 조선을 ‘이익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지도자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특징이 나타나면서 조선은 독립유지가 불가능한 국가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¹⁶⁾ 한편 일본 초기의회에서의 정부와 민당(民黨)의 대립은 국가통합이라는 일본 국내 정치 과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시기인 1894년에 발생한 갑오농민봉기는 일본이 내정의 위기상황을 대외전쟁을 통해 극복하려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한 셈이 되었다. 여하튼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청국의 세력을 조선에서 구축하고 조선 내정개혁을 통해 조선을 일본이 단독으로 보호국화하는 정책을 확정짓게 되고 이것이 청일전쟁으로 분출되어 나왔던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일본의 조선 내정개혁 정책은 조선의 반발과 삼국간섭으로 인한 러시아의 개입 등으로 인해 그 실효를 바로 거두지는 못하고 다시 러일간의 대립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16) 유명한 주권선과 이익선의 논리는 1890년 3월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의견서인 「외교정략론」에서 주장된 것인데, 이는 1888년 야마가타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로렌츠 폰 슈타인 빈 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의 “주권강역(主權疆域)”과 “이익강역(利益疆域)”을 강조했던 ‘국방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슈타인은 메이지헌법 기초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영향을 미쳤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슈타인은 서구 열강의 조선의 중립 보장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지만 조선이 타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간다면 일본에게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논리는 당시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대조선 정책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그 후의 경과에서도 잘 알 수 있다.(加藤陽子 『戰爭の日本近現代史』, 講談社, 2002年, 81-97쪽 참조)

1) 청일전쟁을 보는 시각

청일전쟁과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¹⁷⁾ 경향을 참조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편제와 역할의 특징 및 전쟁의 발발에서 전후에 이르는 시기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의 청일전쟁관의 변화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일본 부르조아지의 조선 시장 획득 요구를 과대평가했던 고전적 관점(田中康夫, 幼方直吉)에서부터 개전 당시 군부와 외무성의 ‘이중 외교’가 행해졌다는 지적(信夫清三郎)이 전전의 주요한 연구 경향이었고, 전후가 되면서 청일전쟁은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이 주류를 형성하였다(服部之總, 井上清). 또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중국과 조선을 시야에 넣고 전쟁을 보는 관점(山邊健太郎)이 제시되었으며 일본의 조선 침략 연구가 청일전쟁 연구에 필수적인 흐름이 되었다. 더불어 청일전쟁을 메이지초기 이래의 대 중국, 조선 정책의 결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연구(中村明)가 나왔고 새로이 조선 지배를 둘러싼 중일간의 전쟁, 조선과 청국을 분할하기 위한 일본과 열강간의 항쟁, 점령지 민중의 항일투쟁과 그에 대한 억압이라는 중층적이 구조분석이 제시되었다(藤村道生). 또 청일전쟁을 조선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계통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나와 있고(朴宗根), 『일본외교문서』의 공간과 주요 자료인 청일전쟁기의 외상이었던 무츠(陸奥) 『陸奥宗光關係文書』 및 회고록인 『蹇蹇錄』 등의 자료에 의해서 청일전쟁의 다양한 모습이 더욱 체계적으로 밝혀지고

17) 청일전쟁 및 일본과 조선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전(戰前), 전후(戰後)로 나누어 볼 때 그 접근 방법에 다양한 차이점이 노정되는데, 어느 정도 학문 연구의 제약에서 벗어난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가 지적될 수 있다. 먼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近代日韓關係の研究』(朝鮮總督府中樞院, 1940年)는 전전의 연구에서도 사료 구사와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한 예외적인 연구로서 일선 양국 및 중국 서구까지도 시야에 넣었던 관계사적 연구였고 전후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후가 되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강조했던 외교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던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 『日韓併合小史』(岩波書店, 1966年), 同 『日本の韓國併合』(太平出版社, 1966年)가 있다. 이 연구는 종래와는 달리 조선 침략에 대한 성격 규정과 조선 침략의 요인에 대하여 경제적 요인을 강조했던 연구에 비판을 가하면서 정치 군사적인 요인으로 설명을 시도한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日清戰爭の研究』(青木書店, 1968年)로 계승되면서 전후 연구의 통설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오오에 세이이치부로(信夫清三郎) 『日清戰爭』(福田書房,), 同 『陸奥外交』(叢文閣,), 同 『増補日清戰爭』(南窓社, 1970年)에서는 조선 침략에 대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었다는 점 그리고 민당(民黨)의 조선침략론도 정부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清關係研究』(槁書房, 1969年)와 야마베(山邊)의 논쟁에서는 조선의 개화파와 일본의 현지 관헌이 상호간에 정변을 획책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 후 후지무라 미치오(藤村道生) 『日清戰爭』(岩波書店, 1973年) 및 同 「日清戰爭」(『岩波講座 日本歴史』 16)는 일천전쟁의 성격에 대해 청국의 중주권 배제, 열강에 의한 청한분할, 점령지 민중의 억압 등 ‘세 국면의 중층적 구조’로 파악하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전쟁지도를 강조하였다. 8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연구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 『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87年)는 갑오경장에서 한국병합까지의 한일관계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시기에 들어와 청일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으로 ①일본의 확고한 대한정책의 결여를 강조하는 것, ②일본의 국민적 독립 및 근대국가 형성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③민족적 대립 및 한일전쟁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 나타났는데, ①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다카하시 히데나오(高橋秀直) 『日清戰爭への道』(東京創元社, 1995年)와 오오사와 히로아키(大澤博明) 『明治外交朝鮮永世中立化構想』(『熊本法學』 83)와 檜山幸夫 『日清戰爭開戰期における國內世論と戰爭指導』가 있고 이러한 견해에 비판을 가한 崔碩堯 『日清戰爭への道程』가 있다. 그리고 ③의 입장의 대표적인 선구적 연구로는 朴宗根 『日清戰爭と朝鮮』(青木書店, 1982年)이라는 역작이 나왔다. 또 1994년 일천전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②, ③에 해당되는 대표적 연구로서 比較史・比較歴史研究會編 『黒船と日清戰爭』(未來社, 1996年)과 東アジア近代史研究會編 『日清戰爭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ゆまに書房, 1997年) 등이 있다.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한 사료 발굴을 통해 청일전쟁의 의미와 구조적 분석이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다. 이어서는 청일전쟁 자체에 대한 서술에 대해 검토하겠다.

2) 일본 측 전사(戰史)의 청일전쟁 개전과정 서술에 대한 문제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것은 일본 측의 전사에서는 청일전쟁 개전 과정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일전쟁에 대한 일본 측의 공식적인 전사라고 할 만한 것으로 육군 측에서는 1907년 5월 13일 육군 참모총장(육군대장 오쿠 야스가타 奥保鞏)의 이름으로 메이지 천황에게 봉정된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防衛研究所所藏, 明治37年, 參謀本部)가 있다. 이 책에서는 풍도 앞 해전에 대해서

“.....오전 7시 52분 양(國) 함대 30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이르자 청함 濟遠은 돌연히 우리 요시노(吉野)함을 향하여 發火하여 이로 인해 츠보이(坪井)소장은 제함에 전투를 명령하고 양국 함대 치열한 함포 사격을 교환하였다.....”

라고 청국 함대의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식 戰史로서 해군 군령부 전사인 「秘二十七八年海戰史 卷一 戰記 朝鮮戰役」에서는

“.....7시 52분 3000미터 거리에 이르자 彼我間에 드디어 개전하고 적탄이 누누히 기함 요시노(吉野)의 首尾를 스쳐 해면에 떨어지고.....”

라고 기술되어 있다. 해군 전사에서는 누가 선제공격을 했는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육해군의 공식 전사의 개전 기록이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로 기술이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가 아직은 국제법상으로 선전포고 후 전쟁개시라는 국제 협약이 마련되기 전이었다고는 해도 몇몇하지 못하게 기습 공격으로 선제공격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 측이 그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일전쟁의 최초의 전투 개시는 당시 상비함대 사령관이었던 츠보이 코조(坪井航三) 소장의 선제공격에 의해 개시된 전쟁이었다. 츠보이 소장은 풍도만 해전에 대한 「聯合艦隊出征第二回報告」에서

“.....청함 濟遠 広乙인 것을 확인하고.....전투 준비를 명령하고 또 이어서 적당한 거리에 이르면 발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오전 7시 5분 적함과 서로 접근하기를 3000미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먼저 발포를 개시하였고 적함도 응사하여 상호 발포하기를 약 한 시간 이십분간 (계속되었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¹⁸⁾ 즉 일본군이 선제 기습공격을 가한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전사 기술의 모순은 육군 참모본부의 ‘日清戰史編纂方針’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 방위청에서 발견된 사료 「日清戰爭史第一第二編進達에 관한 部長會議에 한마디 함」(명치36년(1903년)1월 기 참모본부 부장회의록 7월 1일)에 의하면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日清戰史編纂方針’에 대한 주의 사항 8가지가 別紙 형식으로 남아있는데 그 내용 중에 주의 3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三. 改纂戰史에서는 우리 정부(=일본)는 항상 시종일관 평화를 지키려고 하였으나 청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력을 동원해 창과 칼에 피를 묻혀서라도 감히 그 나쁜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여 저들이 먼저 우리에게 抗敵의 행위를 분명히 하여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전쟁이) 발단되었다는 성과를 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한 것)은 애써 이를 생략하고 또 전적으로 작전 및 직접 작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주로 하고.....”¹⁹⁾

즉 전투 개시의 책임을 청국 측에 뒤집어씌우는 방식으로 전사를 기술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사개찬의 의도는 일본의 기습 선제공격을 왜곡시킴으로서 당시까지는 국제법상의 불법은 아니었다고 해도 비겁한 관행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선전포고 이전의 전투행위에 대해 호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 측 공식 전사인 ‘일청전쟁전사’에서 반영이 되었고 이어서 ‘일러전쟁전사’에서도 원용이 되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의 공식 전사를 이용할 경우는 충분히 사실관계와의 일치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특징이라고 하겠다.

3) 청일전쟁과 조선에서의 일본군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일본 측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선전포고²⁰⁾가 행해진 것은 1894년 8월 1일이지만 해상에서는 7월 25일의 풍도 앞 바다에서의 해전에서 그리

18) 「明治二十七八年戰史編纂準備書類 第十一」(防衛研究所所藏), 및 五十風憲一郎「日清戰爭開戰前後の帝國陸海軍の情勢判斷と情報活動」(『戰史研究年報』第4號, 防衛研究所, 2001.3), 17-33쪽 참조.

19) 이 사료는 參謀本部編「明治35年5月起 部長會議錄」(防衛廳防衛研究所 所藏)철 중에 「明治36年1月起 參謀本部 部長會議錄」의 7월 1일 회의록 별지로서 수록 편철되어 있는 것이다.

20) 청일전쟁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이 대외적으로 수행한 최초로 공식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근대 일본은 구미열강과의 조약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만국공법=국제법’의 범주를 지키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이 대외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선전포고에 앞서 기습적 선제공격을 가하면서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는데 그 시초가 청일전쟁의 발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는 1894년 8월 1일이지만 실제 전투행위는 이미 7월 23일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선전포고 이후에 전투행위에 돌입해야 한다고 국제법에서 지정한 것은 헤이그에서 개최된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陸戰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고 나서이다. 그러나 기습 선제공격이 비겁하다는 인식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일본의 전사개찬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전례가 1905년 러일전쟁에서도 이어지고 1941년 12월 미국 진주만 기습과 말레이 싱가포르 반도 침공 작전에서도 선전포고 이전에 기습공격을 단행하는 등 국제법 준수보다는 전쟁에서의 기습선제공격에 의한 유리한 전쟁 전개라는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

고 육상에서는 7월 29의 성환 전투에서 전쟁이 발발된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박종근의 연구²¹⁾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국제법상으로 볼 때 조선에서의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23일 조선왕궁을 군사력으로 강제 점령하고 대원군을 집정으로 한 괴뢰 정권을 수립한 후, 고종에게 ‘조선의 자주를 침범한 청국군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쓰게 만든 것 자체가 이미 조선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일본은 8월 26일 조선과 사이에 군사동맹을 강제하여 조선을 일방적으로 전쟁에 끌어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군사동맹이 강제인 것 외에도 엄밀하게 논하자면 7월 23일에서 8월 26일 조일군사동맹의 체결까지의 조선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행동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루어 졌는가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은 될 수가 없다. 군사동맹조약의 강제를 차치해 놓더라도, 요컨대 7월에서 8월에 이르는 조선에서의 일본군의 군사 행동은 국제법상으로 논하더라도 불법이자 강제로 행해진 침략 행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던 점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 1894년 7월 청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조선에서는 일본군 ‘수비대’가 부활하게 되었다. 이들의 부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①일본인 거류민의 보호, ②병참경비, ③군용전신의 수비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경성²²⁾지구수비대, 인천병참경비대, 낙동전선경비대가 설치되었다. 이들 수비대는 1896년 5월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1895년 4월 17일에 청일전쟁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의 성립으로 이미 존재 이유와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존재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사례는 유독 조선과의 관계에서 이후에도 계속 자행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금후 보다 엄밀한 국제법적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로 청일전쟁기에 조선에 존재했던 주둔군의 성격을 지니는 일본군을 보면 다음과 같다.

21) 朴宗根 『日清戰爭と朝鮮』(青木書店, 1982年), 第2章「日本軍の王宮占領と日清開戦」, 및 第3章「開戦後の日本の對朝鮮政策」 참조.

22) 京城이란 지명은 일본이 1910년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기 시작한 서울에 대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대 일본에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조선의 수도 서울(=漢城, 漢陽)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료나 서적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884년의 갑신정변을 京城事變이라거나 1885년의 漢城條約을 京城條約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吉川弘文館編『國史大辭典』, 1985年 참조) 하지만 고유한 지명은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사료상의 명칭이므로 그대로 명기하도록 하겠다.

<표2> 청일전쟁기(1894-5년)의 조선주둔 일본군의 존재 형태²³⁾

釜山守備隊	1894년 6월부터 歩兵第二十一連隊 第八中隊가 담당. 뒤에 洛東電線警備隊로 불림. 같은 해 10월6일 後備歩兵第十連隊 第四中隊로 교대. 1896년 2월까지 존속함.
仁川兵站守備隊	同年 6월부터 歩兵第二十一連隊 第十一中隊, 騎兵七騎가 담당. 8월 중순에 歩兵第二十二連隊 第五中隊와 교대. 同年 10월6일, 後備歩兵第六連隊 第六中隊와 교대함. 日清戰爭後 解体.
靑山兵站守備隊	同年 6월부터 歩兵第十一連隊 第三中隊, 騎兵五騎가 담당. 8월 중순에 歩兵第十二連隊 第十二中隊와 교대. 10월4일부터 인천을 포함해 後備歩兵第六連隊 第六中隊가 담당. 日清戰爭後 解体.
京城守備隊	同年 6월부터 歩兵第十一連隊 第一大隊 (第三中隊欠) 및 騎兵五騎가 배치. 同年 8월부터 歩兵第二十二連隊 第二大隊 (第五中隊欠) 와 교대. 同年 10월6일부터 同二十二連隊 第七中隊만 남겨 두었고, 11월 초순에 後備歩兵第十八大隊가 교대하였다.
臨津鎮獨立支隊	보병 少佐 야마구치 케이조(山口圭藏)가 지휘하는 歩兵第二十一連隊 第二大隊 (第七,八中隊欠) 및 同 第二中隊 騎兵一小隊, 砲兵第五中隊 (一小隊欠), 工兵一小隊가 배치.
元山守備隊	1894년 9월 25일부터 새로이 後備歩兵第六連隊 第二中隊가 배치됨.

전술한 대로 이상의 일본군수비대는 청일전쟁 출병군의 병참확보, 경비가 그 주류목적이었는데, 경성, 부산, 원산 이외에는 출병군 철병 후에 해체되었다. 나머지 수비대는 1896년 5월에 주둔 형식이 주차군으로 바뀔 때까지 주류하였다. 그 목적은 공사관 및 거류민 보호로 되어 있으나 그 후 항일동학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민비시해사건 등의 조선침략 행위에도 관여하고 있다²⁴⁾.

4) 청일전쟁기 일본의 대조선 군략²⁵⁾과 정략에 대한 검토

근대 일본 군대의 성격은 1880년대에 들어와 점차 외정군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데 1880년 11월에 당시 참모본부장에 취임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県有朋)가 메이지 천황에게 제출했던 「進隣邦兵備略表」에서 ‘隣邦’이라고 불리던 대상은 중국이었으면 일본의 진짜 이웃나라인 조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당시 일본 육군에게 있어서 인접국가인 조선은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다고 하겠다. 이것은 즉 조일관계에 대해 일본은 당시의 ‘만국공법=국제법’적 관계에 근거해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던 조선을 일본과 대등한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일본 육군의 전략 속에서 조선은 대 러시아, 대 청국 정책 속에 포함된 단지 지정학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고 보는 판단이다.²⁶⁾ 1880년대까지 야마가타(山県)는

23) 『朝鮮駐劄軍歴史』(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別冊, 巖南堂書店, 1964年, 以下『朝鮮駐劄軍歴史』고 略称함) 12~20쪽에서 작성.

24) 前掲, 林鍾国 『日本軍の朝鮮侵略史』 1, 70~80쪽 참조.

25) 주 1) 참조.

조선을 가상적국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단지 한국을 일본 군대의 활동의 장소, 전쟁터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군사적 전략을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군은 1882년의 임오군란이 계기가 되어 ‘외정’을 고려한 군대를 거듭나기 위해 본격적인 군비확장에 착수하였고 1884년 갑신정변의 발생과 수습을 둘러싸고 발생한 중일간의 대립은 당시의 군부의 군략과 대 조선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1890년 야마가타의 유명한 ‘주권선과 이익선’ 주장이 나올 때까지도 일본 군부에게는 청국 타도가 주요 전략목표였고 조선은 이에 종속하는 전략, 즉 청국의 타도를 통한 조선의 단독 보호국화라는 목표의 대상물에 불과했다는 견해이다.²⁷⁾

이상의 견해를 정리하면 청일전쟁기 일본의 대조선 군략과 전략은 먼저 일본군부 특히 육군은 조선을 ‘독립’이란 명분아래서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조선에서 청국을 배제하는 것에 우선 목표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1882년 경부터 일본 육해군은 외정을 강조하는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 , 청일전쟁에 돌입하는 시기까지 야마가타가 주도하던 일본 군부의 조선에 대한 군략은 일본 정부의 전략에 종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즉 청일전쟁 기간 중에 조선의 내정개혁에 일본의 군부가 발언권을 행사한 것은 육로를 통한 조선에서의 병참 수송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을 따름이었고 독자적이거나 구체적인 군부의 대 조선 전략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고 본다. 또 청일전쟁은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 등이 전략을 주도하면서 군략을 억제하고 있었고 군부 내부에서도 육군의 야마가타나 해군의 사이고(西郷從道) 등 정치적 역량과 경험 감각을 가진 원로급이 군부 내 강경파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일전쟁 후의 삼국간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의 미숙함과 조선 내정개혁의 좌절은 일본 정부 내의 이토와 이노우에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서서히 군부는 독자적인 대 조선 전략을 확립하면서 조선 정책에 대한 입지를 확대해 나갔지만 이 역시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확립되었고 그것도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통감을 사임한 이후에야 일본 군부의 대조선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현되어 한국병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²⁸⁾

이러한 견해는 청일전쟁기 일본에서의 군략과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잘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또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이토 등의 원로가 주도권을 장악한 전쟁지도라는 정군(政軍)관계의 특징도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해는 관련 사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시 일본 군부의 대 조선 군략이나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다만 존재했던 것은 전적으로 청국에

26) 大江志乃夫 『日本の參謀本部』(中公新書, 1985년), 37-38쪽 참조.

27)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 「청일전쟁중 일본군부의 대한전략」(『청일전쟁의 재조명』,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년), 178-180쪽 참조.

28) 모리야마, 앞의 글, 206-208쪽 참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조선은 단지 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러나 일본 군부의 구체적인 대 조선 군략과 정략이 없었다는 논리만이 강조된다고 한다면 다시 근본적인 논리 문제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즉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쟁 발발의 원인도 없고, 일본에 의한 조선의 단독보호권 확보라는 전쟁목적 달성을 위한 고려나 수단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에서의 갑오농민봉기의 발생과 청국의 군대 파견에서 비롯된 상대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전쟁이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일까? 또 일본이 정말 조선에 대한 정략의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독자적인 군략이 없었던 관계로 이토 등의 정략에 존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즉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대외정책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일본군이 외정군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조선에서 발생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었다는 점이다. 왜 이 시기에 일본군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갑신정변 직후 선후 처리를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던 전권대사인 이노우에 가오루는 조선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츠마(薩摩)의 군벌의 대표인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의 지지를 얻어 청국과의 局地戰까지도 고려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우려하여 청국을 능가하는 군비확장이 끝날 때까지 개전을 보류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이 이시기에도 조선을 일본의 단독 보호하에 두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²⁹⁾

둘째, 1884년 이래 일본군의 군비증강의 실행의 최소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확보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에서의 청의 종주권 강화가 행해졌던 과정에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대 조선 불간섭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군비 확장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영국에 의한 거문도 점거 사건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고, 일본으로서는 청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조선이 분할되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대외정책의 위기감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정책 목표의 당면의 실천과정은, 군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필요하다면 조선에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청국 세력을 배제하는 것이었고, 일본 군부가 당면의 군략으로 청국을 주요 초점으로 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귀속된다.

조선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군략의 확정이 우선이 아니라 ‘조선에서 청을 배제하는 것 = 조선의 점령’을 의미한다는 군략의 확정이 주요했다는 점이 당면한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논리로

29) 崔碩堯『日清戰爭への道程』에서의 검토를 참조할 것. 모리야마는 최석완의 연구 성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해석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조선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1880년대 이래로 반드시 일본의 영향권 하에 확보해야 할 대상이었던 만큼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핵심을 이루는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셋째, 일본은 메이지정부 수립 이래 막부 말기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체제에서의 탈피라는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구미 열강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본의 국가 위상 강화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근린 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그 중에서도 조선의 확보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으로부터 청국을 배제시키는 것이 그 1차 목표였다는 것이다. 또 충분한 전쟁준비를 거쳐 만약 청국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청국까지도 일본보다 하류국가로 밀어낼 수가 있고, 나아가 결과적으로 구미 열강과 유사하게 청국 내 이권 확보(=중국분할)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결과론적 낙관론도 군비확장의 이유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청일전쟁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조 속에서 조선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일본 학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근대 일본의 대륙정책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경향에서 조선이라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세기말 이래의 근대국가 일본의 역사 전개과정에 있어서 조선을 배제시키거나 혹은 그 비중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근대 일본의 역사 전개과정 자체에 대한 사실 인식에 중대한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4. 결론에 대신하여-청일전쟁 宣戰詔書 草案에 대하여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 주도했던 청일전쟁은 근대 일본의 최초의 공식적인 대외전쟁이었고 따라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청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행하였다. 1894년 8월 1일자로 작성된 선전의 조칙³¹⁾에는 “짐은 이에 청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노라. 짐의 百僚有司는 짐의 뜻을 잘 체현하여 육상에서 해면에서 청국에 대하여 교전함에 따라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청일전쟁 선전조서의 초안³²⁾이 2005년에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

30) 모리아마(森山)의 견해는 그가 의거하고 있는 오오에(大江)의 군사사적 연구 업적을 약간 오독하여 조선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오오에(大江)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1880년 당시 야마가타를 비롯한 일본군부의 대외정책의 최중요 관심사는 러시아의 동방정책이었다. 즉 러시아가 일본의 가상적국이었고, 청국은 ‘隣邦’이었으며 조선은 ‘일본의 군사적 대항국가 사이에 끼어있어 정복의 대상에 불과’하였다는 견해이다. 또 정복국으로서 188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군부가 상정했던 대상은 러시아였고, 청일전쟁 발발을 전후해서는 청국 혹은 일본, 청일전쟁 후에는 러시아 혹은 일본이라는 구도로 시기에 따라 변화했지만 조선이 정복대상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의 책 大江志乃夫 『日本の參謀本部』(中公新書, 1985년), 37-38쪽 참조.

31) 『公文類聚, 第18編, 明治27年』, 제1권(아시아역사자료센터, A01200759500).

32) 『한겨레21』, 제573호, 2005. 08. 18 참조. 선전포고 초안은 일본공산당 참의원을 역임했던 요시오카 요시노

伊藤巳代治家文書一日清戦争宣戦詔勅草案」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수상이었던 이토가 그의 측근이었던 이토 미요지에게 지시하여 초안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전부 6개의 초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현상은 제1안~제6안의 초안 중에 선전포고 대상국가가 제1안, 제2안에는 ‘청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3안과 제4안에는 ‘청국 및 조선’이 선전포고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5안에는 ‘청국 및 조선’이라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조선’에 밑줄을 긋고 지운 흔적이 있다. 마지막 제6안은 ‘청국’만이 선전포고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공식 선전포고문에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청국’만을 선전포고 대상국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초안의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 문서를 발굴했던 요시오카 요시노리 전 참의원은 원래 일본은 청국과 조선 양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제5안에서 ‘조선’이 삭제되게 된 것은 1894년 7월 23일 조선왕궁점령사건이 무사히 ‘성공’을 거두고 대원군을 내세운 친일정권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³³⁾

그러나 요시오카씨의 해석에 전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 초안에는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5안에 경북궁점령사건 직후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불확실하다. 7월말에 이미 실제로 선전포고 없이 교전행위에 돌입했던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두고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초안 작성과정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 이 초안에만 근거하여 새로운 해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킬 당시 조선이 청국과 동맹을 맺고 일본에 적대행위를 할 경우를 대비해 조선을 공격해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청국과 조선을 동시에 선전포고 대상으로 상정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불평등조약 체결국가인 조선은 국제법적으로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우세해지자 조선을 삭제하고 청국만을 교전대상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된다.

청일전쟁 선전조서에서 일본은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과연 조선을 어떠한 국가로 생각하고 취급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근대한일관계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리(吉岡吉典)씨가 발굴하여 공개하였다.
33) 주33)참조.

(한글 요약문)

청일전쟁기 伊藤내각의 對朝鮮 군사·외교에 대하여

서민교

1870년대 이후 일본의 군대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청일, 러일 전쟁 시기에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메이지 정부는 1868년에서 1877년까지 10년간 평균 국가예산(일반회계)의 15.9%를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고 1883년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는 1894년까지는 평균 국가예산의 25%내외를 군사비로 지출하면서 군비증강에 힘을 쏟아 부었다. 또 육군의 경우에는 건군 초기 연대(聯隊)를 중심으로 하던 기간 병제가 1888년 프랑스식에서 독일(=프로이센)식으로 바뀌면서 종래의 6개 진대가 폐지되고 기본 보병연대의 상급 기관으로서 사단을 편성하여 근위사단과 제1사단에서 제6사단까지 7개 사단이 설치되었고, 사단은 하나의 전략단위로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7개 사단이 청일전쟁에 돌입할 당시의 육군 병력의 근간이었다.

본고에서는 청일전쟁기의 일본과 조선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당시 일본의 정치 지도자 이토 히로부미가 이끌고 있던 제2차 이토내각 당시의 일본의 대조선 외교와 군사라는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당시 이토 수상은 일본 최대의 현안 과제인 영국과의 조약개정교섭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를 주도하는 무츠 외상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무츠는 외교면에서의 당면 목표를 서구열강과 대등한 '일등국가'일본을 상정하고 있었고 대외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무츠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조선에서의 내란을 진압한 후 조선 내정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점, 그리고 청국 정부에게 공동으로 내정개혁에 임할 것을 제안하겠지만, 청국이 거절하더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내정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결정은 결국 청국과의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최고 정책결정이었고 이로 인해 외무성과 군부 강경파의 정책 유도과정이 1894년 7월의 청일전쟁 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전쟁 개전에 미온적인 이토 수상이 아니라 무츠 외상과 가와가미 육군 참모차장이었던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조선으로의 군대 파견 이후 육일승천하는 일본 국내의 전쟁 열기를 제어할 수 없게 된 이토는 의회에서 탄핵당하는 등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국내 정치적 위기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전에 동의하였고 이로 인해 청일전쟁의 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청일전쟁에 대한 일본 측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선전포고가 행해진 것은 1894년 8월 1일이지만 해상에서는 7월 25일의 풍도 앞 바다에서의 해전에서 그리고 육상에서는 7월 29의 성환 전투에서 전쟁이 발발된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박종근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국제법상으로 볼 때 조선에서의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23일 조선왕궁을 군사력으로 강제 점령하고 대원군을 집정으로 한 괴뢰 정권을 수립한 후, 고종에게 ‘조선의 자주를 침범한 청국군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쓰게 만든 것 자체가 이미 조선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 일본 군대의 성격은 1880년대에 들어와 점차 외정군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데 1880년 11월에 당시 참모본부장에 취임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메이지 천황에게 제출했던 「進隣邦兵備略表」에서 ‘隣邦’이라고 불리던 대상은 중국이었으면 일본의 진짜 이웃나라인 조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당시 일본 육군에게 있어서 인접국가인 조선은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다고 하겠다. 이것은 즉 조일관계에 대해 일본은 당시의 ‘만국공법=국제법’적 관계에 근거해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던 조선을 일본과 대등한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당시 수상이었던 이토가 그의 측근이었던 이토 미요지에게 지시하여 초안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전부 6개의 초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현상은 제1안~제6안의 초안 중에 선전포고 대상국가가 제1안, 제2안에는 ‘청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3안과 제4안에는 ‘청국 및 조선’이 선전포고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5안에는 ‘청국 및 조선’이라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조선’에 밑줄을 긋고 지운 흔적이 있다. 마지막 제6안은 ‘청국’만이 선전포고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공식 선전포고문에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청국’만을 선전포고 대상국가로 하고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킬 당시 조선이 청국과 동맹을 맺고 일본에 적대행위를 할 경우를 대비해 조선을 공격해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청국과 조선을 동시에 선전포고 대상으로 상정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불평등조약 체결국가인 조선은 국제법적으로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우세해지자 조선을 삭제하고 청국만을 교전대상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된다.

(日本語要約文)

日清戦争期における伊藤内閣の對朝鮮軍事・外交について

徐 民教

1870年代以来、日本の軍隊は漸進的に増加されており、特に日清、日露戦争期に急激な増加を見せている。1868年以来、日清戦争が勃発する1894年まで、明治政府は国家予算の16%から25%を軍事費に当てている。

また陸軍の場合、1888年ドイツ式の基幹兵制を受け入れ、既存の歩兵連隊の上級機関として師団を編成し、近衛師団と第一師団から第六師団まで七個師団が設置され、この師団が一つの戦略段位として自由の行動ができる機動性を保持することとなった。この七個師団が日清戦争に突入する際の日本の陸軍兵力の根幹であった。

本稿では、日清戦争期の日本と朝鮮というテーマを中心に、第二次伊藤博文内閣の對朝鮮外交と軍事という側面に焦点を合わせて考察したい。

当時の伊藤首相は日本の最大の懸案であったイギリスとの条約改正交渉に関心を持っており、これを主導する陸奥外相の意見を尊重する態度を取っていた。そして陸奥は外交の面での目標を欧米の列強と対等な「一等国家」日本を想定していて、そのためには対外関係において紛争が発生する場合にはそれに厳重に対処するという強硬な考えの持ち主であった。

従って、陸奥は日本政府の方針として、朝鮮での内乱を鎮圧した後、朝鮮で内政改革を断行するという事、そして清国政府に共同で朝鮮の内政改革に望むことを提案するつもりだけど、清国が拒む場合、日本が独自の朝鮮の内政改革に着手するという決定をするように政策誘導をしたのである。

結局、この決定は清国との武力衝突も辞さぬという日本政府の政策決定になり、これがために外務省と軍部強硬派の政策誘導過程が1894年7月の日清戦争の開戦の道を開くのであった。そして、その過程で最大の影響力を発揮したのは、開戦に消極的な伊藤首相ではなく、陸奥外相と川上陸軍参謀次長であったという事実は見逃せない。

朝鮮への出兵以後、旭日昇天する日本国内の戦争熱を制御できなくなった伊藤首相は、議会で弾劾されるなど、自分に向う政治危機の強い風向きを転換させるためにも、日清開戦に同意せざるを得なかったし、そして日清戦争への道を進む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日清戦争に関する研究では、公式的な宣戦布告は1894年8月1日に行われたが、実際には7月25日の豊島海戦から戦争が勃発したことが通説のようになっている。しかし、朴宗根の研究でも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国際法の観点から朝鮮での軍事行動の正当性を確保するために、7月23日に朝鮮の王宮を軍事力で強制占領し、大院君を執政とする傀儡政権を樹立させ、国王の高宗に「朝鮮の自主を侵した清国軍を追い出す

こと」を日本側に要請する公文書を書かせたこと自体が、すでに朝鮮を相手にした戦争行為に入ったことと見るべきであろう。

近代日本軍隊の性格は、1880年代に入ってだんだん外征軍としての性格が表すようになり、1880年11月に当時の参謀本部長の山方有朋が明治天皇に奉呈した「進隣邦兵備略表」で、「隣邦」の対象は中国であり、すぐ隣りの朝鮮に関する言及はない。当時の日本にとって、隣接国家であるはずの朝鮮は正式の国家として認めてもらえなかった存在に過ぎなかったのである。これは日朝関係に対して、日本は当時の「万国公法＝国際法」の関係に基づいて、日本と不平等条約を結んでいる朝鮮を日本と対等な国家としては認めてい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

当時の伊藤首相は、彼の側近である伊東巳代治に宣戦詔書の初案を作成させたようである。その初案は六つの種類があるが、注目に値するのは第一案から第六案の中で宣戦布告の対象国として、第一案と第二案には「清国」を対象にしているのに比べ、第三案と第四案には「清国及び朝鮮」が宣戦布告の対象になっている。そして第五案には「清国及び朝鮮」という文句になっているが、「朝鮮」のところに線を引いて消した表示をしている。最後の第六案には「清国」だけがその対象になっており、公式の宣戦布告文では、前述したように「清国」のみになっている。

日本は日清戦争を起こす際、朝鮮が清国と同盟を結んで日本に敵対行為に出ることを恐れ、朝鮮を攻撃しても国際法上に問題がないように、清国と朝鮮を同時に宣戦布告の対象として考慮したのであるが、その議論の過程で不平等条約の締結国家に過ぎない朝鮮を国際法上に日本と対等な国家として扱う必要がないという意見が優勢になると、「朝鮮」という二文字を削除し、清国だけを交戦相手にする宣戦布告文を作成した可能性が高いと考えられる。

〈청일전쟁기 伊藤내각의 對朝鮮 군사·외교에 대하여〉 토론문

토론자: 심기재

1. 논문의 의의

- 발표자는 그동안 1900년대 전후에 있어서의 일본군의 조선 주둔을 의미하는 韓國駐劄軍 문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해왔으나, 최근에는 청일·러일 전쟁으로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이번 발표도 그 과정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청일전쟁 연구는 전전부터 최근에까지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삼국 연구자 사이에 매력적인 주제임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이번 발표는 청일전쟁기 이토 내각의 성립과정, 성립 후의 정국 상황(이토 내각↔민당과의 첨예한 대립의 이유/배경), 정국 타개를 위한 호기로서의 동학농민전쟁의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싼 논의과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특히 연구사상에서 소홀히 되어왔던 청일전쟁과 조선문제에 대한 군략과 정략 등을 고찰하려고 시도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논문의 구성

- 발표 논문은 크게 제2차 伊藤 내각의 대조선 외교·군사적 측면의 검토와 청일전쟁과 조선에 대한 군략과 정략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청일전쟁기 伊藤 내각의 대조선 외교·군사를 규명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제2차 이토 내각기의 일본 국내정치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특히 元勳 내각 성립 후의 국내 문제를 둘러싼 정국대처과정, 국민여론 및 정국 위기 극복차원에서 조선문제 대응책(개전과정)을 둘러싼 움직임, 특히 무츠 외상의 동향과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일전쟁과 조선에 대한 군략 및 정략과 관련하여 청일전쟁의 연구사상의 변화, 청일전쟁 개전과정 서술의 문제점, 청일전쟁시 조선 주둔 일본군의 성격, 군략과 정략의 검토, 선전 조서를 각각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3. 질문

- ① 무츠는 이토에게 발탁된 후, 외교 면에서 수완을 발휘해 후에 「カミソリ大臣」·「陸奥外交」라는 별칭으로 불려졌다. 1892년 8월 이토 내각 출범시에 이토가 외상에 무츠를 기용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 ② 발표자는 6/1, 6/2, 6/13, 6/15 각의에서 무츠 외상의 주도 하에 혼성 1개 여단의 파견이 결의되어 준비에 들어가고, 아울러 동학농민전쟁의 진압 후의 조선내정개혁방침이 결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개전과정에 최대의 실력을 발휘한 것은 미온적인 이토가 아니라 무츠 외상과 가와카미 육군 참모차장으로 결론내리며, 개전과정에 있어서 이토의 역할(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5월 중순 동학농민 발생 이후 7월말 개전 돌입에 이르기까지 각의를 포함하여 여러 정치활동에서 노출되는 이토의 일련의 언행을 놓고 볼 때, 과연 그가 소극적인 행위로 일관했었는가는 의문시된다.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③ 발표자는 청일전쟁 발발과 함께 조선 주둔 일본군 수비대 부활과 존재를 언급하고 나아가 시모노세키 조약 성립으로 수비대의 존재 이유와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음에도 불

법적인 존재가 계속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엄밀한 국제법적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지적에도 공감한다. 주차군 문제를 다루어 왔던 입장에서 발표자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징과도 관련시켜)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④개전과정을 포함한 청일전쟁기에 대한 정군관계(정부=정략/통사부=군략)의 실태를 파악하는 문제는 청일전쟁에 한정되지 않고 근대 일본정치의 가장 중심문제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청일전쟁에 대해 한정하는 경우, 발표자가 사례로 들고 있는 大江志乃夫, 森山茂徳이외에도 信夫清三郎·藤村道生, 최근에는 高橋秀直 등의 언급이 있다.

발표자는 森山茂徳의 연구 즉 임오군란을 계기로 군비확장에 착수했으며, 갑신정변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대조 군략과 정략을 검토하는 계기로 되었다는 점에는 인정하면서도, 일본 군부(육해군)의 대조선 군략 및 정략이 구체성을 결여한 상태로 청국 타도라는 군략에 우선되는 나머지 대조선 정략은 부차적이었다고 하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으로 연결되는 임오군란 이래의 일본의 대외정책과정에서의 조선이라는 시점 결여를 언급하면서, 조선은 1880년대 이래의 일본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 근본대상이라는 점에서, 최근 일본학계의 조선 시점의 누락(조선 배제/저평가) 경향 지적에 대해서 토론자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론적 언급보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서는 군략과 관련하여 병력 파견의 결정과정, 병력파견의 과정, 작전계획, 파견병력의 활동, 파견부대에 대한 지시여부 사실 등의 보다 실제적인 문제들을 정부의 정략과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설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日清戦争期、伊藤内閣の対朝鮮軍事・外交について〉討論文

討論者：沈箕載(檀国大)

1. 論文の意義

- ・発表者は、今まで1900年代前後における韓国駐劄軍問題などを中心に旺盛な研究活動をしてきたが、最近になっては日清・日露戦争にまで関心対象を広げていて、今度の発表もその過程の一つだと見られる。日清戦争の研究は戦前から最近にいたるまで研究が絶えずに行われている東アジア三国の研究者にとっては魅力的な主題であると同時に、未だに解決すべき課題が残っているのも事実である。今度の発表は、日清戦争期における伊藤内閣の成立過程、成立後の政局状況、政局打開のための好機としての朝鮮問題(東学農民戦争)の対応策をめぐる論議過程を再検討する一方、特に研究史の上で疎かにされてきた日清戦争と朝鮮問題についての軍略と政略などを考察しようとして試みた点は意義があると思われる。

2. 論文の構成

発表論文は、第2次伊藤内閣の対朝外交・軍事的側面の検討と日清戦争と朝鮮に対する軍略と政略、大きく二つの部分で分けることができる。まず日清戦争期における伊藤内閣の対朝外交・軍事を究明するための背景説明の目的で、伊藤内閣期の国内政治の流れを概観している。つまり、元勲内閣の成立後の国内問題をめぐる政局対処過程、国民世論及び政局危機の打開次元での朝鮮問題対応策(開戦過程)をめぐる動き、その中でも何よりも陸奥外相の動向とその役割を強調している。次に、日清戦争と朝鮮についての軍略・政略と関連して日清戦争の研究史上の変化、開戦過程の叙述上の問題点、日清戦争時における朝鮮駐屯日本軍の性格、軍略・政略の検討、宣戦詔書を簡略に触れている。

3. 質問

- ①陸奥は伊藤に抜擢された後、外交手腕を発揮し、後に「カミソリ大臣」・「陸奥外交」という名称で称賛されることになる。1892年8月伊藤内閣の出帆時に、伊藤が陸奥を外相に起用するようになった直接的な理由は何か。
- ②発表者は、6/1、6/2、6/13、6/15閣議で、陸奥外相の主導下に混成旅団の派遣が決議された後、その準備に入り、続いて東学農民戦争の鎮圧後の朝鮮内政改革方針も決定されたと説明している。要するに、開戦過程に最大の実力を発揮したのは、微温的な伊藤ではなくて、陸奥外相と川上陸軍参謀次長であったと結論付けながら、開戦過程における伊藤の役割(比重)を相対的に低く評価している。しかし、5月半ばの東学農民戦争の発生から7月末の開戦にいたるまで、閣議を含めて諸政治活動の中で露出される伊藤の一連の言動から推し測ってみると、はたして伊藤が消極的な政治行為で一貫し続けたのかは疑問に残る。これに対する発表者の補充説明が聞きたいです。
- ③発表者は、日清戦争の勃発とともに朝鮮駐屯日本軍守備隊の復活と存在に触れた上、下関講和条約の成立で守備隊の存在理由と法的根拠が喪失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依然として不法的な駐留が行われたことを指摘している。ちなみに、国際法の違反事例に対する厳密な国際法的な立場での分析(検討)が必要であるとの発表者の指摘にも同意す

る。発表者が、主に韓国駐軍問題を研究してきた立場から、この問題についてどのような考えを持っているか、もっと具体的に聞かせてほしい。

- ④発表者は3-4)で主に森山茂徳の研究を取り上げ、壬午軍乱を機に軍備拡張に取り掛り、甲申政変後には本格的に対朝軍略・政略を検討するきっかけになったという点には同意しながらも、日本軍部(陸海軍)の対朝軍略・政略が具体性を欠如した上で、清国打倒という軍略に圧倒されて、対朝政略は副次的であったという点には異議を提起している。つまり、日清戦争につながる壬午軍乱以来の日本の対外政策過程での朝鮮という視点の抜け落ちにふれつつ、少なくとも朝鮮は1880年代以来における日本政府の根本的な対象という点で、最近の日本学界での朝鮮視点の欠如傾向を指摘したことは尤もな意見だと思われる。しかしながら、こうした一般論的な言及よりは、軍略と関連して兵力派遣の決定過程、兵力派遣の過程、陸海軍の作戦計画、派遣兵力の現地での活動、派遣部隊に対する指示可否などの、実際的な問題を政府の政略と関連させて具体的に再検討するのがもっと説得的だと思われるが、これについての意見も聞かせてほしい。

伊藤博文の韓国統治と朝鮮社会

小川原宏幸

はじめに

韓国併合 100 周年を前に、初代統監として日本の韓国統治をリードした伊藤博文の対韓政策を再検証しようとする機運が高まっている。伊藤の対韓政策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という課題は、日本の朝鮮植民地化過程および植民地支配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という点ばかりでなく、日朝・日韓間の歴史認識をめぐってもきわめて重要である。こうしたなかで先頃、日韓共同研究の成果として伊藤之雄、李盛煥の編集により『伊藤博文と韓国統治』が上梓された¹。伊藤の韓国統治の歴史的意義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研究が活発化している動向自体は歓迎したい。しかしごく一部の論考を除き、同書は、伊藤の韓国統治に関する新たな知見を提供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ばかりでなく、その基本的視座において大いに問題をはらむものであった。両編者によれば同書は、日韓間の歴史認識における相互理解を進めようとする意図から編まれたものであり、特に、韓国における民族主義的立場からする伊藤評価の克服を試みようとしている。しかし同書は、韓国のナショナリズムを相対化しようとする際に、植民地とは何かという内在的問いを欠如させており、その分析的枠組みにおいて大きく 2 つの問題を生じさせている。

1 つは、日本の朝鮮支配およびそれへの抵抗の双方において近代の両義性を強調するなかで、日本の侵略責任を近代性一般に解消させてしまい、その結果、朝鮮社会の抵抗の契機を客体化している点である。この問題は日韓双方の論者に生じているが、特に韓国側の論者が日本への抵抗の契機として愛国啓蒙運動を取り上げながら、この時期に広範に行われた反日武装闘争である義兵闘争にこぞって触れないのは、抵抗の契機を近代性にのみ認めているためと推察される。逆に言えば、近代性によって評価できない抵抗の契機は意識的に看過されているのである。植民地経験を近代性一般の問題に解消しようとするという論理は、近代についての評価自体はベクトルを異にするものの、日韓の歴史学界で現在隆盛となっている植民地近代性論と一定の共通性を

¹ 伊藤之雄・李盛煥編著『伊藤博文と韓国統治』（ミネルヴァ書房、2009年）。

有している²。伊藤の対韓政策が「近代」的なものであったことを自明視した上で、そうした近代性の徹底・不徹底という枠組みで伊藤の韓国統治政策をとらえる限り、その問題点は、究極的には、「近代」的な支配政策が徹底されなかった点に求められることとなろう。そうした立論は、日本の朝鮮植民地化過程において日韓双方が抱いていた近代像が一致していたことが当然前提となるが、そうした評価は事実認識として成立するであろうか。

もう1点は、日本側の研究者に顕著だが、日韓間の歴史認識の相互理解を謳いながら、朝鮮史的文脈を内在的に理解しようとする姿勢を欠いたまま、日本史的枠組みを韓国統治に無前提に援用して伊藤の対韓政策を理解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つまり一国史のあるいは脱垂的枠組みによって植民地化過程を評価しているのである。韓国併合過程に関する研究において、国際関係論的立場から韓国併合過程を検証する視角を打ち出して日本の韓国併合過程を多角的に検証する枠組みを提示した森山茂徳の研究は、韓国政府や愛国啓蒙運動の動向など朝鮮側の対応を視野に収めたという点においても従来の研究水準を大きく引き上げる画期的意義をもつものであった³。こうした森山の成果を踏まえながら、森山が朝鮮史的文脈、特に民衆史研究を取り込まなかったため、結局、一国史的枠組みに回帰してしまった点を批判し、日本の朝鮮植民地化過程をより多角的かつ比較史的視座をもって検証する枠組みを提示したのが報告者の一連の研究である⁴。

報告者は以前、日朝関係史、特に日本の朝鮮植民地化過程を検討する上で必要となるべき視角および方法論について、特に日本史の文脈からの理解がはらむ問題性を念頭に置いて指摘したことがある⁵。日本帝国主義史研究の一環として行われてきた韓国併合史研究が、朝鮮社会との連関性のなかで植民地支配体制の成立過程をとらえようとする視角を欠いていたことを批判したものであり、その批判は上に挙げた2つの問

² 趙景達が、植民地近代化論と植民地近代性論を仲の悪い双子であるにとらえるのは、この点にかかわっている（趙景達『植民地期朝鮮の知識人と民衆』（有志社、2008年）。すなわち近代をどのようにとらえるのかについては見解を異にするが、日本の朝鮮統治において「近代性」が貫徹したととらえる点で一致している。

³ 森山茂徳『近代日韓関係史研究』（東京大学出版会、1987年）、同『日韓併合』（吉川弘文館、1992年）。

⁴ 拙稿「伊藤博文の韓国併合構想と第三次日韓協約体制の成立」（『青丘学術論集』25、2005年）、同「一進会の日韓合邦請願構想と韓国併合——「政合邦」構想と天皇制国家原理との相克」（『朝鮮史研究会論文集』43、2005年）、同「日露戦争期日本の対韓政策と朝鮮社会——統監の軍隊指揮権問題における文武官の対立を中心に」（『朝鮮史研究会論文集』44、2006年）。

⁵ 拙稿「日露戦争期日本の対韓政策と朝鮮社会」。

題点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しかし、『伊藤博文と韓国統治』の各論考の多くが、報告者の問題提起を無視しているばかりか、日本の統治に対する朝鮮側の動向から植民地化過程を把握しようとした森山の枠組みにも対応できていない。したがって、ここで報告者がかつて行った指摘を繰り返すこともあながち無駄ではないであろう。

植民地研究は本来、植民地化によって在地社会にもたらされた矛盾関係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と同時に、植民地支配のあり方が従前の社会構造にどのように規定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点を視野に収めながら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でなければ、たとえば日本帝国においてさまざまな植民地統治形態が存在していたことを説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戦後歴史学の影響を強く受けて積み重ねられた日本帝国主義史研究は日本帝国主義の特殊性を抽出するのに急いで、朝鮮社会との連関性のなかでその支配体制の成立過程を位置づけるという視座が弱く、結局、日本史の文脈から植民地朝鮮を把握することになった。たとえば、日本による朝鮮統治を性格づける際にしばしば用いられる武断統治と文化政治の差異を、藩閥や軍閥と文官や政党との政治手法の差異から説明する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こうして被従属地域の主体的動向とは関係なく植民地化過程を把握するため、植民地研究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植民地」が「不在」であるというパラドキシカルな状況が出現することとなる。そしてもう一方で蓄積されてきた、日本帝国主義への抵抗を強調する民族主義運動史の立場からする研究は、実際には、被従属地域の主体性を視野に収めえない日本帝国主義史研究の構造的欠陥を衝くものではなかった。

民族主義運動史研究が帝国主義史研究とむしろ相互補完関係にあったことは、板垣雄三のn地域論によってすでに1970年代初めに指摘されていた⁶。板垣によれば、帝国主義体制は従属地域の埋め込まれた差別体制の重層的構造を絶えず拡大的に再生産しようとすることによって維持されるものであり、また民族形成・民族的発展を獲得しようとする民衆の民族的運動に対応的・対抗的なクサビとして打ち込まれる政治的組織化およびそのイデオロギーである民族主義は、帝国主義体制を維持させうるものであった。つまり帝国主義と被従属地域あるいは植民地とをそのナショナリズムの展開とその抑圧という単純な二項対立において把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り、被従属地域社会は、帝国主義という対外的矛盾ばかりでなく、「国民」化を図ろうとする民族主義との内在的矛盾が重なりあう場として設定・把握されることとなる。したがっ

⁶ 板垣雄三『歴史の現在と地域学』（岩波書店、1992年）、第I部、参照。

で日本の侵略に民族主義的抵抗を対峙させる枠組みは、究極的には帝国主義批判にはつながらないものであった。

この点とかかわって小沢弘明は、国民国家研究を総体的に行うために国民国家体系、国民国家そのもの、社会史的レベルの3層すべてを同時に論ずる必要性を喚起する⁷。さらに小沢は、民族自決主義が国民を民族と読み替えたにすぎず、国民国家をより強化するものであったこと、反植民地主義運動が脱植民地化過程で結果的に国民解放運動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という国民国家体系に変化し、その過程で社会的に異なる編成原理を有する地域もその原理に編成されていったことなど、植民地主義の形成および脱植民地化の問題をも射程に収めながら国民国家研究の課題を提示している。近代歴史学のディシプリンが国民国家的枠組みに適合的なものとして構築されていることはつとに指摘されてきたところであるが、小沢の指摘を踏まえれば、日本帝国主義史研究はもちろん、民族主義的歴史学もまた国民国家の形成に一定の寄与を果たしてきたことになる。国民国家を相対化するために特に、エトノス (ethnos/ethnic group) への着目をうながしているが、それは従来の帝国主義および民族主義が設定するフィールドでは必ずしも国民解放に向かわないエトノスを客体化しようとする力学が作用していたためであった。

近年隆盛である植民地近代性論は、日本帝国主義研究および民族運動史研究の一環として蓄積されてきた植民地研究が構造的にもっていた支配と抵抗の二項対立的理解を克服しようとする動向の一つ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⁸。民族主義の相対化を図りながら、支配と抵抗の二項対立では把握できない植民地社会のさまざまな動きを射程に収めて政治史に組み込もうとするその意図自体は共感できるものである。しかし植民地近代性論が、支配の受け皿となりうる植民地公共性が成立したことを主張するために重要な概念として用いているヘゲモニーの理解には、重大な理論的欠陥が存在する。柴田三千雄がまとめたように、ヘゲモニーが構築されるためには、統治が社会的強制力のみならず社会的・文化的な側面で被統治層からのコンセンサスを取りつける必要があるが、それは民衆運動それ自体が反抗・破壊と同時に秩序形成という両義的側面をもっているため可能となるのであり、そうした民衆運動のエネルギー

⁷ 小沢弘明「国民国家研究をめぐる12のテーゼ」(久留島浩・趙景達編『アジアの国民国家構想』青木書店、2008年)。

⁸ 植民地近代性論をめぐる近年の動向については、趙景達『植民地期朝鮮の知識人と民衆』、序論・第1章、参照。

がより高次の外部から新しい秩序形成へ整序・編成されることが必要となる⁹。したがってヘゲモニーの成立過程を検証する際には、民衆世界と統治者との関係性を動的にとらえ返す必要がある。ところが趙景達がつとに批判するように、植民地近代論はもっぱら支配者や知識人の言説分析に終始し、民衆運動への関心を著しく欠いている¹⁰。これは、小沢が国民国家を相対化するためにその必要性を喚起したエトノスに対する関心を意識的に矮小化させ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民衆史・民衆運動史的観点を等閑視してヘゲモニーの成立を語る植民地近代性論は、結局、支配と抵抗という従来の二元論に立ち戻ってしまいかねないだけでなく、従来の帝国主義史研究に比べて抵抗の契機への関心も低下させているために、単なる植民地支配万能論に陥る危険性すらはらんでいる。

したがって支配の成立過程を動的にとらえるためには、民衆世界の両義性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のかを明らかにした上で、そうした民衆世界に支配体制がどのように規定されているのかを検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植民地支配への抵抗を取り上げるに際しても、ア・プリオリに設定した民族主義をもってそれに対峙させるのではなく、そうした抵抗運動を下支えする朝鮮民衆の共通の価値観および行動に駆り立てる共有された期待、すなわち朝鮮の政治文化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を明らかにしながら植民地支配と民衆世界との関係性を抽出する必要がある。本報告では、こうした問題意識にもとづき、伊藤博文の韓国統治政策の中核をなしていた皇帝利用策とその挫折過程について、1909年初頭に行われた皇帝巡幸における朝鮮社会の反応を取り上げながら明らかにしていく。

一 統監伊藤博文の韓国統治構想と韓国皇帝の位相

まず、伊藤博文が主導して成立した韓国統治システム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り、またその統治システムは日本への韓国編入構想とどのような関係にあった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¹¹。伊藤は朝鮮植民地化を推進するために、第2次「日韓協約」による外交権奪取からさらに一段階進展させて韓国を属国化することを期し、皇帝の権限縮小を図ろうとする一方、親日傀儡政権を編成するなどしていた。そうした伊藤

⁹ 柴田三千雄『近代世界と民衆運動』（岩波書店、1983年）、pp. 32-33。

¹⁰ 趙景達「15年戦争下の朝鮮民衆——植民地近代論批判試論」（『学術論文集（朝鮮奨学会）』25、2005年）。

¹¹ 以下、本章で言及する伊藤博文の韓国支配体制の内容については、特に断らない限り、拙稿「伊藤博文の韓国併合構想と第三次日韓協約体制の成立」、参照。

の韓国統治構想を加速度的に進めたのが、いわゆるハグ密使事件を契機として1907年7月に締結された第3次「日韓協約」および関連諸条約である。伊藤は、反日的言動を繰り返していた韓国皇帝高宗を譲位させるとともに、行政指導権、立法承認権、人事同意権など韓国内政に統監が広範に干渉する法的根拠を獲得した。さらに日本人が政権中枢を掌握するいわゆる次官政治により、統監および統監府の植民地機構化を進展させていった。こうして第3次「日韓協約」を結節点として統監府の植民地統治機関化、統監府を中心とした日本人による韓国政権中枢の掌握、皇帝権の制限と親日傀儡政権による国家的従属を基本的内容とする、第3次日韓協約体制と呼びうる統治体制が成立した。

それでは伊藤の主導により成立したこの統治体制は韓国の併合とどのような関係にあったのであろうか。伊藤は、1907年初頭から始まっていた日露協約交渉で明らかにしたように、韓国を併合する意向をもっていたが、第3次「日韓協約」を締結した段階では併合断行を考えていなかった。韓国皇帝の譲位工作が進行するさなか、韓国駐劄軍司令官長谷川好道が「大日本皇帝兼韓国王」の実現を進言したにもかかわらず、伊藤がそれを拒否し、「現王ヲ隠退セシメ猶王室ヲ存置」¹²すると述べたことがそれを示している。それでは、一方で韓国の併合を志向しながら、他方で「王室ヲ存置」させるという一見相反する伊藤の発言をどのようにとらえたらよいのであろうか。

これ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伊藤が韓国の併合形態をどのように構想していたの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伊藤は、第3次「日韓協約」締結後の7月31日、京城日本人倶楽部での新聞記者および通信員に対する講演で「日本は韓国を合併するの必要はない。合併は甚だ厄介である。韓国は自治せねばならぬ。而も日本の指導監督がなかつたならば健全なる自治を遂ぐることは出来ぬ」と併合を否定し、日本の指導監督による「自治」の必要性を説いていた。その際の最大の眼目は「韓国は常に日本と提携すべしと云ふ」ものであった¹³。併合を当面否定することと、日韓提携を前提とした日本による韓国の指導監督は緊密な連関性をもっていたが、注意する必要があるのは、ここで言う「自治」が公民自治（self-government）を意味しないという点である。明治憲法体制確立期において「自治」という用語は、「中央自治」の否定と中央政府による「地方行政」の手段として「地方自治」を意味するようになっていた。これは自由

¹²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寺内正毅関係文書』38-27。

¹³ 平塚篤編『続 伊藤博文秘録』（春秋社、1930年）、p. 231。

民権運動への対抗関係において、地方を非政治化し、地方自治に限定するためにドイツ語 Selbstverwaltung の翻訳語として選択的に使用・定着された用語であった¹⁴。すなわち中央の受け皿としての自治という意味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の指導監督の下で保障される「自治」とは、日本の韓国に対する「官治」であり、従属的支配を意味した。

では韓国が日本と「提携」し、その指導監督によって「自治」育成を図った後、どのような形で韓国を日本に編入・併合しようとしたのであろうか。この点を踏まえた上で伊藤の併合構想を見ると、注目すべきは7月29日、新聞記者団に対して行った講演である。この講演で伊藤は、今後の対韓政策について言及しながら、「日耳曼聯邦」における「ウルデンブルグ」（ヴュルテンベルク）、「独逸」における「ババリア」（バイエルン）を韓国になぞらえて「聯邦」制構想に言及した¹⁵。管見の限りで伊藤が「聯邦」制に言及したのはこの講演が唯一であるが、この講演にもとづけば、伊藤の韓国併合構想は、「聯邦」制の形式で韓国を日本に編入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連邦制を採用したドイツ帝国の構成国であるヴュルテンベルク、バイエルンの両国は、半主権国としての性格を依然残していたのであり、伊藤の演説はこの点を踏まえたものと見られる。岩倉遣外使節において、また1881年の憲法調査においてドイツ帝国の成立過程を直接見聞した伊藤にとってドイツにならった連邦制の採用は決して突飛な発想ではなかったと推察される。

しかし韓国政府の傀儡化を強力に推し進めたこと、連邦に編成される以前のドイツ各邦と韓国との政治体制の違いなど、伊藤の「聯邦」制構想をドイツのそれとただちに比定することには難があり、また韓国軍隊解散を控えた同発言の政治的意図をも勘案しなければならない。むしろ、伊藤が女婿末松謙澄にあてたと思われる覚書中に次のようにあること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¹⁶。

1. 韓国八道ヨリ各十人ノ議員ヲ撰出シ、衆議院ヲ組織スルコト
2. 韓国文武両班ノ中ヨリ五十人ノ元老ヲ互撰ヲ以テ撰出シ、上院ヲ組織スルコト
3. 韓国政府大臣ハ韓人ヲ以組織シ、責任内閣トス為スヘキコト
4. 政府ハ副王ノ配下ニ属ス

¹⁴ 石田雄『自治』（三省堂書店、1998年）、pp. 20-21。

¹⁵ 『東京朝日新聞』1907年8月1日付。

¹⁶ 堀口修・西川誠監修・編集『末松子爵家所蔵文書』下巻（ゆまに書房、2003年）、p. 389。各項の数字は報告者が便宜的に付したものである。

第4項にある「副王」は、第3次「日韓協約」締結過程を勘案すると、統監を指すと見てよいだろう。韓国「国王」を補佐する「副王」である統監の下に韓国政府および植民地議会としての「衆議院」および「上院」を編成させるという構想である。したがって「本国政府自ら特別の機関を設けて直接植民地統治に当る」直接統治のなかでも、「代議制を認め、その住民に立法参与権を与ふるも、未だ責任内閣制を有せず、その行政及び司法は、なほ本国政府の監督下にある官吏によつて行はるる」自治植民地 (Self-governing Colonies¹⁷) に類似した統治形態による併合であったと類推される。伊藤の覚書では「責任内閣」制の採用に言及しているため、自治植民地とは異なるようにも思えるが、「副王」すなわち統監の下に内閣が編成される以上、純粋な責任内閣とは言いがたい。韓国の併合を見据える一方、日本との「提携」を緊密にし、韓国皇帝を存続させたまま日本の指導監督による「自治」を達成するという伊藤の併合構想が意味するのは、併合の否定としての保護国ではなく、「過渡的」統治すなわち併合への移行段階としての保護国という位置づけであった。伊藤の併合構想は自治植民地に類似した形式で韓国を日本に編入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そうした構想を前提にして朝鮮の植民地化を進めていった。

伊藤が、ハーグ密使事件の善後策として韓国の即時併合ではなく第3次日韓協約体制による漸進的併合構想を選んだのは、伊藤が日露戦後の日本財政の負担とならないよう韓国の財政自立を優先したからであり、また朝鮮社会から支配の同意を取り付けた上で併合を行おうと考えたためであった¹⁸。そして伊藤は、支配の同意を、日本による「施政改善」政策すなわち近代文明化を推し進めることとともに韓国皇帝の権威を利用することによって獲得しようとした。特に皇帝権威の利用については、韓国皇帝の廃止という長谷川好道の提言を伊藤がしりぞけたという先述の事実が象徴的に示している。すなわち、第3次「日韓協約」締結時点で伊藤が韓国の併合を断行しなかったことと、反日的な皇帝高宗の譲位という形で善後策を講じ、制度として皇帝を存続させたこととは直接的な連関性をもっていた。

伊藤が皇帝を存置させたのは、第3次「日韓協約」の締結に際して再燃した義兵闘

¹⁷ 堀真琴『植民政策論』(河出書房, 1939年), p. 150。

¹⁸ 伊藤之雄は、伊藤博文が1907年時点で韓国を併合しなかった理由についての報告者の指摘を、財政負担を避けたことのみと解釈しているが(伊藤之雄「伊藤博文の韓国統治」伊藤之雄・李盛煥編『伊藤博文と韓国統治』, p. 6), 明らかな誤読である。報告者は財政自立の問題とともに、伊藤が朝鮮社会から支配の合意を獲得することを重視していたことをすでに指摘している(拙稿「伊藤博文の韓国併合構想と第三次日韓協約体制の形成」第3章)。

争の鎮撫のために勅旨や宣撫使を出させたり、あるいは裁可機関として皇帝を位置づけていたりした事実を勘案すると、イデオロギー装置として韓国皇帝を重視していたためである。伊藤は韓国統治を進める際、韓国専制国家観にもとづいて韓国皇帝を擁立することを絶対条件としていたが¹⁹、その際支配イデオロギーとして評価していたのは甲午改革以降に涵養された「忠君」意識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²⁰。月脚達彦によれば、甲午改革において開化派政権は「忠君愛国」的な心性を涵養し、権利の保護を唱えて創出した「国民」を「朕一臣民」という「一君万民」体制へと収斂させようとしており、それに合わせて「国民」統合の中心にふさわしい新たな君主権威を構築しようとした。そしてそうした動きは独立協会運動を経て愛国啓蒙運動にも継承されたという²¹。君主の恣意的な権力行使を抑える一方、その権威を利用した統合原理を創出しようとする「近代」的統治システム構築の動向は、日本における「一君万民」論的天皇観の形成過程と対応したものであり²²、そうした統合原理の利用は天皇制国家原理を構築した伊藤にとってさほど違和感のないものであった。

二 反日運動の諸相と伊藤博文の対応

では、統監府の施政に対する反日運動の状況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り、またそうした動向に対して伊藤博文はどのように対応しようとしたのであろうか。

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日本の韓国保護統治下において反日運動が展開されたが、それは、都市知識人を中心に近代文明至上主義的側面をもちながら行われた愛国啓蒙運動と、儒教的民族主義にもとづき武力的に行われた義兵闘争との2つに大別される。伊藤は、日本による「施政改善」政策を遂行するなかで愛国啓蒙運動の取り込みには一定の手ごたえを感じていた。趙景達らが指摘するように、愛国啓蒙運動は当時流行していた社会進化論を受容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侵略に妥協的な側面をもっていたためである²³。愛国啓蒙運動は、申采浩や朴殷植らの国権的伸張を目指す潮流と、アジ

¹⁹ 拙稿「日露戦争期日本の対韓政策と朝鮮社会」、p. 55。

²⁰ 月脚達彦『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東京大学出版会、2009年）、pp. 265-266。

²¹ 月脚達彦「甲午改革の近代国家構想」（『朝鮮史研究会論文集』33、1995年）、月脚達彦『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pp. 266-267。

²² 日本における一君万民論の形成および展開過程については、井上勲「ネーションの形成」（『近代日本政治思想史』I、有斐閣、1971年）、参照。

²³ 趙景達「朝鮮における日本帝国主義批判の論理の形成——愛国啓蒙運動期における文明観の相克」（『史潮』新25、1989年）、同「朝鮮近代のナショナリズムと文明」（『思想』808、1991年）、月脚達彦「愛国啓蒙運動の文明観・日本観」（『朝鮮史研究会論文集』26、1989年）、参照。

アとの連帯を図ろうとする東洋主義を主張する潮流とに大きく分かれるが、後者はさらに①同盟論、②保護国論、③合邦論の潮流に細分される。伊藤の韓国保護国論（→韓国併合論）が「自治論」の幻想を振りまくなかで、愛国啓蒙運動勢力からは、日本の侵略への批判力を弱めるどころか、これに迎合するものまで現れていた。その最たるものが一進会であるが、有力愛国啓蒙団体である大韓協会の幹部もまた伊藤の唱える自治論に取り込まれていた。それは、1909年12月に行われた一進会の日韓合邦請願に反対する論理にも明確に表れている。大韓協会による一進会の日韓合邦論への反対は保護国論に立脚したものだからである。大韓協会は、日本の指導によって韓国は「開明富強」化することができるだけでなく、将来、韓国「国民」が日本と韓国との「合邦」を望むに至るようになるにとらえ、伊藤のいう韓国保護国論を内面化させていた²⁴。伊藤は、民意調達のために早くから愛国啓蒙運動団体との連携を探り、その帰結として李完用内閣を編成するにあたって一進会会長宋秉畷を入閣させた。また統監辞任後には、一進会以外の愛国啓蒙団体も日本の統治になびいていると認識していた²⁵。こうした愛国啓蒙団体の動向にもとづいて伊藤は、日本の近代文明的施策に期待を寄せる愛国啓蒙運動の動向にもとづいて、日本が韓国国民から支配の合意を得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位置づけていた。

しかし伊藤は、義兵闘争への対応には苦慮することとなった。19年に義兵将として蜂起した崔益鉉に典型的に見られるように、その反日の論理が衛正斥邪、すなわち華夷思想にもとづく儒教的文明観から構築されていたためである²⁶。衛正斥邪的立場からする義兵闘争は、「忠愛」と「信義」という儒教的道義・規範を果たさない日本を批判するという論理に即して行われたものであった。伊藤は、当初、日本が近代化政策を推し進めることによって次第に沈静化するという楽観的な見通しを示していた²⁷。その一方で、伊藤は武力による義兵の弾圧方針を施政当初から一貫して崩さなかった。伊藤は、義兵の高揚に対して「彼等ノ自暴自棄ハ、遂ニ我ヲシテ征服ノ已ムヲ得サルニ至ラシメサルカト憂慮ヲ抱カシム」²⁸と突き放した見方を示していた。松田利彦や慎

²⁴ 拙稿「一進会の日韓合邦請願構想と韓国併合」、第3章、参照。

²⁵ 拙稿「伊藤博文の韓国併合構想と第三次日韓協約体制の形成」、p. 70、葛生能久『日韓合邦秘史』下巻（原書房、1966年復刻）、pp. 107-108。

²⁶ 糟谷憲一「甲午改革後の民族運動と崔益鉉」（『旗田巍先生古稀記念 朝鮮歴史論集』下、龍溪書舎、1979年）、参照。

²⁷ 金正明編『日韓外交資料集成』6中（巖南堂書店、1964年）、p. 678。

²⁸ 『統監府文書』（大韓民国文教部国史編纂委員会、京畿道、1998-2000年）4、p. 212。以下、『統監府文書』からの引用等は本文中に括弧書きで（④212）のように示した。丸付き数字は巻数を、数

蒼宇が指摘するように、義兵に対する武力弾圧方針については伊藤と在韓日本軍首脳との間に違いはなかったのである²⁹。

他方、皇帝の権威を利用した民心収攬策も継続して行われた。義兵に対して行われた帰順策の1つが、宣諭使（宣撫使、慰撫使、安撫使ともいう）の利用である。宣諭使は、朝鮮時代に災害や事変が起きた際、民心鎮撫のために国王が派遣した官吏であるが、儒教的民本主義を担保する政治的制度となっていた。たとえば1862年に起きた壬戌民乱に際して朝鮮民衆は、懲罰を覚悟しつつも、宣諭使らを通して苛斂誅求にあえぐ自らの生活実態を国王に伝えようとしたという³⁰。宣諭使が国王・皇帝と直結する対象として見なされていたためであり、民乱の過程を通じて希求された社会正義の実現が、一君万民論的思想の下で国王に求められたのである。しかし、宣諭使の派遣という鎮撫策は、統監府統治下では伊藤らの思惑どおりには機能しなくなっていった。それは義兵が宣諭使、さらには皇帝に政治的正当性を認めなくなったからばかりではない。義兵は、宣諭使派遣の背後に日本の意向が存在することを知りつつも、「偽命ト曰フト雖、既ニ宣諭ト称ス。則チ参量スルトコロナカルヘカラス。姑ク之カ為メニ其ノ生路ヲ開キ、告クルトコロアリ。望ムラクハ、須ラク亟ニ図ツテ身ヲ脱シ、之ニ帰シ、俱ニ賊叢ニ焚カル、ニ至ルナカルヘキナリ」³¹と宣諭使に呼びかけていたからである。ここから義兵の2つの政治観を読み解くことが可能である。1つは、たとえ偽命であっても宣諭と称している以上、それは皇帝の使者であることを参酌するという政治観である。つまり皇帝を推戴した秩序形成への志向性は依然機能していた。この皇帝観は、義兵将崔益鉉が皇帝の名義で派遣された軍隊に抵抗するのは反逆であるとして降伏した際の論理とも一致する³²。しかし2点目として、道義を共にして反日義兵闘争に加わることを宣諭使に呼びかけるという、儒教的民族主義にもとづいた義兵の行動論理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義兵に帰順を求めるにあたって宣諭使が軍隊を率いて義兵のもとへ赴き、慰撫を行うという従来の政治作法には見られない行動を

字はページ数をそれぞれ示す。

²⁹ 松田利彦「朝鮮植民地化の過程における警察機構」（『朝鮮史研究会論文集』31, 1993年）、慎蒼宇「抗日義兵闘争と膺懲的討伐」（田中利幸編『戦争犯罪の構造』大月書店, 2007年）、参照。日本軍による過度の義兵弾圧に対して伊藤博文が行った批判も確かに存在するが、それはイギリス政府をはじめとする国際的批判を恐れたためであった（海野福寿『韓国併合史の研究』岩波書店, 2000年, pp. 331-335）。

³⁰ 趙景達『朝鮮民衆運動の展開』（岩波書店, 2002年）、第2章、参照。

³¹ 琴秉洞解説『秘 暴徒檄文集』（緑蔭書房, 1995年）、pp. 329-334。

³² 韓国内部警務局編『顧問警察小誌』（韓国警務内部局, 1910年）、p. 122。

とったため、これに対して義兵は帰順するどころか、逆に、宣諭使に訓諭を行うという逆転現象を見せるようになった³³。これらの事例は、義兵が皇帝に政治的正当性を認めつつも、義兵こそが社会正義を代弁しているという確固たる信念の存在を示している。

そしてこうした社会正義を希求する動きは、義兵だけでなく、朝鮮民衆にあっても義兵闘争とはやや次元を異にしながら展開されていく。日露戦争下において在韓日本軍は、鉄道用地・軍用地の強制収用をはじめ、食糧徴発などさまざまな負担を民衆に強要する一方、いわゆる軍律体制を敷き、日本軍に従わない民衆に対して死刑を含む厳罰をもって臨んだ。こうした日本の軍事的支配に対して不服従や忌避などの民衆の反発が繰り返されていくが、こうした動きは日本軍から「治安」紊乱の対象と見なされていく³⁴。こうした民衆の自律的な動向が展開されるなかで義兵による反日闘争と共鳴・合流・拡散していく³⁵。義兵闘争は1907年の第3次「日韓協約」締結に伴う韓国軍隊解散によってさらに高揚するが、その展開過程で従来の儒生だけでなく、いわゆる平民義兵が闘争の担い手として現れたことはそうした民衆の動きの一端を示している。軍隊を解散させられ、生活の場を日本によって奪われた人々が、日本に対する反発を義兵という形で表現していくからである³⁶。ただしこれを、民衆が反日運動を主体的に担うようになったと単純には評価できない。民衆の反日運動、特に義兵闘争へのかかわり方はむしろ一般には消極的でしたらあったからである。たとえば義兵を陰に陽に支援する場会でも、「人民ハ、暴徒蜂起以来全ク納税セス今日ニ経過シタルハ、暴徒ノ蔭ナリ。常ニ暴徒ノ徘徊ヲ希望シツ、アリ」(⑩329)という官憲報告が示唆するように、その背景には生活防衛的な動機が色濃く存在していた。民衆の義兵支援には、納税忌避、特に1909年に施行された家屋税法、酒税法、煙草税法の三新税に対する反発という側面が強かったと言える。しかしそうであればこそ、自身の生活基盤を破壊するものとして日本の支配が実感されればされるほど、民衆は日本への抵抗を強めて

³³ 『秘 暴徒檄文集』, p. 262, 慎蒼宇『植民地朝鮮の警察と民衆世界』(有志舎, 2008年)。

³⁴ 多胡圭一「朝鮮植民地支配における軍事的性格——日露戦争下およびその直後を中心に」(日本近代法制史研究会編『日本近代国家の法構造』木鐸社, 1983年)。

³⁵ 両班という身分的名称ではなく、儒教的普遍主義にもとづいて自処しようとする士意識が、近代移行期から日本の植民地統治下にかけて、民衆に拡散・体現されていく過程、およびその動向に果たす東学の役割については、趙景達『異端の民衆反乱』(岩波書店, 1998年), 同『朝鮮民衆運動の展開』が詳しい。

³⁶ 慎蒼宇「憲兵補助員制度の治安維持政策的意味とその実態——1908年～1910年を中心に」(『朝鮮史研究会論文集』39, 2001年), 同「無頼と倡義のあいだ——植民地化過程の暴力と朝鮮人「傭兵」」(須田努・趙景達・中嶋久人編『暴力の地平を超えて』青木書店, 2004年)。

いくこととなる。そして民衆は、自らに政治的主体性を見出だしえないがゆえに、義兵をはじめとする反日闘争勢力に社会正義の代執行を仮託していくのである。伊藤がいくら新たな統合原理を提示しようとしても、朝鮮社会における社会正義のあり方を顧みないまま、民衆の生活基盤を崩壊させかねない施策を行うなかで、それは民衆に受け入れられることなく、日本に対する反発はより拡散・強化されていき、あるいは潜在化していく。

三 伊藤博文の皇帝利用策と南北巡幸

伊藤博文の皇帝利用策と朝鮮民衆との乖離が典型的に現れたのが韓国皇帝純宗の南北巡幸である。それでは、伊藤はどのような意図で皇帝巡幸を行い、そうした伊藤の意図は朝鮮社会にど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たのであろうか。以下、その具体層について、その皇帝観の相違を焦点にして検討を行う。

1909年初頭、朝鮮南東部を回る南部巡幸と、北西部を回る西北巡幸という巡幸が2回にわたって行われた。巡幸には統監や各大臣ほか日韓両国諸官二百名あまりが陪従し、巡幸先では、地方治績の下詢、孝貞の旌表、高齢者および内外国人の賜謁、各団体への賜金、殉国者致祭の沙汰等の恩賜行為がなされ、また日韓両国民による歓迎会や提灯行列の催行、郡守や両班、儒生の引見など、さまざまな官製行事が行われた³⁷。さらに、日本皇室との親電交換や日本軍艦への臨御、軍事演習の観閲など日韓友好の演出が催行された。

南部巡幸は伊藤の発意によるものであったが、その目的は「今次之南北巡視は其効果望尺不過得寸も、願くば南北の韓民をして一挙我に信頼するの外、途なきを知らしめんと欲する」³⁸というものであった。また巡幸に際して公布させた詔勅に明白に表れているように、巡幸は、日本の指導にもとづく「施政改善」の真意を理解せずに展開されている「地方ノ騷擾」を鎮撫し、日本の指導性を朝鮮民衆に認識させるための措置であった³⁹。したがって伊藤は、「此〔韓国〕領土と人民を干戈を以て征服するも、民の心を安んぜざれば之を治むる能はず。所謂損有つて益無きの業に過ぎざれば、寧ろ之を扶植するに如かず。韓国を富強ならしむれば、将来力を合して東洋の形勢を維

³⁷ 『日本外交文書』42-1, p. 183。

³⁸ 春畝公追頌会編『伊藤博文伝』下(統正社, 1940年), p. 823。

³⁹ 『韓国官報』1909年1月4日付号外。

持するに好都合なり」⁴⁰と幻想を振りまきながら、第3次日韓協約体制下で日本によって韓国の開発が行われることを説き、民心収攬の必要性を強調した。その際伊藤は、日本の韓国指導の正当性を朝鮮民衆に知らしめるために韓国皇帝の權威を最大限利用しようとした。純宗に陪従した伊藤は、皇帝の意思は日韓融和にあるのだから韓国国民もその聖意に従うべきであり、民心の収攬、日本による韓国富強への善導を皇帝が願っていると、皇帝の權威に依拠しながら、巡幸先の各地歓迎会で演説を繰り返した(㉑220)。

そして詔勅や演説だけでなく、皇帝の断髮姿および大元帥の軍装姿のような目に見える形での馴致策も展開された。月脚達彦が強調するように第3次「日韓協約」締結以降、皇帝の可視化による統合策が急速に進められていたが、これを巡幸先でも推し進めたのである⁴¹。皇帝の断髮姿は、人々に、皇帝が断髮したにもかかわらず旧慣にとらわれているのは聖意に背くものであるととらえられた(㉑264)。そして、それまで断髮を拒んでいた人々のなかから数多く断髮する者が出た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㉑263)。巡幸を契機とした断髮については、当局にとって目に見える成果であったためか、他の地方からも具体的な数字を挙げながら同様の報告が数多く寄せられた。断髮者続出という報告の一方で、官職を捨てても断髮しないと訴えた郡守の事例も報道されており⁴²、またその背景に、後述するような日本に迎合する観察使等の官吏による強制を想定することも十分可能である。したがってこれを過大評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一例を挙げれば、平壤理事庁管内では西北巡幸に際して平壤で約500名、鎮南浦250名、安州郡約250名その他合わせて約1500名の断髮者が出たと報告されている(㉑341)。また皇帝の軍装についても、「陛下軍服ノ鳳姿ト、汝等時世ニ伴ヒ旧思想ヲ改メヨトノ論旨ニ対シ、長煙座食ノ旧夢ヲ覚醒セル者多ク」(㉑285)という報告からうかがえるように、近代化の範を示す視覚的媒体として皇帝に一定の機能が期されていた。

それでは、こうした伊藤の意図に対して朝鮮社会はどのように反応したのであろうか。官憲報告は、朝鮮の官民が皇帝巡幸を一大盛事としてとらえ、韓国の文明化を達成するものと理解しているとして巡幸の成功を誇った(㉑328)。さらに、今回の巡幸が「忠君愛国」意識を高揚させるものであり、人々が、そうした意識を梃子にして近

⁴⁰ 『伊藤博文伝』下, p. 818。

⁴¹ 月脚達彦『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 pp. 272-275。

⁴² 『大韓毎日申報』1909年1月9日付「愛髮郡守」。

代化を推し進める必要性を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と評価している (㉑283)。確かに、一進会をはじめとする親日団体はもちろん、西北学会等の愛国啓蒙団体も皇帝巡幸を歓迎した。大韓協会では1月5日、尹孝定宅に呉世昌、権東鎮、張志淵ら幹部が集まって巡幸への対応を協議したが、巡幸自体には反対ではなく、七日の出発時には南大門に集まって皇帝を見送ることに決したという (㉑245)。次に見る国旗掲揚事件のように、愛国啓蒙運動の論理にもとづく反日運動ももちろん展開されたが、愛国啓蒙団体の少なくとも幹部クラスには、その「忠君」意識を媒介としながら、巡幸を契機とした伊藤の民心帰服策に取り込まれる者が多かったと評することは可能であろう。

愛国啓蒙運動陣営において、巡幸に積極的に反対し、また治安当局が反日勢力としてその動向を警戒していたのは安昌浩らキリスト教系のグループであり、その一端が平壤で起こった国旗掲揚事件である。巡幸に際して日韓両国の国旗を掲揚するよう、各地方官から指示がなされていたが、安昌浩らの私立学校(多くはキリスト教系)は、太極旗のみを掲げる抵抗運動を行った⁴³。安昌浩らのこうした行動は、月脚が指摘するように、忠君愛国的民族意識にもとづくナショナリズムの発揚ととらえられる。こうした忠君愛国的意識からするナショナリズムの発揚に関連して内田良平は、1907年に皇太子嘉仁の韓国巡啓が行われた際、伊藤博文の韓国皇帝重用策は韓国国民に忠君愛国思想を広めるものであり、保護統治下で独立思想を育成すること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いう憂慮を示していた⁴⁴。韓国における忠君愛国的皇帝観を利用しようとする伊藤の政策に対する日本側からの批判であり、国旗掲揚事件はこうした皇帝利用策がはらむ問題性をあぶり出すものであ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忠君愛国意識から「愛国」意識が分離・純化されるなかで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抵抗が強まり、「抗日ナショナリズム」が成立する契機となったものと理解されるからである⁴⁵。ただし、この段階での反日運動の論理を、愛国啓蒙運動における「抗日ナショナリズム」の成立にのみ求めるのは表面的な理解である。たとえば巡幸に際して義兵将李殷瓚、尹仁順兩名は、京畿・江原・黄海各道の義兵に通文を送り、還幸する皇帝を京畿道抱川郡で出迎え、義兵を戦う「吾々ハ此通り国家ノ為メ苦勞スル旨」を上奏することを呼びかけた (㉑280)。ここに見られるのは、勤皇思想にもとづいて義兵闘争を遂行し、国家のために道義を果たす自らの立場を上疏して正当化しようとする義兵の姿である。儒教的民本

⁴³ 月脚達彦『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 pp. 298-300。

⁴⁴ 原武史『直訴と王権』(朝日新聞社, 1995年), pp. 209-210。

⁴⁵ 月脚達彦『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 第8章, 参照。

主義にもとづく一君万民的な皇帝幻想から反日闘争が行われていることを看取することができる。

そして巡幸という鎮撫策が地方官吏や一部の団体等のごく限られた層にしか浸透せず、当局者が誇るほどには朝鮮社会に影響を与え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とは、一見、巡幸の成功を伝える各関係機関からの報告が示唆する。各理事庁や治安当局は、「中流以上ノ社会」では皇帝の意思の所在と巡幸の盛事は統監の指導によるものであり、日本による盛事を信頼するべきであると悟ったものが多かったと巡幸の成功を伝えている（⑨349-350）。しかしこの報告は、逆に言えば、その影響が「中流以上」の朝鮮社会に限定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認めたものにほかならない。圧倒的多数の「下流」民衆を無視した上でしか巡幸の成功を誇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

一方、皇帝巡幸は、日本に阿附する者に対する民衆の不平・不満をさらに高める契機となったという性格も併せもっていた。奉迎準備に際して平安南道觀察使李軫鎬は、一般の寄付金を募って宴会費や道路修繕費などを捻出しようとし、さらに巡幸に際して通行の便を図ろうとして「韓人家屋約二百軒ノ庇ヲ切」ったため民衆の不平を招いたという。觀察使のこうした動きに対し、統監府側が補償を行わせたり、準備を小さくしたりするなど、むしろ抑制する側に回らざるをえなかった（⑨291-292）。巡幸は、日常生活を営む民衆にとっては迷惑な出来事でもあったのである。また、巡幸に際して開城觀察道臨時事務所で爆破事件が起こった。その事務所は、新たに開城郡守に任命された朴宇鎮が所有する空き家であったが、当局の報告は、この爆破事件について、日本の官吏に阿附して郡守に任命されるとされる朴宇鎮への嫉妬から起こったものと推測している（⑨335）⁴⁶。原理的には皇帝に任命されるという形式をとる地方官の任用についても、日本が介在するなかで民心が離反していく様子がうかがわれる。さらに、巡幸に際して下賜金が配られたが、それが配布されなかったことに対する不満の声が西北学会等から上がるなど（⑨340）、愛国啓蒙運動団体の巡幸に対する評価も決して手放しのものではなかった。皇帝巡幸は総体的には、在地社会に帝国主義の新たな差別体制を埋め込んでいく契機であったといえる。

さらに注目すべきは、巡幸が朝鮮における政治文化断絶のさらなる契機となったと

⁴⁶ なお、この爆発をめぐっては、伊藤博文を暗殺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流言が広まっていた（黄玑『梅泉野録』国史編纂委員会，ソウル，1955年，p. 483）。

いう点である⁴⁷。巡幸に際し、治安当局による警備は厳戒を極めた。両巡幸ともに警務局長から関係警察部長あてに通牒が送られたが、そこでは、巡幸拝観時に行列を横切らないことや帽子、頭巾、笠等を脱ぐこと、酔狂人、精神異常者、精神障害者を拝観場所に近づけないこと、老人や病人、聾啞者には保護人をつけること、行列を二階などから見下ろさないことといった詳細な指示が行われた⁴⁸。したがって巡幸で行われた皇帝による諮問や謁見等は徹頭徹尾官製行事として行われた。こうした治安当局による厳戒な警備は、直訴という朝鮮の伝統的政治作法の封鎖を招くこととなる。朝鮮王朝においては、行幸に際して国王に直訴を行うことが一般的であり、特に英祖・正祖の君権強化策の下で数多くの民訴が行われた。勢道政治の下でそうした民訴は現実的には封鎖されていくものの、直訴を行うことが儒教的民本主義の理想から原理的には当為とされていた⁴⁹。1905年の「刑法大全」によって直訴は制度的に禁止されるに至るが、そうした制度改編によってその政治文化が容易に消滅するわけではない。実際、巡幸に際して民衆が直訴を行おうとしていた事例が報告されている。李秉夏という人物が上奏文のようなものを携帯していたため、当局が捕捉して取り調べたところ、その書面には父親を毒殺した犯人を流刑に処するよう依頼する旨等の文言が書かれており、それゆえその挙動から「発狂者」と認め、馬山警察署で保護し身元調査を行ったというのである⁵⁰。ほかにも、舅に孝行を尽くした母親を孝子烈女の列に加えて表彰してくれることを直訴しようとするなど⁵¹、伝統的政治作法にのっとり要求を皇帝に伝えようとした民衆の姿が報告されている。しかしこうした直訴という行為は統監府の

⁴⁷ 統監府が行った「近代」的諸政策は朝鮮の政治文化のあり方と本質的に齟齬をきたすものであった。たとえば、伊藤が義兵対策の一環として1906年7月に行った宮中肅清策である「宮禁令」制定をめぐる伊藤と韓国皇帝および韓国政府との一連のやり取りにはそれが端的に表れている。韓国宮中と義兵勢力との分断を図るため宮中への雑輩の出入りを制限しようとする伊藤に対し、高宗は在地儒生、特に山林儒生の意見を政治に反映させる必要性を強調した(『日韓外交資料集成』6上, p. 313)。高宗の発言からは、仮に建て前であったとしても、上疏という朝鮮王朝以来の民意調達策を維持しようとする高宗の政治観、もっと言えば儒教的民本主義という朝鮮的思惟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伊藤は「自分ノ此ノ地へ来任セルハ、韓国ヲ世界ノ文明国タラシメント欲スルカ故ナリ。若、山林ヨリ太公呂望ノ如キ者出テ来テ、韓国ノ君臣之ニ耳ヲ仮スカ如キコトアラハ、自分ハ早速帰国スルノ外ナシ」(同書, pp. 247-248)と述べ、日本の指導性を強調するとともに、伝統的な民意調達策を文明の名の下に明確に否定した。伊藤による宮中肅清策は、皇帝と民衆とが上疏によって原理的に結びつくという儒教的民本主義に則した民意調達の回路を断ち切るものであった。

⁴⁸ 松田利彦監修『韓国「併合」期警察資料』3(ゆまに書房, 2005年), pp. 110-111。

⁴⁹ 趙景達『朝鮮民衆運動の展開』, 第1章・第2章, 参照。

⁵⁰ 『韓国「併合」期警察資料』3, pp. 179-180。かつて民訴の内容は四件事と称して4つに制限されていたが、民訴の増加を受けて18世紀初頭に、①子孫が父祖のために、②妻が夫のために、③弟が兄のために、④奴が主人のためにという新四件事と称する代理申訴の措置が図られた(李泰鎮(六反田豊訳)『朝鮮王朝社会と儒教』法政大学出版局, 2000年, pp. 307-308)。

⁵¹ 『韓国「併合」期警察資料』3, pp. 253-254。

儀 礼のなかで明確に否定され、「発狂者」というレッテルの下にその政治作法が封鎖されていく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

四 皇帝巡幸をめぐる朝鮮社会の対応——流言の分析をめぐる

では次に、朝鮮民衆が皇帝巡幸をどのようにとらえた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治安当局が収集した流言蜚語を検討してその一端を垣間見る。もとより流言蜚語は、そこで語られる事実が存在したかどうかよりも、それを語り伝えていく民衆の心性のありようを表すものであり、それゆえ民衆の権力に対する反応を端的に示しているといえる⁵²。

では、朝鮮社会は巡幸の目的をどのようにとらえていたのであろうか。代表的な流言として、断髮励行のために巡幸が行われたというものがある。韓国皇帝の断髮姿が日韓融和を象徴するものとして位置づけられ、断髮者が続出したことをその成果として当局が誇ったことは先に確認した。しかし、たとえば「西韓行幸ハ断髮励行ニアリ」(㉠284)という流言は、手段と目的とが転倒して理解さ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民衆は巡幸を、人々に断髮を強いるために行われたものだととらえたのである。月脚達彦は、制度的に断髮をいち早く求められた新式学校の学生が、長期休暇において帰省する際に義兵に襲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休暇が近づいてくると学校に断髮の免除を求めたことや、郡守から断髮の巡回指揮を命じられた面長が身に危険が及ぶのを恐れてその命令を拒否したという興味深い事実を掘り起こしている⁵³。断髮を行う人々であっても、その態度は機会主義的であり、断髮に対する社会的抵抗感は依然として強かった。

また、韓国併合の準備として行われたという理解が挙げられる。西北巡幸に際し、国庫への財政負担を強いる巡幸を行うことへの批判の声が上がった(㉠334-335)。当時、日本からの借款返済のために愛国啓蒙運動団体を中心に国債報償運動が展開されていたことを考えれば、こうした批判が上がるのは当然想定できる。またキリスト教信徒等の間では、列強の環視下では武力による併合は不可能なので、韓国の財政を疲弊させようとする目的から行われたという流言が広まっていた(㉠334-335)。韓国の併合を目論む日本が、財政破綻を期して巡幸を計画したのだという理解である。ある

⁵² G・ルフェーブル(二宮宏之訳)『革命的群衆』(岩波文庫、2007年)、第2章、二宮宏之『全体を見る眼と歴史家たち』(平凡社ライブラリー、1995年)、第2部、参照。

⁵³ 月脚達彦『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p. 295。

いは、巡幸は皇帝の意思ではなく、東洋拓殖会社の創設に際して 400 万人の日本人が渡韓するので伊藤が実地に巡察しようとして行われたものだという風聞も採取されている（⑨334）。ここからは東洋拓殖会社の設置をはじめ、日本による経済的植民地化が本格化することへの抵抗感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ここまでは具体化されていないが、巡幸の実施に遠からぬ将来の政治的・社会的変動を民衆が嗅ぎ取っていることを示唆するいくつかの流言が収集されている。たとえば、咸鏡南道元山の事例では、先帝高宗がかつて開城に巡幸した際に洪水が起こったことを例に挙げながら、ソウルを遠く離れて行われた今回の巡幸は「或ハ何等カ災害ノ起ルモノ」（⑨281）とささやかれたり、また平安道では、平素皇宮にいる皇帝が酷寒の折に西北巡幸を行ったのは「必ス国民ニ動乱アル為メ避難セラルハナラン」（⑨327）と語られたりと、民衆が巡幸を災害や動乱が勃発する予兆として理解したことを示す報告がなされている。こうした風聞は、民衆の漠然とした不安や恐怖を表したものととらえるべきであり、そこに天譴思想を読み取ることも可能である。こうした不安にもとづいて反日運動を下支えする集合心性が醸成されていたといえるだろう。

そして、そうした民衆の理解を顕著に表すのが、巡幸の目的を、韓国皇帝を日本に連れ去るものととらえた流言である⁵⁴。以下、この流言について詳しく検討する。巡幸は鉄道を使って行われたが、南部巡幸の際、沿道では皇帝が日本に拉致されることを阻止しようとして線路上に横たわる学生（大邱）や、行幸は名義上のものであり、皇帝を日本に拉致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から、二度と皇帝を拝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車窓に向かって落涙し別離を惜しむ者、日本に拉致されるものとして不快の念を表す両班や儒生（忠清北道）等が続出した（⑨263, 280）。同様の流言は、ほかにも京畿道、忠清南道、全羅南道、慶尚両道、黄海道、咸鏡南道で確認されている（⑨279-282）。官憲は、こうした流言を排日派が主導するものと見なして調査を進めたが（⑩254）、より重要なのは、流言の発生源よりもそれを受容する民衆の心性である。風聞の内容およびその地域的広がりから看取できるのは、朝鮮民衆が行幸を日韓親善のセレモニーとしてはとらえず、皇帝存続の危機を招来するものと理解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しかもそうした理解が巡幸路周辺に限定されるものではなく、広範な地域にわたって現れたという事実である。この地域的広がりという点に関連し、月脚は、南部巡幸に対する抵抗運動が「一君万民」的な皇帝観から行われたものであるのに対し、西北巡

⁵⁴ 趙景達『異端の民衆反乱』, p. 430, 月脚達彦『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 p. 296。

幸での抵抗運動は「忠君愛国」的な皇帝観にもとづいてもっぱら行われたと性格づけしているが⁵⁵、民衆における一君万民的皇帝観の広がりを射程に収めない疑問のある評価である。その評価は、西北巡幸における反日運動を、先述した国旗掲揚事件に代表させて性格づけしたものであり、ここで見たような流言蜚語がたとえば南部巡幸に際して北西部地域や巡幸が行われていない地域にまで広がっていた事実を看過している。

そして、こうした民衆の皇帝に対する危機意識は、釜山および馬山で行われた日本艦隊への皇帝臨幸によってさらに高まることとなった。艦隊派遣は、日韓皇室の親睦を演出するとともに、日本の威容を朝鮮官民に誇示するために伊藤の発案によっ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が（⑨232）、こうしたセレモニーに対する釜山の民情について治安当局者は、第二艦隊旗艦吾妻の臨観に際し、軍艦来航をいぶかしがる民衆が、皇帝を日本に連れ去るための手段ととらえ、皇帝の宿泊施設である行在所前において徹夜で最後の別れを惜しもうとしたことを報告している（⑨264）。また『大韓毎日申報』は、皇帝を日本に渡航させるものといぶかって 4000 名あまりが決死隊を組織したという消息や、乗艦しようとする皇帝を阻止するために衣服を道路に脱いでさえぎったこと、用意していた 60 艘の木船で軍艦を包囲したことなどを報じている⁵⁶。また『梅泉野録』によれば、港口に群がり、皇帝の車駕を護持しようとする示威運動を行った釜山の民衆は数万人に上った⁵⁷。示威運動に参加した人数は史料によって大きく開きがあるが、その数字の違いは本質的な問題ではない。より重要なのは、伊藤が日本の富強を誇示するために派遣させた日本の軍艦が、皇帝を連れ去るための手段として民衆の目に映ったという点である。こうした民衆の反対の動きを目の当たりにし、伊藤は皇帝を乗艦させて釜山湾内を航行することをあきらめざるをえなかった⁵⁸。こうした皇帝の渡日・拉致という流言に対する民衆の示威運動といった動向に対し、治安当局は行幸が滞りなく進むにつれて民衆の「疑惑」が解け、行幸を歓迎するようになったと報告しているが（⑨264-265）、こうした理解は楽観的にすぎた。たとえば次の巡幸地である馬山において、民衆の「憤鬱之心」に直面した伊藤は途中で演説を切り上げる羽目に陥った⁵⁹、西北巡幸においても朝鮮民衆に同様の「疑惑」が再燃したからである。西北巡幸でもやはり皇帝を日本に連行するための準備であり、巡幸は皇帝の意思によるもので

⁵⁵ 月脚達彦『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 p. 301。

⁵⁶ 『大韓毎日申報』1909年1月17日付「釜民献忠」。

⁵⁷ 『梅泉野録』, p. 483。

⁵⁸ 『続陰晴史』下（国史編纂委員会，ソウル，1960年），p. 277。

⁵⁹ 『大韓毎日申報』1909年1月17日付「馬港民気」。

はないという理解が頻発した (⑩276)。さらに平壤では、西北巡幸は、巡幸途上、元山から日本へ皇帝を連行しようとする日本の策略によるものと見なし、義州への巡幸を阻止しようとして平壤で決死隊の結成が企てられたという (⑨329)。日本に対する民衆の不信感は、還幸後においても、「今回西南地方ニ巡幸シ、無事還幸セラレタルモ、之レ日本人ノ計略ニシテ、韓国人ヲシテ疑念ナカラシメ、然ル後国外ニ連レ行カントスル」(⑨350) とする流言を招き、また、太皇帝高宗を日本に連れ去る布石としてまず純宗を巡幸させるという『大韓毎日申報』に掲載された流言につながっ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⁶⁰。民衆は、伊藤をはじめとする数多くの日本人が陪従する皇帝巡幸という一大イベントから政治的変動を予期せざるをえなかったものであり、その過程でむしろ日本への反発を強めていた。事実、1908年4月をピークに同年末にかけて減り続けていた義兵と治安機構との衝突回数は、巡幸後の1909年3月から4月にかけて逆に増えていく⁶¹。徐々に民心が日本の施政になびいているという日本側の見立てはまったくの希望的観測にすぎなかった。皇帝の権威に依拠しながら日本の韓国「指導」を正当化しようとする伊藤の意図は、民衆の皇帝幻想の前に完全に裏目に出たのである。

おわりに

以上、韓国皇帝の南北巡幸を事例として統監伊藤博文の対韓政策と朝鮮社会との相克状況を検討してきた。統監伊藤博文は、1907年に締結された第3次「日韓協約」を中心とする朝鮮植民地支配体制＝第3次日韓協約体制を成立させた。それは韓国の漸進的な併合を目指す過渡的な統治体制であり、また伊藤の併合構想は実際に行われた韓国併合による直接統治ではなく、たとえば自治植民地のような形態で韓国を日本に編入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第3次日韓協約体制の下で伊藤は近代化政策を進めて、義兵闘争や愛国啓蒙団体による救国運動など広範な抵抗運動に対応する一方、韓国皇帝の権威を利用した民心収攬策を進めていった。そうした伊藤の皇帝利用策は、王朝末期の政治的混乱と対外危機感の高揚によって従来の統合理念が動揺するなかで甲午改革以降に進められた国民創出運動で涵養されていた「忠君愛国」的皇帝観を日本の支配に適合的に再編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り、皇帝の南北巡幸はその最たるものであった。伊藤の対韓政策は朝鮮民衆と共有しうる統合理念を創出しようとしたもの

⁶⁰ 『大韓毎日申報』1909年1月12日付雑報「韓皇陛下의 地方巡狩하시는 理由」。

⁶¹ 慎蒼宇『植民地朝鮮の警察と民衆世界』, p. 223。

であり、物理的暴力にもっぱら依拠した植民地統治方式ではないという意味で、三・一独立運動後に展開される文化政治の先駆的形態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ものである。

しかし皇帝巡幸を通じて伊藤は、帰服を賭した義兵はもちろん、朝鮮民衆のさまざまな形での反発に遭遇することとなった。皇帝と民衆とが儒教的民本主義を媒介にして原理的に直接結びつくという一君万民的な勤皇思想が、甲午農民戦争および大韓帝国期に行われた民衆の変革運動において朝鮮社会に広く受容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こうした一君万民的な皇帝幻想を支えたのは民衆の社会正義実現への希求であり、それは日本の統治が過酷なものとなればなるほどより先鋭化されざるをえなかった。そして伊藤が朝鮮民衆の民心帰服を図ろうとした皇帝巡幸は、皇帝の日本への拉致という流言が暗示するように日本に拘束された皇帝像を人々に現前化させ、またその拘束が亡国への胎動として理解されることによって民衆の始原的ナショナリズムをより掘り起こしていく。皇帝に対する危機意識が国家意識の高揚へと流れ込んでいく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こうして、甲午改革以降涵養された忠君愛国的論理にもとづく皇帝の支配イデオロギーを民心収攬策に利用しようとする伊藤の試みは、朝鮮社会に深く根差した一君万民的皇帝観の前に挫折させられていく。したがって韓国を併合するに際し、第3次日韓協約体制を挫折せしめた朝鮮民衆のナショナリズムの源泉を断ち切らねばならないことが日本の政治家に痛感されるに至る。日本政府が1909年7月に韓国併合を方針化すると同時に、「韓国ノ併合ト同時ニ、同皇室ヲシテ名実共ニ全然政権ニ関係セザラシメ、以テ韓人異図ノ根本ヲ絶ツコト」と韓国皇帝の政治的無力化を唱えたのは決して偶然ではない⁶²。伊藤の韓国併合構想である第3次日韓協約体制は、直接的には、伊藤の統監辞任そして暗殺という形で頓挫したように見える。したがって従来の韓国併合史研究は、伊藤の統監辞任および暗殺を日本の対韓政策の転機として位置づけてきたのであるが、こうした見解は、第3次日韓協約体制下の植民地政策と朝鮮社会との相関関係を踏まえない、朝鮮史の文脈への理解を欠いた皮相的なものである。伊藤博文が主導した第3次日韓協約体制は、本質的には朝鮮社会との連関性において挫折していった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うして物理的暴力による弾圧を行う一方で新たな統合理念を示して民心を収攬しようとする伊藤の統治構想が、伝統的な政治文化にもとづく民衆の反発の前に挫折した以上、その統治方式は物理的暴力に一元化されていくことになる。そこに武断統治が登場する背景があったのである。

⁶² 外務省編『小村外交史』（原書房，1966年復刻），p. 842。

最後に、冒頭に掲げた報告者の問題関心を再度強調しておく。伊藤博文の対韓政策を評価するにあたって被従属地域との連関性を埒外に措き、日本政治史の延長線上で理解する枠組みは、植民地支配の本質から目をそらそうとするものにほかならない。森山茂徳の研究以来、日朝関係史が朝鮮側の動向を組み込むようになってきたことを考えるとき、伊藤博文と山県有朋ら陸軍との対立で韓国併合過程を描くという先祖がえりにも等しい枠組みが再提示され始めているのは論外であるが、帝国主義本国内の政治的葛藤・対立を植民地に敷衍して植民地主義・植民地政策を把握しようとする姿勢は、近年の「帝国史」研究のなかで再生産され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あらためて被従属地域・植民地社会に視点を置いた研究が必要となっている。日韓二国間の歴史認識に横たわる溝を埋め戻すために日本の韓国併合過程に関する研究が寄与できることはもちろん多い。しかしより重要なのは、日本の韓国併合過程を世界史として理解するための枠組みを構築することである。被従属地域の社会構成が植民地支配のあり方をどのように規定するのかという下からの視座を考慮した国際政治史研究および植民地政治史研究の試み、そしてシステム内化した民族主義研究を相対化しながら帝国主義の構造を総体的に検討する試みは、ようやくその緒に就いたばかりである。

伊藤博文の韓国統治と朝鮮社会（要旨）

小川原宏幸

本報告では、1909年初頭に行われた韓国皇帝の南北巡幸を事例にして、①統監伊藤博文がもっていた韓国併合構想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り、その併合構想において韓国皇帝は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ていたのか、②伊藤の皇帝利用策に対して朝鮮社会はどのように反応したのか、という課題について検討する。

伊藤は、韓国皇帝の権威を利用した民心収攬策を進めていくが、その皇帝利用策は、甲午改革以降に進められた上からの国民創出運動の中で涵養されていた「忠君愛国」的皇帝観を日本の支配に適合的に再編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り、そうした皇帝利用策の最たるもの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のが南北巡幸であった。伊藤は皇帝の権威によって義兵の沈静化を図るとともに、民心収攬を果たそうとしたのである。

しかし、皇帝巡幸を通じて朝鮮民衆のさまざまな形での反発に遭遇した。朝鮮民衆の日本への反発は、愛国啓蒙運動等で培われた「忠君愛国」的な皇帝観にもとづく民族主義的ナショナリズムによるものというよりは、日本の支配を媒介にしながら強まりつつあった始原的なナショナリズムによるものであったという側面が大きい。日本が統治したこの時期の朝鮮では、皇帝と民衆とが儒教的民本主義を媒介にして原理的に直接結びつくという一君万民的な勤皇思想が、甲午農民戦争および大韓帝国期に行われた民衆の変革運動において社会に広く受容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こうした一君万民的な皇帝幻想を支えたのは民衆の社会正義実現への希求であり、それは生活主義的な動機にもとづいているがゆえに、日本の統治が過酷なものとなればなるほどより先鋭化されざるをえなかった。日本、特に伊藤博文の韓国統治に対する朝鮮民衆の集合心性の所在を端的に示すのが、皇帝の日本への拉致という流言蜚語であった。これが暗示するように日本に拘束された皇帝像を人々に現前化させ、またその拘束が亡国への胎動として理解されることによって民衆の始原的なナショナリズムをより掘り起こしていく。皇帝に対する危機意識が国家意識の高揚へと流れ込んでいく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て、忠君愛国的論理にもとづく皇帝の支配イデオロギーを民心収攬策に利用しようとする伊藤の試みは、朝鮮社会に深く根差した一君万民的皇帝観の前に挫折させられていく。したがって韓国を併合するに際し、第3次日韓協約体制を挫折せしめた朝鮮民衆のナショナリズムの源泉を断ち切らねばならないことが日本の政治家に痛感されていった。

こうして皇帝の支配イデオロギーを民心収攬策に利用しようとする伊藤の試みは一君万民的皇帝観の前に挫折させられ、物理的暴力を前面に押し出した武断政治が登場するに至ったのである。

(한글요약문)

이토히로부미의 한국통치와 조선사회 (요지)

오가와라 히로유키(小川原宏幸)

본 보고에서는 1909년 초두에 행해진 한국황제의 남북순행을 사례로 해서 ①통감 이토히로부미가 가지고 있던 한국병합구상이 어떠한 것이었고, 그 합병구상에서 한국황제는 어떻게 위치지워졌을까 ②이토의 황실이용책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토는 한국황제의 권위를 이용한 민심수렴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황제이용책은 갑오개혁 이후에 추진되어왔던 위로부터의 국민창출운동 속에서 함양되어 왔던 「충군애국」적 황제관을 일본의 지배에 적합하게 재편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한 황제이용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순행이었다. 이토는 황제의 권위로 의병의 침정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민심수렴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황제순행을 통해서 조선민중의 다양한 형태의 반발에 조우한다. 조선민중의 일본에 대한 반발은 애국계몽운동 등에서 배양된 「충군애국」적인 황제관에 기초한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일본의 지배를 매개로 하면서 강화되고 있는 원시적인 내셔널리즘에 의한 것이었다는 측면이 크다. 일본이 통치한 이 시기의 조선에서는 황실과 민중이 유교적 민본주의를 매개로 해서 원리적으로 직접 결합된다고 하는 일군만민적인 근황사상이 갑오농민전쟁 및 대한제국기에 일어난 민중의 변혁운동에서 사회에 널리 수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일군만민적인 황제환상을 지탱했던 것은 민중의 사회정의실현에의 희구였고, 그것은 생활주의적인 동기에 의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가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보다 참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특히 이토히로부미의 한국통치에 대한 조선민중의 집단심성의 소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황제를 일본에 납치한다는 유언비어였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처럼 일본에 구속된 황제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 구속이 망국의 태동으로서 이해됨으로써 민중의 원시적인 내셔널리즘을 한층 부추겼다. 황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국가의식의 고양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충군애국적 논리에 근거한 황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민심수렴책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토의 시도는 조선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일군만민적 황제관 앞에 좌절되어 간다. 따라서

한국을 병합할 때, 일본정치가는 제 3 차 한일협약체제를 좌절시킨 조선민중의 내셔널리즘의 원천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통감했다. 이리하여 황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민심수렴책으로 이용하려고 한 이토의 시도는 일군만민적인 황제권 앞에서 좌절되어 물리적 폭력을 전면에 내세운 무단정치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小川原宏幸 :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통치와 조선사회」에 대한 코멘트

이성환

小川原 교수의 논문은 전체적으로 방법론, 이토 히로부미의 자치식민지론, 순종의 순행과 이토 구상의 좌절이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방법론에 대해서이다. 필자(小川原)는 특히 식민지 연구에 있어서 피종속지역의 사회구성이 식민지 지배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물론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상호규정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할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양자가 등가(等價)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양자가 등가적이라면 식민지 지배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피종속지역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지배층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연구에서는 피지배지역의 사회 구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배층의 억압적, 침략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많은 연구가 일본사의 문맥 속에서 한일합방을 논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자기와 방법론과 관점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최근 발간된 이토 유키오, 이성환편저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를 전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자기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다른 연구를 폄하하는 학문적 독선으로써 연구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다양한 방법론과 관점의 존중이야 말로 연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며, 이러한 개방적 태도가 학문 발전의 원동력이다. 학문과 연구에 있어서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비판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저항의 계기를 근대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의병에 대한 논의를 간과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일본사적 문맥에서 이토의 대한국정책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지적은 당시 주류적 사회현상이었던 애국계몽운동 속에서 저항의 계기와 논리를 재발견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의병에 관한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계의 연구 성과를 각 논문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의병에 대한 별도의 장(章)을 구성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나, 이는 형식의 문제이지 본질이 아니다. 또 필자는 근대성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한일양국의 근대상(近代象)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못 이해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책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한일양국의 근대상이 결코 같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토의 통치정책이 모순적이라는 점을 각 논문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후자 즉 한일합방연구에 있어서 일본사적 문맥이 중요하다는 점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지배자 층의 피지배자 층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다시말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선사적 관점에 치우쳐 한국의 저항과 그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실패만을 강조해서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일본의 침략정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주장과 지적은 관점과 주장의 차이일 뿐으로 그것이 비판이나 매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둘째, 필자(小川原)가 주장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자치식민지론에 대해서 이다.

1. 먼저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병합구상 메모(각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토가 합방을 결정한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 메모는 작성시기가 매우 불분명하다. 이토의 합방결정시기는 을사조약 당시, 헤미그밀사 사건 전후, 1909년 4월 통감사임 직전 등 다양한 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의 내용과 문체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당시 조선은 8도가 아니고 13도 였으며(한국통치를 장악하고 있던 통감으로써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틀리게 기술하기는 어렵다), 또 1, 2, 4,번은 정확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3번 문장은 일본어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체로 되어 있다. 그 외 이 메모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이 메모가 반드시 이토가 작성했다는 확증이 없다. 이처럼 불확실한 메모에 의존하여 이토의 합방구상을 구체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이 논문 전체의 논지 전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식민지통치기간 동안 실현되지 않았던 의회를(대만도 역시 마찬가지임) 이 시점에서 구성하려 했다는 점도 메모의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가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통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자료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토의 병합구상을 자치식민지로 규정하고 ‘제3차한일협약체제’는 이를 위한 과도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연속선상에서 순행이 한국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제3차한일협약체제는 실패하고, 무단적인 식민지통치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다른 정치가와 달리 이토가 ‘자치’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토의 통치에 있어서 ‘자치’는 종래보다 훨씬 더 강압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3차한일협약을 통해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3차한일협약체제는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자치식민지로 가기 위한 과도체제가 아니라 무단적인 직접 식민통치로 가기 위한 과도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순종의 순행에 대해서이다.

1. 필자(小川原)의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상당부분 쓰키야시(月脚達彦) 교수의 논거에 의존하면서 순행은 이토의 의도와는 달리 ‘황제환상’을 매개로 한국 민중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제3차한일협약체제를 좌절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토는 왜 2차에 걸쳐 순행을 강행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남부 순행에서 이토가 연설을 중지할 정도로 반일적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그 후의 서부 순행은 중지하는 것이 자연스런 전개이다. 이와는 반대로 순종의 순행은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한국 측의 연구도 있으며(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남순행 연구」), 서부순행직전 가쓰라 수상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토는 순행에 대한 기대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1909년 9월에서 11월에 걸친 남한대토벌작전에서 보듯이 전라도에서 의병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순종의 순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일까. 즉 순행이 이루어 지지 않은 지역에서 의병운동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순행과 관련하여 순종이 당시 한국인의 민족주의를 자극할만한 충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고종은 시종일관 반일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반일민족주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당시 한국민중과 고종은 반일이라는 일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고 일본에 의해 꼭두각시 황제로 즉위한 순종이 반일이라는 측면에서 민중들과 어느 정도 강한 일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당시 민중들로부터 “천자치암(天資痴闇)”으로 야유를 받을 정도로 순종은 황제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었으며, 또 고종의 강제퇴위 이후 일부에서 공화제가 등장하는 것도 순종의 권위 실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만주국의 부의 화에의 존재와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괴뢰 황제인 부의가 만주족의 민족주의를 자극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황제환상에 의한 민중중심의 민족주의의 고양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민중 중심의 민족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당시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민족주의를 무력투쟁적 측면에만 가두어 왜소화시키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순행과정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반일적 태도는 황제=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킨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반감의 표출로 봐야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일군만민론 등은 일본의 천황관을 한국 군주관에 그대로 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군주제와 천황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의병운동을 객관화하려하고 있으나, 당시 전근대적 사회관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시되는 민중의 반일행동과 사회정의를 직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무리한 일반화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필자의 발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당시 일본의 대한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은 목표로 하고 있던 한일합방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대한정책이 전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목표로 한 한일합방은 성취되었다는 논리 전개이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구조를 분석하면서 모든 전쟁 지도자가 전쟁을 반대했으나 실제로 전쟁은 일어났다. 그래서 전쟁책임자는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은 지금까지의 대한정책에 대한 분석의 틀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소박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다시 말하면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한국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토의 정책은 실패했으나, 일본의 대한국정책(한일합방)은 성공했다는 것이 된다. 이는 이토의 한국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전체적인 일본의 대한국정책의 침략성을 간과하게 하는 중대한 왜곡을 내포한 것이다.

小川原教授の論文は全体的に方法論、伊藤博文の自治植民地自治論、純宗の巡行と伊藤構想の挫折という三つの部分で構成されている。

第一に、方法論についてである。筆者(小川原)は特に植民地研究において被従属地域の社会構成が植民地支配のあり方をどのように規定するのかを非常に重視している。もちろん、植民地と被植民地の相互規定性については基本的に同意する。しかし、本質的に両者が等価ではないという点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もし、両者が等価であるとしたら、植民地支配そのものが成立しないはずである。また被従属地域の影響を過度に強調すれば、支配側の帝国主義的侵略政策を見過ごす危険性がある。そのため、植民地研究では被支配地域の社会を把握するのも重要だが、支配側の侵略的政策の構造を把握することがより重要であるといえよう。多くの研究が日本史の文脈の中で日韓併合を論じている理由もここにある。

本論文で筆者(小川原)は本人と方法論と観点を別にするという理由で、最近発刊された伊藤之雄・李盛煥編著『伊藤博文と韓国統治』を全体的に批判している。これは本人の主張に過度にこだわって他の研究をさげすむ学問的独善であり、研究者が最も戒めるべきところである。多様な方法論と観点の尊重こそ研究者の最も基本的な姿勢であり、このような開放的な態度が学問発展の原動力になる。学問と研究において絶対真理は存在しえないという命題を想起する必要がある。

筆者の批判の根拠は大きく二点に整理することができる。ひとつは抵抗の契機を近代性にのみ認めて義兵に対する議論を意識的に看過したという点であり、いまひとつは、日本史の文脈で伊藤の対韓政策を論じ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

前者のような指摘は、当時主流の社会現象であった愛国啓蒙運動の中で抵抗の契機と論理を再発見しようとする試みであったことを認識しなかった結果だと考えられる。それでも、義兵に関する部分を看過したわけではなく、今まで蓄積された学界の研究成果を各論文が十分に反映している。義兵に関する章立てをしなかったという点を指摘しているように推測されるが、これは形式の問題であって本質的な問題ではない。また筆者は、日韓双方が抱いていた近代像が一致していたことを前提に立論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が、これこそこの本の内容を誤読している部分である。この本が最も強調しているのは、日韓両国の近代像は決して同じものではなく、そのために伊藤の統治政策は矛盾に満ちていたという点である。それを各論文が繰り返して示しているのである。

後者、すなわち日韓併合史研究において日本史の文脈が重要だという点は、上で指摘したとおり、支配者側の被支配者側に対する帝国主義的侵略政策を浮彫りに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いう点を強調することで変えたい。言い換えれば、筆者が主張するように、朝鮮史の観点を過度に強調すると韓国の抵抗とそれに対する日本の政策的失敗だけが浮彫りになり、結果的に成功した日本の侵略政策の全貌を把握できなくなる恐れがある。

以上のような筆者の主張と指摘は、観点と主張の違いであり、それが批判や罵倒の対象にな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点を改めて強調しておきたい。

第二に、筆者(小川原)が主張する伊藤博文の自治植民地論についてである。

1. まず、本論文で最も重要な資料として使っている伊藤博文の韓国併合構想メモ(覚書)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このメモは、伊藤が併合を決定した後に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とすれば、作成時期が不明確である。伊藤が併合を決定した時期には、乙巳条約当時、ハーグ密使事件前後、1909年4月統監辞任直前などの説があるからだ。

このメモの内容と文体にも疑問がある。当時朝鮮は八道ではなく十三道であり(韓国統治を掌握していた統監としてはこのような基本的事実を間違えて記述するはずはないであろう)、また一、二、四番は正確な文章で記述されているが、三番の文章は日本語としては理解し難い文体になっている。より根本的にはこのメモの原本が確認できないという点である。これらの点を考慮にいと、このメモは、伊藤博文が直接作成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確証がない。このような不明確なメモに依存して伊藤の併合構想を具体的に論じることは、この論文全体の論旨に対する疑問を生じさせる。内容においても、植民地支配期間中にも実現しなかった(台湾も同様)議会の設立をこの時点で構想したということも、メモの内容が現実性に乏しいことを示し、信憑性を弱くする。このメモが伊藤博文の韓国統治イメージに大きく影響を及ぼしているだけに、綿密な資料検証が必要だと言えよう。

2. これと関連して、筆者は伊藤の併合構想を自治植民地構想であると規定し、「第3次韓日協約体制」はこのための過渡体制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そして、純宗皇帝の巡行が韓国民族主義を刺激することによって第3次韓日協約体制は頓挫し、武断的植民地統治を招いたと主張している。日本の他の政治家とは異なり伊藤が「自治」を比較的強調した側面はある。しかし、伊藤の統治における「自治」は、従来のものより一層強圧的な統治を目指していた第3次韓日協約の締結を以て、その意味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このような観点からすれば、第3次韓日協約体制は、筆者が強調しているような自治植民地への過渡体制ではなく、武断的な直接植民支配へ向かうための過渡体制であると理解する方が、整合性がある。

第三に、純宗皇帝の巡行についてである。

1. これについての筆者は月脚達彦教授の論拠を援用しながら、巡行は伊藤の意図に反して「皇帝幻想」を媒介にして韓国民衆の民族主義を刺激し、その結果、第3次韓日協約体制が挫折させられたと指摘している。ここで伊藤はどうして二回にかけて巡行を押し切ったのかということに疑問が残る。言い換えれば、筆者の指摘通り、南部巡行で演説を中止せざるを得ないほど民族主義を刺激する兆候があったとすれば、その後の西北部巡行を中止することが自然な成り行きであろう。筆者の立場とは違って、伊藤にとって、純宗皇帝の巡行はある程度成功したという韓国側の研究もあり(李・ワンム「大韓帝国期純宗の南巡行研究」2007)、伊藤自身も西北部巡行の直前に桂首相へ送った手紙で、巡行に対する期待を表しているのである。また、1909年9月から11月にかけて南韓大討伐作戦で見られるように、全羅道で義兵運動が活発だったことも純宗の巡行は関連があるだろう。純宗の巡行が行われて

いない地域で義兵運動が活発に展開されていたのである。

2. そして高宗皇帝に比して純宗皇帝が当時韓国人の民族主義を刺激するほどの十分な象徴性を有していたのかについても検討が必要である。高宗は始終一貫反日的な姿勢を堅持することによって反日民族主義の象徴性を持っており、それによって当時の韓国民衆と高宗は、反日という側面である程度一体性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高宗が強制退位させられ、その後を継いで日本の傀儡皇帝として即位した純宗が、反日という側面で民衆とどの程度一体性を持っていたのかについては綿密な検討が必要だろう。例えば当時「天資痴闇」と揶揄されるほどに純宗は皇帝としての権威を失墜していた。また、高宗の強制退位後、一部で共和制が登場するのも純宗の権威失墜と関連があるだろう。極端な言い方をすれば、純宗は満州国の溥儀皇帝のような存在としても考えることができる。満州国の溥儀は満州族の民族主義を刺激したことはなかった。

このような側面から見ると、本論文は純宗に対する皇帝幻想による韓国民族主義の高揚を過度に強調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同時に、民衆中心の民族主義を強調しすぎることによって、当時多様な階層で重層的に展開されていた韓国民族主義を武力闘争のみに閉じ込め、韓国民族主義運動全体を矮小化してしまっている。なお、巡行過程で現れた民衆らの反日的態度は皇帝=国家の権威を失墜させた伊藤博文に対する民衆の反感の表れとして見ることもできよう。

そして本論文で筆者が指摘している一君万民論等は日本の天皇観を韓国君主観にそのまま当て嵌めたものと見られる。これは韓国の君主制と日本の天皇制が本質的に異なるものであるという点を見過ごしたものである。そして社会正義という概念で義兵運動を客観化しようとしているが、当時の民衆が前近代的社会関係から脱していたかどうかも疑問視される状況下で民衆の反日行動と社会正義とを直結させるのは論理の飛躍であり、無理な一般化である。

最後に、今までの大部分の研究では、当時の日本の対韓国政策は失敗したと指摘している。しかし、日本は目標にしていた韓国併合を成し遂げた。言い換えれば日本の対韓政策は悉く失敗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は目標としていた韓国合邦を達成したという論理展開だ。これは丸山真男が日本軍国主義者の精神構造の分析において、「すべての戦争指導者は戦争に反対したが実際に戦争は起きた。だから戦争責任者はいない」というのと同様の論理矛盾である。このような矛盾は、今までの対韓政策に対する分析枠組みを再構成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素朴な疑問へつながる。言い換えれば、筆者の主張によると、対韓政策を主導した伊藤の政策は失敗したが、日本の対韓政策（日韓併合）は成功したということになる。これは、伊藤の韓国政策を批判することで全体的に日本の対韓政策の侵略性を看過させる危険性のある重大な歪曲を内包したものである。

이토 히로부미와 주한일본군 헌병대

이승희

1. 머리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강압에 의해 1905년 11월 17일 이른바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고, 다음해 3월 2일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부임해 왔다. 이토의 한국 치안구상은 러일전쟁 시기를 통해 비대해진 군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본인 고문경찰(顧問警察)을 활용하여 한국경찰을 정비·확충해 나가려는 것이었다. 이 방침에 따라 1906년 6월과 190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무확장(警務擴張)’이 이루어져 일본인과 한국인경찰이 대규모로 증원되었다. 하지만 고종황제 강제퇴위와 한국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어 1907년 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의병투쟁이 격화되자, 한국경찰만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이토는 군의 경찰기관인 주한 헌병대 기구의 확장을 통해 한국의 ‘치안유지’를 꾀하기에 이른다.

이토와 주한일본군 헌병대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토의 한국 치안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¹⁾ 현존하는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토가 헌병을 중시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토가 추진한 헌병대의 통감 예속화와 헌병보조원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한 일본군 헌병대에 관한 이토 히로부미의 인식을 규명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통감의 군 지휘권 문제와 헌병

러일전쟁 이전부터 한국에 주둔하면서 일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병을 탄압하는 등 대한 침략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던 일본군, 즉 한국주차군은 통감부 설치와 이토의 통감직 취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문관계통인 이토가 통감직을 수락하는 대전제로서 주한 일본군에 대한 지휘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토는

1) 森山茂徳, 『近代日韓關係史研究-朝鮮植民地化と國際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87, 松田利彦, 「朝鮮植民地化の過程における警察機構(1904~1910)」(『朝鮮史研究會論文集』31, 1993.10), 海野福壽, 『韓國併合の研究』, 岩波書店, 2000, 慎蒼宇, 「憲兵補助員制度の治安維持政策的意味とその實態-1908~1910年を中心に」(『朝鮮史研究會論文集』39, 2001.10) 등.

자신의 구상대로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실적에 바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 일본군을 제어할 수단이 필요했으나, 군부는 이를 납득하지 못했다. 군부는 ‘통수권 침범’을 명목으로 이에 반발하여 정부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고,²⁾ 이토는 “그렇다면 난 통감은 안할 것이다”라고까지 말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³⁾

결국 육군의 원로인 오오야마 이와오(大山巖)와 메이지(明治) 천황의 중재에 의해 군 수뇌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이토에게 양보하게 되어,⁴⁾ 1905년 12월 21일에 공포된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의 제4조에서는 “통감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한국수비군의 사령관에 대해 병력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⁵⁾고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통감에게 주한 일본군에 대한 ‘병력 사용권’이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주한 일본군 사령관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는 1906년 1월 16일 참모총장으로부터 “귀관은 한국통감으로부터 한국의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명령받을 때에는 이에 응해 적절히 처치해야 한다”는 훈령이 내려왔다.⁶⁾ 또한 1906년 8월 1일에 공포된 ‘한국주차군사령부 조례’에서도 제3조에서 “군사령관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보지(保持)하기 위해 통감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급한 상황일 때에는 적절히 이를 처치하고, 나중에 통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즉시 육군대신 및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⁷⁾고 정해졌다.

이로 인해 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 시기 무력에 근거하여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주한 일본군 사령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다. 당사자인 하세가와를 비롯한 주한 일본군의 반발은 매우 심각했다. 당시의 신문기사에도 “통감부의 부제(府制)에서 통감은 필요한 경우 한국군사령관에게 병력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재한(在韓)의 군인은 이에 불복하고, 오오타니(大谷) 참모장은 이에 관해 야마가타, 오오야마 제 원로에게 품의하기 위해 귀국했다”⁸⁾고 보도되고 있는 것에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제한된 ‘지휘권’이라 할지라도 이를 문관인 통감이 지니는 것에 대해 주한 일본군측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세가와 사령관 자신도 테라우치

2) 山本四郎, 「韓國統監府設置と統帥權問題」(『日本歴史』336, 1976), 小川原宏幸, 「日露戰爭期日本の對韓政策と朝鮮社會-統監の軍指揮權問題における文武官の対立を手がかりに」(『朝鮮史研究會論文集』44, 2006.10, 48~55쪽), 長谷川香苗, 「韓國統監職と伊藤博文」(『道歴研年報』7, 2007.3, 26~27쪽) 등 참조.

3) 平塚篤 編, 『伊藤博文秘録』, 春秋社, 1929, 315쪽.

4) 大山元帥傳編纂委員 編, 『元帥公爵大山巖』, 大山元帥傳刊行會, 1935, 798~799쪽.

5) 칙령 제267호, 일본내각 『官報』, 1905년 12월 21일.

6) 『朝鮮駐劄軍歷史』(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別冊1, 巖南堂書店, 1967에 수록), 96~97쪽.

7) 칙령 제205호, 일본내각 『官報』, 1906년 8월 1일.

8) 「一部軍人の言動」, 『萬朝報』, 1906년 2월 4일.

마사타케(寺内正毅) 육군대신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이 엄중히 항의했다.

통감부 관제 및 조례 모두 각하의 부서(副署)로 발포되었습니다만, 제4조에 통감은 사령관에게 출병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령관은 통감에게 예속된 자입니까? 사단장이라고 하더라도 천황에게 직접 예속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군 사령관이 직접 예속되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일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천황에게 직접 예속되는 사령관에게, 통감은 명령할 권능이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천황 외에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뒤의 조문에 통감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는 사령관 또는 총무장관을 대리하라는 등이 있으나, 군대 지휘관에게 문관제도의 통감직무를 대리시키는 것은 군기(軍紀) 상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후략] 9)

서한에서는 반대의 이유로써 천황에 대한 예속문제와 군기 상의 문제를 들고 있었지만, 문관 통감인 이토에 대한 반감과 대등의식이 크게 관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토가 통감부 관제 제정 과정에서 통감직을 대만총독과 같은 정부 예속이 아니라 “천황에 직례(直隸)”하도록 규정한 이유 중 하나가 주한 일본군 사령관도 천황에 직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¹⁰⁾ 이 서한의 후반부에는 통감부의 치안유지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한국에서 기존의 ‘군사경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혀 있는 등, 통감부에 대한 불신감이 표출되어 있었다. 하세가와는 1906년 1월 16일 훈령이 하달된 후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었으며,¹¹⁾ 훗날 부통감의 자리가 신설되어 그 인선의 후보로써 하세가와의 이름이 신문 지상에서 거론되었을 때에도 “솔직히 통감이라면 몰라도, 부통감이란 실로 한심스럽지 않은가”¹²⁾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토의 통감 취임에 대해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던 하세가와가 통감의 군사와 관계된 명령에 쉽게 따르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하세가와 휘하의 한국주차군 수비대는 영·미의 비판을 두려워한 이토의 자중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병과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토벌’을 자행하여 이토를 곤란하게 만들었다.¹³⁾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이토는 주한 일본군 수비대 대신 경찰기구인 헌병대에 대한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06년 2월의 칙령 제18호에서는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은 군사경찰 외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관장한다. 단 행정경

9) 하세가와가 테라우치 앞으로 보낸 서한, 1905년 12월 30일(『寺内正毅文書』38-14,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10) 長谷川香苗, 앞의 논문, 26쪽.

11) 하세가와가 테라우치 앞으로 보낸 서한, 1906년 1월 25일(『寺内正毅文書』38-16), 1906년 8월 5일(『寺内正毅文書』38-18).

12) 하세가와가 테라우치 앞으로 보낸 서한, 1907년 10월(『寺内正毅文書』38-29).

13) 李升熙, 『韓國併合と日本軍憲兵隊』, 新泉社, 2008, 83~86쪽.

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는 통감의 지휘를 받는다”¹⁴⁾고 규정하여, 통감에게 헌병의 행정·사법경찰에 관한 지휘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07년 2월에는 통감부훈령 ‘헌병대 경찰집무심득(心得)’을 발표하여 헌병이 행정·사법경찰을 집행할 때 다른 경찰기관과의 관할사항, 책임·권한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제어하려고 했던 것이다.¹⁵⁾ 그리고 1907년 10월 8일에 공포된 칙령 제323호 ‘한국주차헌병에 관한 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헌병대의 배치, 파견, 복무규정까지를 통감이 장악하였다.

제1조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은 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을 관장하고, 그 직무의 집행에 대해서는 통감에게 예속되며, 또한 한국주차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겸해서 군사경찰을 관장한다.

제2조 헌병대 본부의 위치 및 분대의 배치 및 그 관구는 통감이 이를 정한다.

제3조 통감은 필요시 일시적으로 헌병대의 일부를 그 관구 밖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4조 헌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통감이 이를 정한다. 단 그 군사경찰에 관한 것은 한국 주차군사령관이 이를 정한다.

제5조 상기 각조의 규정 외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대해서는 헌병조례에 의거한다.¹⁶⁾

이러한 규정 등을 통해 헌병대의 활동, 특히 군사경찰을 제외한 일반 경찰업무에 관해서는 완전히 통감에게 예속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주한 일본군 수비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병력사용권’만 인정되던 것과 비교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속관계로 인해 오히려 “한국 경찰관은 제도상 통감에게 예속되지 않았고, 통감이 이를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찰관을 통감에 직접 예속된 경찰기관인 헌병의 감독 하에 속하게 하는 것이 순서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말이 나올 정도였다.¹⁷⁾

3. 이토의 한국경찰에 대한 실망과 헌병에 대한 집착

주한 헌병대의 일반경찰 업무를 통감에게 예속시키는 조치가 강화됨과 동시에, 경찰기관으로서의 헌병대의 비중도 증가했고 이는 문관 경찰기관인 한국경찰과의 충돌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1906년 11월 14일 “각 기관들이 그 직무에 열심인 나머지 자칫하면 상호간에 연락이 끊기는 일이 없지 않은” 상황으로, “한국 재임의

14) 일본내각『官報』, 1906년 2월 9일.

15) 朝鮮駐劄軍司令部 編, 『朝鮮憲兵隊歷史』1/11,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16) 일본내각『官報』, 1907년 10월 8일.

17) 『憲兵條例改正ノ件』(陸軍省, 『大日記甲輯』T5-1-1,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제국 관리는 문관이든지 무관이든지, 또한 그 직무가 제국에 속하는지 한국에 속하는지를 막론하고 [중략] 제국의 경영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협력일치(協力一致)’의 훈령이 통감 이토로부터 한국주차 헌병대를 비롯한 기타 기관에 하달될 정도였다.¹⁸⁾

이러한 문·무관 경찰기관간의 대립은 1907년 10월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가 주한 헌병대장으로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헌병기구 확장을 추진하게 된 때부터 더욱 첨예화 되어간다. 헌병기구의 확장은 고종황제의 퇴위와 한국군대 해산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전국에서 의병투쟁이 격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토가 이를 결정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한국경찰에 대한 실망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의 각료들을 소집하여 통감부에서 개최하던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한국의 군사 및 경찰제도는 한마디로 혼란과 무능 그 자체이다. 경찰관은 자신에게 위험이 따르면 곧 도망가버려 인민이 안심하고 경찰에 보호를 맡길 수 없다. 병사들은 군인이 될 능력이 없는 데다 훈련도 아주 게을리하여 무능하다. 병졸 가운데는 심지어 유사시 국가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탄약과 도검을 전당 잡히는 사람까지 있다. 또 교육이 불완전하고 규율이 엄정치 못하여 국가의 간성(干城)으로서 신뢰감을 전혀 주지 못한다. 병사들 가운데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잠시 군문에 들어온 사람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봉급을 받고 있을 때는 군인이지만 일단 일자리를 떠나면 게으르기 때문에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폭도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토는 통감 취임 초기부터 한국의 경찰제도와 군사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병투쟁을 진압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경찰제도를 일본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일본군의 보고를 보면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는 약간의 경찰관이 있었지만, 일단 폭도의 습격을 받으면 즉시 사방으로 흩어져 거의 저항할 여력도 없이 오로지 군대가 지원하러 오는 것을 기다릴 뿐으로 전혀 의지할 수 없다”¹⁹⁾고 기술 있듯이 의병투쟁을 진압할만한 무장과 ‘의욕’이 경찰관에게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토는 같은 경찰기관인 헌병의 확장을 통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헌병을 대대적으로 증원할 방안으로서 한인을 채용하여 헌병보조원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공포할 훈령의 초안으로써 이토가 한인 헌병의 이용법에 대해 작성한 원고에서도 “지방의 지리정황을 숙지한 자를 선발하여 이를 일본헌병의 보

18) 「第三節 協力一致ノ訓令」(『朝鮮憲兵隊歷史』2/11).

19) 「韓國內暴徒討伐隊ノ交通連絡及軍需品輸送ノ狀況並將來ニ關スル意見」(陸軍省, 『密大日記』M40-5,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조로 삼아, 한편으로는 진압을 편리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지방인민의 안녕질서를 회복시키길 원한다”²⁰⁾고 적고 있다. 이러한 헌병보조원제도를 구상하고 제안한 것은 아카시라고 여겨지지만,²¹⁾ 이토도 매우 적극적으로 헌병보조원제도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08년 6월 9일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석상에서 이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대신들을 설득하였다.

속고한 결과 나는 이참에 각지에서 많은 수의 군적에 있던 자들로부터 4천명의 한인을 모집하여 이를 헌병보조원으로 삼아 일본의 헌병에 부속시켜, 폭도진압을 전문으로 하고 오로지 각지의 치안유지 임무를 담당시키고자 한다. 다수의 응모자 중에는 과거 폭도의 무리에 들어가 후에 귀순한 자도 섞어야 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째서 내가 이러한 방침을 세웠는지 말하자면, 통제 및 훈련에 있어서 헌병은 경찰에 비해 여러 가지 편의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인 중 경찰관으로서의 소양이 있는 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무경험자를 모집하여 이를 경찰관으로서 교육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중략] 헌병의 임무는 주객이 전도되어 종래는 ‘주’로 군사령관에게 예속되어 통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일은 오히려 ‘객’이었던 규정을 일변시켜, 모두 통감의 지휘명령에 속하게 하여, 단순히 군대에 관한 사항에 한해 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르도록 만들었다.²²⁾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헌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확보하고 통감에게 예속시켰던 이토는 한인 경찰관을 늘리는 것보다 헌병보조원을 대거 확충하여 한국의 경찰기구를 확장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토의 발언 속에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토는 해산군인이나 면직된 경찰관을 헌병보조원으로 채용하여 ‘구제’함으로써 “폭도의 무리에 가담하는 자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토의 주장에 대해 한국경찰의 명목상의 책임자이기도 한 내부대신 송병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나왔다.

일본헌병에 한인을 섞어 넣는다면, 그 중에는 군적에 있던 자, 경관이었던 자, 또는 폭도였다가 귀순한 자도 이에 포함되어, 현재 순검에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인민은 한인 헌병 때문에 더욱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순검과 헌병보조원이 충돌을 일으키는 등의 일이 생기면, 중간에 있는 인민은 쌍방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은 지방의 정황을 생각해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실행해야 할 것이다.²³⁾

20) 「韓國擾亂鎮撫に關し韓國政府をして發せしめたる訓令案」(小松綠 編, 『伊藤公全集』第2卷, 昭和出版社, 1928, 274쪽).

21) 아카시가 테라우치 앞으로 보낸 서한, 1908년 5월 3일(『寺内正毅文書』6-13).

22) 「韓國施政改善に關する協議會第四十一回」(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6·中, 1964, 887~898쪽).

송병준의 지적대로 경찰관과 헌병보조원의 충돌은 과거의 경위 상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태였다. 그러나 이토는 “헌병이란 요는 경찰의 이명(異名)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헌병보조원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로 통제의 편리함에 의거하며, 둘째로 경비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송병준은 끝까지 헌병보조원보다 경찰관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찬동하는 자는 없었고, 이토는 한국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헌병에 대한 신뢰마저 엿보이는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끝까지 헌병보조원 채용을 고집했기에 결국 정식채용이 결정되었다. 협의회 자체가 통감의 시책을 일방적으로 한국정부에 통고하는 장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 이토가 한국경찰의 어떠한 점에 실망하고, 헌병대의 어떠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11일에는 한국칙령 제 31호 ‘헌병보조원 모집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전국에서 한인 헌병보조원 채용이 시작되었다.²⁴⁾

이와 같이 한국경찰에서 마음이 떠난 이토에게 헌병대 기구와 권한 확장에 맞서 끝까지 문관경찰 중심의 경찰제도 개편을 외치는 내부 경무국장 마츠이 시게루(松井茂)의 주장이 통할 리가 없었다. 마츠이는 아카시와 이토에 대해 “제1, 헌병과 경찰을 분리하여 이를 도에 따라 구획할 것”, “제2, 헌병의 본무는 주로 폭도진압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경찰, 사법경찰에 관해서는 한국 경찰관리에게 그 원조를 구할 것”이라는 2개의 안을 제시했으나 이토의 승낙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이토는 “마츠이, 한국의 경찰조직을 헌병 본위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거꾸로 마츠이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한다.²⁵⁾ 마츠이가 거부하자 1908년 7월 이토는 헌병과 경찰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헌병 측에서는 아카시를, 문관경찰 측에서는 오카 키시치로(岡喜七郎) 내부차관을 불러 다음과 같은 협정안을 작성케 하였다.

제1조, 헌병은 한국의 사법경찰에 관해서는 주로 국사범, 흉도 소집 및 집단 강도 등 안녕 평온에 관한 범죄의 수사, 검거를 담당한다. 행정경찰에 관해서는 주로 전항의 예방경찰에 속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조, 전항에서 규정한 헌병의 주 담당 사항 이외의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은 경찰관의 주 임무로 한다.

제3조, 헌병 및 경찰관은 각 주 임무 사항에 대해 공조하기 위해 서로 필요한 통보를

23) 위의 자료.

24) 한국『官報』, 1908년 6월 13일. 한편 일제의 헌병보조원에 대한 평가는 아카시가 “헌병보조원의 성적은 매우 양호하여 그들은 폭도도벌 상 다대한 공을 세우고 현재도 계속해서 공적을 올리고 있다. 만약 이러한 실황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지방에 가서 그들과 2~3일 생활을 같이 해보면 금방 확연해질 것이다. 목하 그들 중 감독이라고 하는 상급직을 맡고 있는 자가 약 297명 있는데, 대부분 일본어가 통하고 또한 폭도도벌에 특히 공헌하여 기념될 제1종 근공장(第一種勤功章)을 받은 자도 442명 있다”고 말하듯 만족스러웠다고 한다(『韓國の暴徒及憲兵 駐劄軍參謀長 明石元二郎談』, 『軍事警察雜誌』24號, 1909.10, 86쪽).

25) 松井茂先生自傳刊行會 編, 앞의 책, 256~257쪽.

해야 한다.

제4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긴급한 사정으로 다른 관헌에게 통보할 길이 없고 필요한 때에는 그 주 임무의 구분에 상관없이 임기응변으로 필요한 처분을 행할 것. 이 경우에는 사후 해당 주 담당관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해야 한다.

제5조,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지방에 대해서는 헌병이 경찰관의 주 임무에 속하는 사항도 집행한다. 헌병이 배치되지 않은 지방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헌병의 주 임무에 속하는 해당 사항도 집행한다.

제6조, 헌병대장은 제1조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또한 헌병장교는 경부 이상을, 준사관은 순사를 지휘할 수 있다.

제7조, 지방관헌으로부터 직무상 정당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헌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헌병대장은 경찰집행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관헌에게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²⁶⁾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찰이 제6조와 같이 헌병의 지휘 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마츠이는 이를 납득하지 않았고, 이토가 통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기간 중 헌병과 경찰간의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예전부터의 주장에서 헌병본위론(憲兵本位論)을 이토공에게도 소네(曾禰) 자작에게도 하루라도 빨리 이를 실행시켜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었다”²⁷⁾고 하는 육군대신 테라우치가 통감에 취임하여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양자의 대립이 끝을 맺게 되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본 보고에서는 주한 일본군 헌병대의 통감 예속화와 헌병보조원제도 실시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헌병대에 관한 이토 히로부미의 인식을 검토하였다. 이토는 통감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주한 일본군에 대한 지휘권을 요구하여 군부와 ‘통수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는 문관과 무관의 알력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결국 이토의 요구가 수용되어 통감에게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병력 사용권’이 인정되었지만,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대표로 하는 주한 일본군 측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는 주한 일본군에 대한 통감의 영향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위에서 이토는 군의 경찰기관인 헌병의 일반경찰 업무를 통감에게 예속시키고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해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강화됨과 동시에, 경찰의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문관 경찰기관인 한국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무관 경찰기관간의 대립은 1907년 후반기 의병투쟁의 고양과 때를 같이하여 본격적으로 헌병기

26) 위의 책, 257~258쪽.

27) 『松井茂自傳』, 松井茂先生自傳刊行會, 1952, 267쪽.

구 확장을 추진하게 된 때부터 더욱 침예화 되어간다. 헌병기구의 확장은 치열해진 의병투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이토가 이를 결정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한국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감과 헌병에 대한 기대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인을 일본헌병의 보조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헌병보조원제도에 대한 이토의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한글 요약)

이토 히로부미와 주한일본군 헌병대

이승희

본 보고는 주한 일본군 헌병대의 통감 예속화와 헌병보조원제도 실시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주한 일본군 헌병대에 관한 이토 히로부미의 인식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강압에 의해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고, 1906년 3월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부임해 왔다. 이토의 한국 치안구상은 러일전쟁 시기를 통해 비대해진 군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본인을 고문으로 하는 한국경찰을 활용하여 경찰기관을 정비·확충하려는 것이었다.

이토는 통감 취임 전부터 주한 일본군에 대한 지휘권을 요구하여 ‘통수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군부측은 문관인 이토에게 무관인 군의 지휘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던 것이다. 결국 이토의 요구가 수용되어 통감에게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병력 사용권’이 인정되었고,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대표로 하는 주한 일본군 측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는 주한 일본군에 대한 통감의 영향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위에서 이토는 군의 경찰기관인 헌병의 일반경찰 업무를 통감에게 예속시키고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해 나갔던 것이다.

고종황제 강제퇴위와 한국군대 해산을 계기로 1907년 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의병투쟁이 격화되자, 한국경찰만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이토는 군의 경찰기관인 주한 헌병대 기구의 확장을 통해 한국의 ‘치안유지’를 꾀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강화됨과 동시에, 경찰의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문관 경찰기관인 한국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무관 경찰기관간의 대립은 헌병기구 확장이 본격화하는 때부터 더욱 첨예화되어간다. 헌병기구의 확장은 치열해진 의병투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이토가 이를 결정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한국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감과 헌병에 대한 기대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인을 일본헌병의 보조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헌병보조원제도에 대한 이토의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日本語 要約)

伊藤博文と駐韓日本軍憲兵隊

李升熙

本報告は、駐韓日本軍憲兵隊の統監「隷属化」と憲兵補助員制度実施をめぐる問題を中心に駐韓憲兵隊に関する伊藤博文の認識を検討するのを目的とする。日露戦争で勝利した日本の強圧により、1905年11月、いわゆる「乙巳条約」が日韓間で締結され、韓国に統監府を設置することが決まり、1906年3月、初代統監として伊藤博文が韓国へ赴任して来た。伊藤は日露戦争期を通じて肥大化した韓国における軍の影響力を減らそうとし、統監就任前から駐韓日本軍に対する指揮権を強く要求した。伊藤は韓国を統治するためには駐韓日本軍を「制御」する手段が必要であると考えたが、これに対し軍部側は文官である伊藤に軍の指揮権を与えることはできない、「統帥権侵害」であると反発したのである。結局、伊藤の要求が通り、統監には制限付きではあるが「兵力使用权」が認められた。しかし、長谷川好道を代表とする駐韓日本軍側の不満は大きく、駐韓日本軍に対する統監の影響力の低下につながった。このような経緯から、伊藤は日本人主導の顧問警察を活用して韓国警察を整備・拡充する一方、軍の警察機関である憲兵の一般警察業務を統監に隷属させ、直接統監が憲兵を指揮・監督できるような制度を整備したのである。

1907年後期から韓国皇帝の強制退位と軍隊解散をきっかけとして義兵闘争が激化し、韓国警察の力ではそれに対応しきれない状態であったため、伊藤は軍の警察機関である駐韓憲兵隊拡張を通じて韓国の「治安維持」を図ろうとした。しかし、それは警察の業務分掌をめぐって文官警察機関である韓国警察と衝突を生じさせるという新しい問題を起こした。このような文・武官の警察機関同士の対立は憲兵機構拡張が本格化するとともにますます先鋭化する。憲兵機構拡張は義兵闘争への対応策であったが、伊藤がそれを取った主な理由の一つとして、韓国警察に対する大きな失望感と憲兵に対する期待感が挙げられる。伊藤は、それまで進めてきた警察制度の「改善」にもかかわらず、韓国警察は義兵弾圧など「治安維持」にはあまり役に立たないと感じ、統監の指揮下にありながら軍事組織として訓練と統制が容易と思える憲兵を重視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それは韓人を日本憲兵の補助員として採用し、韓国の「治安維持」に活用しようとした憲兵補助員制度に対する伊藤の積極的な姿勢によく表れていると言えよう。

‘이토 히로부미와 주한 일본군 헌병대’ 발표에 대한 토론문

류미나

1. 평가 및 의의

본고는 자료의 제약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토 히로부미의 주한 일본군 헌병대에 인식을 규명하는 것으로 한국병합 이후 이른바 ‘무단정치’로 불리는 조선지배에 대한 배경을 보다 상세히 보여주는 보고이다. 흔히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무단정치’로만 알려진 한국병합 이후 조선지배의 역사상을 보다 다각적으로 보여준 발표라 하겠다.

2. 질문

1) 이토가 조선인을 ‘헌병보조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경찰병력이 아닌, 헌병병력으로서의 조선인 활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토는 헌병보조원으로 지배의 대상인 조선인을 어느 정도 기대했고, 실제 그러한 기대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2) 마츠다 도시히코씨는 이토가 부임 직후 헌병대를 축소하고 서울 부근의 군사경찰도 ‘고등군사경찰’이란 명칭으로 바꾼 것은 조선인에게 군사적 지배로 인한 반일감정과 열국의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 데 비해 한편 보고자는 이러한 이토의 행동이 기득권을 가진 주한일본군에 대한 제어수단으로 봤다. 그리고 보고자는 1907년

이토가 헌병기구 확장을 시도했고, 이것은 이토가 한국의 경찰제도와 군사제도에 비해 의병투쟁을 진압하는 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봤다. 이상의 상황을 보면 이토의 행위는 1905년 부임 직후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1907년 당시 조선의 의병활동의 강화로 인해 헌병을 증가시키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토의 대 조선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伊藤博文と駐韓日本軍憲兵隊」に対する討論

柳美那（国民大学校）

1. 内容

本稿は従来資料の制限により明らかにされていなかった伊藤博文の駐韓日本軍憲兵隊に対する認識を究明するものである。この報告は、韓国併合以降、いわゆる「武断政治」とされた朝鮮支配に関する背景を一層明確にしたものである。

本稿によって、寺内正毅の「武断政治」と知られている朝鮮支配の歴史像がより多角的にみえたと評価する。

2. 質問

1) 伊藤が朝鮮人を「憲兵補助員」として利用しようとした理由をお願いしたい。

警察要員ではなく、憲兵補助員としての活用はいかなる差異があるのか。また、伊藤は憲兵補助員としての朝鮮人に対していかに期待していたのか。実際伊藤の期待は効果があったのか。

2) 松田利彦氏は伊藤が赴任直後憲兵隊を縮小するほか、ソウル付近の軍事警察も「高等軍事警察」という名称に変えたといい、その理由として朝鮮人の反日感情および列国の非難をあげた。一方、報告者はこうした伊藤の行動を既得権をもっていた駐韓日本軍を制御する手段としてとらえた。また、伊藤が1907年憲兵機構を拡張したことについて、伊藤自身が韓国の警察制度および軍事制度による義兵制圧に期待がなかったからであるとみた。以上の状況からみると、伊藤の対憲兵隊の認識は赴任直後と1907年とが異なっている。その理由についての説明をお願いしたい。

また、こうした伊藤の変化が対朝鮮政策の変化としてとらえてもいいかどうか。ご意見をいただきたい。

학술대회 주요 참여자 소개

(가나다 순)

김봉식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공분야: 일본근현대정치사

주요논저:

「도조내각기의 의회세력」(『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1호, 2007년 3월,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자민당정권과아키히토친황」(『일본어문학』 제33집, 2006년 5월, 일본어문학회).

「翼贊壯年團論」(『歴史評論』 第591号 1999年 7月号 歴史科學協議會), 日本.

「戰時下の市會」(『日本歴史』 第607号 1998年 12月号 日本歴史學會), 日本.

「태평양전쟁기 常會의 연구」(『일본역사연구』 제7집, 1998년 4월, 일본사학회).
(공저) 『일본근현대사』 좋은날, 1999년 8월.

류미나

소속: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전공분야: 일본근현대사

주요논저: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63, 한국역사연구회, 2007년 3월

「일본 국민도덕론의 유입과 재생산」, 『인문연구』5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년 6월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연구』17, 교육사학회, 2007년 6월

박삼현

소속: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조교수

전공분야: 일본근현대사

주요논저:

「明治五年天皇地方巡幸-廢藩置縣後, 太政官成立の観点から」, 『日本史研究』 465号, 2001년

「『府藩縣三治期』 地方官の人事變遷」, 『神戸大學史學年報』 18号, 2003년

「1874년 지방관회의 준비와 左院의 역할」, 『일본학보』 제69집, 한국일본학회, 2006년

「메이지초년의 국체론—교도직(教導職)의 3조교칙(三條教則)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74집 2권, 한국일본학회, 2008년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삶과 학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년(공저)

박 훈

소속: 서울대 동양사학과

전공분야: 일본근대사

주요논저:

「18세기말-19세기초 일본에서의 ‘戰國’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동양사학연구』 104, 2008

「『대일본사』 편찬에서 ‘藤田派’의 역할재고」 『대구사학』 86, 2007

「근대초기 한중일에서 헌정의 수용양태 비교시론」 『일본연구논총』 25, 2007

「동화론과 오키나와아이덴티티:오타초후(太田朝敷)의 동화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3, 2007

幕末水戸藩에서 封書の 정치적 등장과 그 역할 (『東洋史學研究』 77, 2002.1)

徳川末期 水戸藩의 南上運動과 정치공간(『歴史學報』 173, 2003.3)

방광석

소속: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

전공분야: 일본근대사

주요논저:

『근대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혜안, 2008.

『이토 히로부미와 한국』(공저), 선인, 2009.

『전쟁과 기억 속의 한일관계』(공저), 경인문화사, 2008.

「明治官僚의 ‘지식순례」, 『일본역사연구』 23집, 일본사학회, 2006.6.

「‘제국헌법’과 메이지천황」, 『일본역사연구』 26집, 일본사학회, 2007.12.

사카모토 가즈토(坂本一登, Sakamoto, Kazuto)

소속: 國學院大學法學部教授

전공분야: 日本政治史、日本近代史

주요논저:

『伊藤博文と明治国家形成—「宮中」の制度化と立憲政の導入』吉川弘文館、1991年

監修『徹底大研究 日本の歴史人物シリーズ14 伊藤博文』ポプラ社、2004年

「伊藤博文と山県有朋」伊藤隆他編『山県有朋と近代日本』吉川弘文館 平成20年3月

「井上毅と官吏任用制度」『國學院法學 40周年記念号』第40卷第4号 國學院大学法学会 平成15年3月

「伊藤博文と『行政国家』の発見—明治十四年政変と憲法調査をめぐって」沼田哲編『明治天皇と政治家群像』吉川弘文館 平成14年6月

「新しい皇室像を求めて」『近代日本研究』20 山川出版社 平成10年11月

서민교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 강사

전공분야: 일본근대사, 근대 한일관계사

주요논저:

『각국사시리즈 일본사』, 대한교과서, 2005 (공저)

- 『근대동아시아 역사인식비교』, 선인, 2004 (공저)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중(청)일전쟁의 국제정치와 군사전략-』, 리북, 2006 (공저)
 「만주사변기 조선주둔일본군의 역할과 행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호, 2002
 「근대 일본의 조선 주둔군에 대한 고찰-그 시원에서 1910년 한국병합까지-」
 『한일관계사연구논집 7,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침탈』, 경인문화사, 2005

심기재(沈箕載)

소속:檀國大

전공분야: 日本近代史

주요논저:

- 『幕末維新日朝外交史の研究』(臨川書店, 1997)
 『それぞれの明治維新-變革期の生き方-』(吉川弘文館, 共著, 2000)
 「메이지 초년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 개편과정」(2006)
 「幕末期의 桂小五郎와 朝鮮·對馬」(2007)
 「메이지 초년 기도 타카요시의 대외인식」(2008)

오가와라 히로유키(小川原宏幸, Ogawara hiroyuki)

소속: 치바(千葉)대학 비상근 강사, 메이지(明治)대학 문학부 겸임강사

전공분야: 근대 한일관계사 전공

주요논저:

- 「日露戦争期日本の対韓政策と朝鮮社会 -統監の軍隊指揮権問題における文武官の対立を手がかりに」(『朝鮮史研究会論文集』44, 2006)
 「伊藤博文の韓国併合構想と第三次日韓協約体制の形成」(『青丘學術論集』25, 2005)
 「統監伊藤博文の韓国法治國家構想の破綻」(姜徳相先生古希・退職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著, 『日朝關係史論集: 姜徳相先生古希・退職記念』, 新幹社, 2003)
 「日本の韓国保護政策と韓国におけるイギリスの領事裁判権 -梁起鐸裁判をめぐって」(『文學研究論集』13, 明治大学大学院文學研究科, 2000)

이성환

소속: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전공: 일본정치외교론

주요논저:

- 『近代東アジアの政治力学』(錦正社, 1993)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살림출판사, 2004),
 『한국과 국제정치』(법문사, 2009, 공저)
 『近代日本と戦争』(光陽出版社, 2009)
 『한국과 이토히로부미』(선인출판사, 2009, 共編著)

이승희(李升熙)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시간강사

전공분야: 일본근대사

대표논저: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와 헌병대 -‘대만헌병대’의 특징과 역할을 중심으로」(『사람』 33, 수선사학회, 2009.6)

『韓國併合と日本軍憲兵隊 -韓國植民地化過程における役割』, 新泉社, 2008.9

「한국병합조약 전후기의 주한일본군 헌병대 연구 -憲警統一 문제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 26, 일본사학회, 2007.12)

「청일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가설 문제 -한국 파견 ‘臨時憲兵隊’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 21, 일본사학회, 2005.6)

「日本軍の「丁未義兵」鎮壓過程における憲兵隊台頭問題」(『文學研究論集』 15, 明治大學大學院, 2001.9)

임성모

소속: 연세대학교 사학과

전공: 일본근현대사

주요논저: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공저)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공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공저)

『번역과 일본의 근대』(번역)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번역)

최석완(崔碩莞)

소속: 대전대 일본학과

전공분야: 일본근대사

주요논저:

「일본정부와 청일전쟁 개전과정 - 열강의 간섭과 일본의 교섭 무산 전략 -」, 『일본역사연구』 29, 2009

「일본정부의 청일 개전 정책 - 제1차 개전 기도와 좌절 -」, 『중국근현대사연구』 33, 2007

「일본정부와 조선 내정의 개혁안(1894.6)」, 『일본역사연구』 21, 2005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역사학회 편, 일조각, 2006(공저)

『日清戦争への道程』, 吉川弘文館, 1997

최종길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전공분야: 근대 일본의 내무관료, 사회운동

주요논저:

『근대 일본의 중정국가 구상』

「식민지 조선과 치안유지법의 적용」

「임시산업조사회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안의 심의」
「잡지 "노동"을 통해본 일본노동총동맹의 체제인식」
「야마오카 만노스케와 치안유지법의 개정」

타키이 하즈히로(瀧井 一博, Takii kazuhiko)

소속: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准教授

전공분야: 국제(國制)사, 비교법사

주요논저:

2007 The Meiji Constitution: The Japanese experience of the West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state (translated by David Noble),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共編) Wilhelm Brauner/Kazuhiko Takii(Hrsg.), Die österreichischen Einflüsse auf die Modernisierung des japanischen Rechts,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u.a.)

1999 (單著) 『ドイツ国家学と明治国制—シュタイン国家学の軌跡—』、ミネルヴァ書房

1998 (編著) Kazuhiko Takii (Hrsg.), Lorenz von Steins Arbeiten für Japan. österreichisch-japanische Rechtsbeziehungen II,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u.a.)

(共著) 野田宣雄編 『よみがえる帝国—ドイツ史とポスト国民国家—』、ミネルヴァ書房

2008 Lorenz von Steins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Von der europäischen Rechtsgeschichte zum Weltsystem des Rechts, in: Gerald Kohl, Christian Neschwara u. Thomas Simon (hrsg.), Festschrift für Wilhelm Brauner zum 65. Geburtstag, Rechtsgeschichte mit internationaler Perspektive, Wien, S. 687-698.

2007 「伊藤博文の憲法行脚—立憲政治とは何か」 『ラチオ』第4号、174-192頁

「渡辺洪基と国家学会」佐藤幸治・平松毅・初宿正典・服部高宏編 『現代社会における国家と法 阿部照哉先生喜寿記念論文集』(成文堂)、659-680頁

한성민(韓成敏)

소속: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전공분야: 근대한일관계

주요논저:

「日本에 의한 安重根 재판의 불법성과 그 정치적 의도」, 국사편찬위원회·홍릉강성사회과학원, 『기념안중근의사의거100주년논문집』, 2009.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韓國併合'政策(1905~1909)」, 『역사상의 공화정과 국가만들기』(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2008.

정태섭·한성민,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과 朝鮮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43, 2007.

정태섭·한성민, 「乙巳條約 이후 韓·淸 간 治外法權 연구(1906~1910)」, 『한국근현대사연구』46, 2008.

함동주(咸東珠)

소속: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전공분야: 일본근현대사

주요논저:

『천황제근대국가의 탄생』

『일본동양학의 구조』(공역)

「메이지 초기 서양사수용과 프랑스혁명관의 사회문화사」

「근대 일본의 형성과 역사상: 田口卯吉의 ‘日本開化小史’를 중심으로」

(통역)

이형식

소속: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공분야: 일본근대사

주요논저:

(공저) 『日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政党内閣期における植民地統治-植民地長官人事を手掛かりとして-」、思文閣出版、2009年3月)

「南次郎総督時代における中央朝鮮協会」, 『日本歴史』720号、2008年5月

「戦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会の軌跡-その設立から宇垣総督時代まで-」, 『朝鮮学報』204号、2007年7月

「文化統治」初期における朝鮮総督府官僚の統治構想」, 『史学雑誌』115-4、2006年4月

신미나

소속: 한국외대

전공: 일본중세사

주요논저:

「다이조에 와카와 유자」, 『일본연구』 제12집